



ODA
정책연구
21-0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한상범 · 권세훈 · 임상균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한상범 · 권세훈 · 임상균

ODA 정책연구 21-0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인 쇄 2021년 12월 24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발행인 김흥종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일지사(02-503-6971)

©20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8040-0 94320
978-89-322-8027-1(세트)



본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SG 경영' 방침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국문요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심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ESG는 근본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지침이나, 기업 경영전략의 개념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다. 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ESG 문제는 오늘날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현실 전반에서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 및 문제해결의 기회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의 개념 및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를 포함한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효율성, 공정성,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에서는 ESG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고 확산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동안 경제·경영 분야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한 주주자본주의는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자연환경과 사회 공동체를 훼손하는 여러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국제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발전이 미래세대의 경제적 번영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환경 이슈에서 시작하여 점차 인권과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대되었으며, 근래에는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라는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ESG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제3장에서는 ESG 경영전략을 추구한 대표적인 기업 사례를 소개한다. ESG에

관심이 높은 주요국들의 경우 ESG 활동에 선도적인 기업이 많으며, 그 양상도 다양하다. 파타고니아와 같이 설립 초기부터 성장 과정 내내 꾸준히 ESG 활동을 추진해 온 기업들도 있지만, 대다수 기업은 사회의 ESG 관심 증가에 부합하여 ESG 활동수준을 높이는 행태를 보였다. 유니레버와 같이 기존 사업방식에 ESG 경영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 CLP그룹, 외르스테드 등 기존 사업을 폐기하고 ESG 개념에 적합한 사업을 시작하는 등 전면적인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들도 발견된다. 한국기업들도 근래에 ESG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특히 환경 관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적 상황에서 기업지배구조 관련 ESG 문제는 한국기업에 중대한 위협요소인 동시에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기업 차원을 넘어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을 탐구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정책 개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도 있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기도 한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 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야 하며, ‘시장이나 정부냐’의 이분법적 구분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조 내지 공조 프레임이 모색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근래의 정보통신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그리고 다양한 조직 및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의 정부정책 개입 영역을 재조정하고 그 방식 역시 혁신적으로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논의되는 국제적인 ESG 이슈로는 탄소국경세와 최저법인세율 규제 등이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나 기술수준 측면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ESG 관련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라 부담이 과중할 수 있는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단계적 이행 및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ESG 국가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 유럽연합(EU)이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에 가장 선도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몇 년 사이 ESG 인프라인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등 많은 제도를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들을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감독하는 정책 마련,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차원에서 강조하는 '건강경영'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와 거래소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직원의 건강을 회사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하다. 예를 들어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차별적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기업과 민간의 자발성을 억제하는 부작용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SG 정책이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며,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제도를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적절한 변용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한편 2021년 10월 8일 OECD 회의에서 136개 국가 등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합의하여 2023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 조세 관련 공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한국도 조세 투명성을 더욱 높여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을 위한 ESG 지원정책을 다룬다. ESG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와 민간 사이의 이상적인 역할분담은 국가와 시장이 각자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ESG 금융에는 ESG 범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가 필요하다. 그리고 ESG 공시제도는 현재 민간의 비영리기관을 중심으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통일된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ESG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면, 민간영역의 기업 감시 및 평가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를 목적으로 개발된 ESG 평가제도도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기관마다 방식이 크게 다르고 결과들의 상관관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외 주요 기관들의 ESG 평가가 한국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정부가 ESG 평가를 직접 담당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ESG 평가의 전반적인 틀을 관리하는 것은 평가지표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7장에서는 ESG 관련 국가정책을 전략적으로 통합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주요 ESG 정책들로는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 등이 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 및 심의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ESG 논의 및 국제 시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러 위원회나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집행되는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상충효과 유발이 우려되므로 통합적인 정책 설계 및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59개 위원회 가운데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지만, 효과적인 ESG 실천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이를 취합하는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중복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와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수준에서 ESG 국가전략에 근거하고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하여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문제' 내지 '위험'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핵심으로 포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K-Risks Matrix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서,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8장은 결론 및 요약이다. 현재 ESG 논의는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전략 차원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를 파악하고, 개별 대응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여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념이 아닌 실용적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이 협력하고 조화하는 정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 정의와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회계 및 공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특히 이미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각종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SG 인프라 정책의 기본 목표는 민간의 ESG 관련 정보 및 평가 산업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사안에 대한 ESG 관점의 정책평가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하며,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차례

국문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23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4
2. ESG 개념의 발전	27
3. ESG와 SDGs의 관계	31
4. 중소기업과 ESG	35
제3장 ESG 기업 사례	41
1. 파타고니아	42
2. 유니레버	45
3. 슈나이더일렉트릭	49
4. CLP그룹	52
5. 외르스테드	55
6. 월마트, 페덱스	57
7. SK이노베이션	59
8. 풀무원	60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63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69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70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73

가. 자본주의 4.0	73
나. 도전에 직면한 주주가치 극대화 이념	73
다. 시장과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75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77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79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81

1. EU	82
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82
나.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규정	83
다. 기업지속가능성 공시(CSRD) 규정	85
라.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제도	87
마.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88
2. 미국	89
가.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	89
나. 환경	90
다. 사회	94
라. 공시	96
3. 일본	99
가. 환경	99
나. 사회	103
다. 지배구조	106
4. 중국	108
가. 사회: 국가적 사회평가 시스템의 구축	108

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110
5. 인도	111
가. 사회: CSR 의무화 회사법의 제정	111
나. 환경·사회: 클린인디아(Clean India) 정책	114
6. 국제기구 및 NGO	116
가. 탄소세 논의	116
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및 조세 관련 공시 강화	118
다. 공시	120
7. 정책적 시사점	122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25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126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128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137
4. 지원 및 규제 정책	140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45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146
가. K-SDGs	146
나. 한국판 뉴딜정책	149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149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52
마. 행정기관 위원회의 통합관리	154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156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162
가. 국가전략적 위험요소 분류의 예시	162
나. 통합적 정책설계의 예: 국가균형발전정책	167
제8장 결론	173
참고문헌	180
Executive Summary	196



표 차례

표 1-1.	ESG 국가전략 체계표 양식	20
표 2-1.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28
표 2-2.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33
표 2-3.	SDGs의 17개 목표	34
표 6-1.	K-ESG 분야별 대표 문항	140
표 7-1.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154
표 7-2.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155
표 7-3.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164



그림 차례

그림 1-1.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좌표	21
그림 1-2. ESG 영역별 구조적 관계의 이해	21
그림 3-1. 유니레버의 영업이익의 추이(2011~20년)	48
그림 3-2. 풍력발전 단가 및 미국의 육상 풍력발전 용량 추이	53
그림 3-3. 태양광발전 단가 및 태양광발전 용량 추이	54
그림 4-1. 미국의 상위 1%와 10%의 부 비중 추이	71
그림 4-2.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71
그림 4-3. 지역별 인구 순이동률	72
그림 7-1. K-SDGs 비전과 전략, 목표	147
그림 7-2. K-SDGs 목표 및 법령, 계획과 담당 부처	148
그림 7-3.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조직체계	151
그림 7-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가치	151
그림 7-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152
그림 7-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153
그림 7-7.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체계	156
그림 7-8. OECD BLI(better life index) 2020	159
그림 7-9. 국민 삶의 질 지표 추세(2020년 12월 말 기준)	160
그림 7-10. 글로벌 리스크 요인 가능성 및 충격성 순위	161
그림 7-11.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Global Risk Landscape)	161
그림 7-12.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연관 정책들(예시)	172
그림 8-1. ESG 국가전략의 체계	179

제1장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해 투자지침이나 기업경영 이념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차원에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ESG는 인류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가치체계를 현실세계에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다. ESG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포용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한다. 투자나 기업경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이해관계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전체의 편익과 비용에 도달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보고서는 ESG 개념 및 적용의 범위를 확장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오래전부터 ESG와 유사한 개념의 투자지침이 종교단체 등 일부 투자자 집단에 의해 실천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기업경영이나 소비자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개념이 구체화되어 체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ESG 문제는 현실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직접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성장기회 및 문제해결 계기로서 다방면에 걸쳐 활발히 탐구되어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글로벌컴팩트(UN Global Compact)와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과 유엔 지속가능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이 발표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부 부처와 위원회 등에서 다양한 ESG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지속가능목표(K-SDGs)나 한국형 뉴딜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ESG 정책 가운데 일부는 중복적이거나 상충적인 면이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고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국가 ESG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 단계에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정책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 사례들을 조사하고, 효율성과 공정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ESG 국가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최근 급부상한 배경은 국가와 시장의 역할분담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과정과 전후 복구 과정에서 영국과 미국조차도 정부의 시장개입을 강조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정책들을 대거 시행하였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안정되고 국가의 경제규모가 급증하면서 공공부문의 자산관리나 공기업 경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영미권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사상조류가 득세하고 민영화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처럼 정부실패와 시장기능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정치경제의 흐름은 1990년대 이후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자본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민영화 물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적 관점은 도전을 받게 되고, 정부의 시장개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들이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최근 ESG 논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경계선을 새롭게 설정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즉 기존의 사회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정치적 요구의 속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할 수단이 되는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분야별 문제의 속성뿐만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해결방안 효율성의 상대적 우열 역시 크게 변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영역과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관계는 상호배타적인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역할 설정은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공정성, 효율성, 포용성, 혁신 등을 위해 다양한 양태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장을 지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장과의 제휴와 협력, 시장을 선도하거나 유도하기, 시장과의 경쟁,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본 보고서는 ESG 영역별로 이러한 정부의 역할 양태를 분류하되 각 정책 영역을 통합적으로 결합하여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국가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표 1-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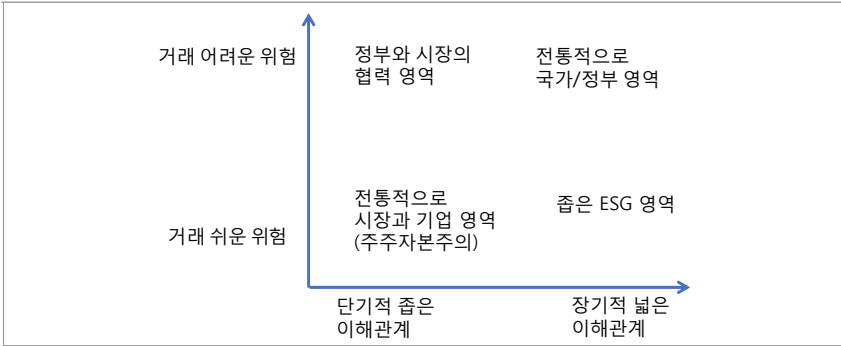
표 1-1. ESG 국가전략 체계표 양식

정부의 역할	정책영역			핵심 사항
	E	S	G	
시장에 일임				정부실패 ⇒ 탈규제화
시장을 지원				균형잡힌 규제 실행 - 포용/공정/혁신/효율
시장과 제휴				상호협력의 유인설계 마련 - 기회주의적 행동 억제
시장을 선도				미래예측 리더십 발휘 - 공동체 위험의 파악 - 위험과 수익 고려
시장과 경쟁				공정거래 시스템 구축 - 독과점/플랫폼/인권
시장을 대체				시장실패 ⇒ 국유화/공영화

자료: 저자 작성.

한편 사회경제 공동체가 직면하는 문제의 근본 속성을 이해관계 범위와 기간 및 불확실성 관점에서 파악할 수도 있다. 예로 주주자본주의는 단기적인 재무성과와 주가 변동에 초점을 맞추므로 이해관계의 범위가 좁고 단기적이다. 이에 반해 ESG 투자나 경영은 좀더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한다. 한편 불확실성 측면에서 기업 등 민간의 시장참가자들은 정량화나 가격결정이 쉬워 거래 가능한 위험들만을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가격 결정이나 거래가 어려운 불확실성을 수반하는 사회경제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투자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역할로 지칭할 수 있다(Mazzucato 2011, 2017). 따라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 방식에 대해 [표 1-1]의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그림 1-1]처럼 2차원 좌표평면의 영역 구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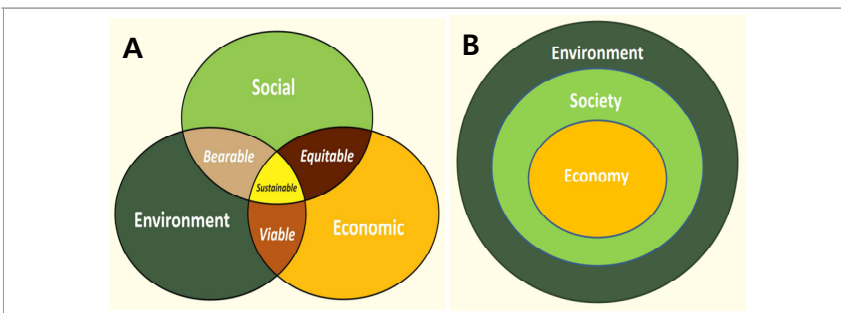
그림 1-1. 정부와 시장의 역할분담 좌표



자료: 저자 작성.

ESG 각 영역 사이의 구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림 1-2]의 내용처럼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단, 여기서 G는 경제적 이해를 결정하는 지배구조로 이해하여 경제(Economy)로 표시하였다. 그래프 A는 각 영역이 동등한 구조로서 지속가능성은 세 영역이 모두 만족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분적으로 만족되는 것은 견딜 수 있는(bearable), 공평한(equitable), 또는 유효한(viable)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프 B는 각 영역이 필요충분 구조로서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순서로 그 필요성 내지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림 1-2. ESG 영역별 구조적 관계의 이해



자료: Bolton *et al.*(2020), [그림 19]; EPA(2011)의 그림 참고.

한편 Sachs(2015)는 ESG와 동일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3E's, 즉 경제(Economy), 공평(Equity), 환경(Environment)으로 명명하여 설명하는데, 여기서 S는 Equity로 대체된 것으로 이해된다. 명칭이 달라진 영역으로 Economy는 빈곤문제(poverty)를, Equity는 불평등문제(inequality)를 다룬다. 세 영역은 각각 세계경제(the world economy), 글로벌사회(the global society), 지구물리적 환경(the Earths physical environment)을 의미하며, 복잡한 이 세 영역의 상호작용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다(Kahn 2015). 한편 ESG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개념은 대체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서 상호교체적으로(interchangeably)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성이 보다 더 추상적 개념으로 다양한 개념들을 포괄하는 데 비해 ESG의 경우는 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측정가능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 이처럼 ESG 개념 및 영역별 구조나 명칭에 다소간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실정을 감안해 ESG 명칭을 사용하여 모든 논의를 진행한다.

이하 보고서 내용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과정을 개관하고, 제3장에서는 기업 차원에서 전개된 주요 ESG 사례를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좀더 자세히 논하고, 제5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전개되는 ESG 관련 정책 및 제도 사례를 소개한다. 그리고 ESG 국가전략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제6장에서는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을 논의하고, 제7장에서는 ESG 국가전략을 위한 정책제도의 통합적 설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1) <https://sphera.com/spark/esg-and-sustainability-two-sides-of-the-same-coin>(최종 검색일: 2021. 10. 28).

제2장



ESG 개념의 발전과 논의의 확산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2. ESG 개념의 발전
3. ESG와 SDGs의 관계
4. 중소기업과 ESG



1. 지속가능성과 ESG 개념의 소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따서 명명한 ESG는 기업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그간 중점을 두어온 재무적 요소 이외에 고려해야 할 비재무적 가치들을 의미한다. ESG는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배해 온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최근 ESG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까지 기업활동을 지배한 관점은 기업의 역할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보는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은 1970년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논설²⁾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법과 윤리의 제약 아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기업이 기부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정치적으로 불건전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Fisch(1997)에 따르면 기업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전제를 충족해야 한다.

- ① 그 활동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 ② 그 활동을(적어도 일부는) 그 기업이 실행하는 것이 다른 경제주체가 수행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해야 한다.

이 두 조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조건이다. 영리활동을 제외한 사회공헌 활동들은 대체로 기업이 그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다른 경제주체들이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 경영자가 사회공헌활동들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주자본주의

2) Friedman(1970. 9. 13),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의 관점에서는 기업은 직접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선·기부를 하기보다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실행하여 개별 주주의 부를 증가시킨 후, 개별 주주들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선이나 기부활동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동안 주주자본주의는 경제학과 경영학 등 학문적 영역은 물론이요, 자본 시장 실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기초이념으로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처럼 간주되어 왔다. 주주자본주의는 글로벌 경제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 측면이 있지만, 동시에 경제발전의 토대를 빠르게 훼손하는 문제 또한 발생시켰다. 주주자본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성과는 재무적 성과, 특히 주가나 회계적 이익을 중심으로 측정되어 왔고, 경영진 보상 또한 재무적 성과를 주로 반영하도록 설계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활동은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를 극대화하여 자본시장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그밖의 비재무적 요소나 활동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었다.

기업이 단기적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장기적·비재무적 목적의 비용을 최소화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비용의 많은 부분은 주주 외의 이해관계자나 환경 등 기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반영한다. 예컨대 오염물질 정화 비용을 지출하지 않거나 또는 규제를 준수하려 최소한도로만 지출하면 기업의 재무적 성과는 향상될 수 있으나, 환경이 파괴되어 장기적으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은 훼손된다. 또 다른 예로 공급망에 대한 지출이나 인건비 등 생산요소 보상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장기적으로 공급망이 부실해지거나 혁신에 필요한 고급인력 확보가 어려워진다. 또한 노동환경 개선 비용을 최소화할 경우 기업의 재무성과는 위험한 노동의 대가로 얻게 된다. 이와 같은 행동은 미시적으로는 수질·토양·대기의 오염, 생태계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와 안전·위생, 빈곤, 고용불안정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거시적으로는 자연재해, 자원고갈, 사회의 불안정, 보건 및 교육수준 저하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미시 및 거시적 문제는 물류나 인력수급 문제를 야기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며, 구매력 저하로 인한 소비시장 축소 등으로 연결되어 장기적으로 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장애가 된다.

주주자본주의 관점이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위험성은 2007년 세계금융위기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는 고위험대출을 늘리고, 이를 기초로 한 파생금융상품을 과도하게 판매·유통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금융회사의 경제적 유인이 그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파산하여 큰 파장을 낳은 엔론의 회계부정 사건 뒤에는 지속적인 재무적 성장을 시장의 기대치와 재무적 성과에 따라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Lean and Elkind 2013). 환경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2010년 멕시코만에서 발생한 딥워터 호라이즌호의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안전수칙 준수 미비에 따른 것으로, 사업 진행의 지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 안전수칙을 무시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딥워터 호라이즌호가 관련된 프로젝트가 계획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되어 매일 1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노동환경을 포함한 사회현상도 주주자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UNICEF는 2020년 초 전 세계에서 어린이 약 16억 명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추산한다.³⁾ 이는 어린이들의 저가 비숙련노동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주자본주의의 부작용은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며, 다국적기업의 등장으로 그 부작용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추세다.

3) UNICEF(2021), "Child Labou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0).

2. ESG 개념의 발전

주주자본주의의 폐해를 막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국제사회 전반에서 힘을 얻게 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서 ESG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 ESG 세 개 분야 가운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실천되는 분야는 환경 분야이다. 산업화의 진행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일찍부터 인지된 바 있으며, 환경문제의 특성상 범세계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83년 UN은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를 설립하고 최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를 시작하였다. 의장의 이름을 따서 브룬트란트위원회(Brundtland Commission)라고도 불리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는 1987년 소위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불리는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간한다. 동 보고서는 ‘미래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을⁴⁾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정의라고 알려져 있다. 동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기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환경문제는 국제적 의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 보고서는 개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도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참여수준을 높여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ESG 활동의 시작점으로 평가할 만하다.

기업 차원에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로 이어진다. 199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범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이어가기 위하여 기업에 사회적

4) 원문은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이다(UN Documents(1986), “Our Common Future, Chapter 2: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9)).

책임 이행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UN 산하 기구가 유엔글로벌콤팩트이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 기업들에 10개 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는데, 이는 인권(Human Rights), 노동(Labour), 환경(Environment), 반부패(Anti-Corruption)의 4개 범주로 요약된다(표 2-1 내용 참고).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 기업들에 10개 원칙 준수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유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의 세부내용은 오늘날 ESG 개념을 상당부분 포괄하고 있다. 이전의 브룬트란트 보고서가 환경문제에 집중한 것과 비교하면, S 및 G에 해당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업 이해관계자 전반을 고려하려는 현재의 ESG 접근법보다는 다소 시야가 좁으며, 특히 S 및 G 분야에서 현재의 ESG보다 관점이 제약적이다. 강제력이 부족하고 관점의 폭이 좁으므로 그 적용 및 실천에서, 그리고 그 영향력을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표 2-1.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범주	원칙	내용
인권	1	국제적으로 공포된 인권의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함 Businesse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and
	2	인권유린에 공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함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s abuses.
노동	3	결사의 자유와 집단적 협상권을 실제적으로 인정함 Businesses should uphold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제거함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and compulsory labour;
	5	아동노동을 효과적으로 폐지함 the effective abolition of child labour; and
	6	고용과 직업 관련 차별을 제거함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respect of employment and occupation.

표 2-1. 계속

범주	원칙	내용
환경	7	환경적 문제에 조심하는 노력을 지지함
		Businesses should support a precautionary approach to environmental challenges:
	8	더욱 큰 환경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부담함
undertake initiatives to promote greater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9	환경친화적 기술의 발전과 확산을 장려함	
	encourage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technologies.	
반부패	10	강탈이나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를 반대함
		Businesses should work against corruption in all its forms, including extortion and bribery.

자료: UN,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30).

한편 2005년에 발표된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은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다. 투자자들이 기업의 ESG 활동을 기업에 대한 투자 시 중요 사항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재무적 성과에 대한 고착화를 완화하고 ESG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PRI의 구상이다. 2005년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세계의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 ESG 관련 책임투자 원칙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세계 12개국의 투자기관에서 선발된 20인의 투자전문가들이 투자기관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70인 그룹의 도움을 받아 책임투자원칙을 완성하였다. 책임투자원칙은 2006년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최초로 선언된 이래 동참하기로 서명한 투자자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등 자본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PRI 참여에 서명한 투자자는 3,000명을 넘고,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규모는 100조 달러를 넘어선다.⁵⁾

PRI는 6개 원칙으로 구성된다. 원칙 1은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에서, 원칙 2

5)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검색일: 2021. 6. 21).

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원칙 3은 수탁책임에 대한 공시와 관련하여 ESG를 고려한다. 원칙 4는 PRI 적용의 확산, 원칙 5는 PRI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협업, 원칙 6은 PRI 적용을 위한 노력과 진행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이다.⁶⁾

PRI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주자본주의의 틀에서 실현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주주자본주의하에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투자자들의 의견이다. PRI는 기업에 가장 직접적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규모 투자자들에게 ESG 활동을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자의 인센티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PRI 원칙의 적용은 강제성이 없으며, 투자자의 자발적 참여와 양심의 문제에 의존한다. 이에 따라 PRI 원칙에 동참하기로 결의하는 것과 실제 PRI 원칙을 활용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다행히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ESG 요소를 투자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흐름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이러한 한계점은 다소 극복된 것으로 보인다.

주주자본주의로부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는 움직임은 기업 CEO들 가운데서도 확인된다. 2019년 미국 주요 기업 CEO들의 모임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table)은 “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⁷⁾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기업이 그들의 주주들만을 위해서 봉사해서는 안 되며, 그들의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직원들에게 투자하며, 공급자를 정당하게 대하고 공동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6) PRI 원칙 원문 출처는 <https://www.unpri.org>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 1: We will incorporate ESG issues into investment analysi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Principle 2: We will be active owners and incorporate ESG issues into our ownership policies and practices. Principle 3: We will seek appropriate disclosure on ESG issues by the entities in which we invest. Principle 4: We will promote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the Principles within the investment industry. Principle 5: We will work together to enhance our effectiveness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Principle 6: We will each report on our activities and progress towards implementing the Principles.

7) Business Roundtable Our Commit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6. 21).

선언하였다. 이는 프리드먼 독트린 이후 기업의 최대 사명으로 이견 없이 받아들여지던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 모두를 기업활동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약 20년 전인 1997년에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선언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때는 주주의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극적인 관점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성명이 강제력이 없으며, 정부가 선언에서 언급한 이해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선언이 주장하는 바가 기업이 아니라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CEO 모임에서 공식적으로 기업활동의 최대 사명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확인된다.

점차 논의가 확산되던 ESG 개념은 2020년 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 CEO 래리 핑크가 투자자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된다. 이 서한에서 그는 블랙록이 지속가능성을 투자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이듬해인 2021년에는 투자 대상 기업들에 사업구조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ESG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3. ESG와 SDGs의 관계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 논의 가운데 주목하여야 할 또 다른 개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ESG가 기업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면 국가, 사회 및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활동들은 SDGs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SDGs는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 이외에도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과 사회 등의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함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제발전을 조화롭게 추구하려는 목표이다.

1987년 UN의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Our Common Future"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며 '지속가능발전'을 처음 언급하였다.

1992년 리우회의(Rio Summit)로 널리 알려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환경과 지속가능발전을 논의하고 소위 「리우선언」이라 불리는 선언문과 함께 세부적인 행동강령인 '어젠다 21(Agenda 21)'이 동시에 채택된다. 리우회의에서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그리고 사막화방지협약과 같은 UN의 주요한 환경협약들 또한 체결되는 등 환경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토론되었다.

2000년 뉴욕에서 열린 UN 총회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절대빈곤, 보건, 환경, 교육 및 환경과 관련된 8가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MDGs는 SDGs 채택 이전 UN 차원의 지속가능성 목표로 평가받는다. MDGs는 2015년까지 달성할 목표로 8개 주요 목표, 21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져 있다(표 2-2 참고).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이지만,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의 절대빈곤과 보건환경 개선이 최우선 적용대상이며, 선진국 경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MDGs의 경우 ESG나 SDGs보다 포괄 범위가 좁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MDGs 이행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고 2012년 6월 리우+20 회의를 거쳐 17가지 국제적 달성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는데 이것이 SDGs다. SDGs는 MDGs가 만료되는 2015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해야 할 전 세계적인 공동의 목표로서 2015년 UN 총회에서 전 가맹국의 지지로 채택되었다.

SDGs의 핵심 목표는 사람(People) 관련 목표 6개, 지구환경(Planet) 관련 목표 6개, 번영(Prosperity) 관련 목표 3개, 평화(Peace) 관련 목표 1개, 마지막

으로 파트너십(Partnership) 관련 목표 1개로 총 17개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17개 분야의 목표 아래 169개 세부목표들을 두고 있으며, 목표들의 달성상황을 244개 지표들을 이용하여 측정한다(표 2-3 참고).

표 2-2.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목표(Goal)	내용
1	극빈과 기아 박멸 Eradicate extreme poverty and hunger
2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 Achieve universal primary education
3	성평등 촉진 및 여성 지위 향상 Promot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women
4	아동사망률 감소 Reduce child mortality rates
5	산모 건강 향상 Improve maternal health
6	에이즈,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 Combat HIV/AIDS, malaria, and other diseases
7	환경적 지속가능성 담보 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8	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개발 Develop a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자료: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세부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MDGs가 경제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 비교하면 SDGs는 사회, 경제, 환경적 측면의 균형과 목표 간 연관성을 추구한다. 또한 범지구적인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국가 간, 그리고 기업, 시민 사회와 정부 등 다차원적인 이해관계자들의 글로벌 연대(Partnership)와 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표 2-3. SDGs의 17개 목표

번호	내용	구분
Goal 1	No Poverty	People
Goal 2	Zero Hunger	People
Goal 3	Good Health and Well-Being	People
Goal 4	Quality Education	People
Goal 5	Gender Equality	People
Goal 6	Clean Water and Sanitation	Planet
Goal 7	Affordable and Clean Energy	Prosperity
Goal 8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Prosperity
Goal 9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Prosperity
Goal 10	Reduced Inequalities	People
Goal 11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Planet
Goal 12	Responsi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lanet
Goal 13	Climate Action	Planet
Goal 14	Life Below Water	Planet
Goal 15	Life on Land	Planet
Goal 16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Peace
Goal 17	Partnerships for the Goals	Partnership

자료: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

SDGs의 적용에서는 국가적 상황에 따라 지표 세부내용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서 국가별로 자신들의 상황을 진단하고 적절한 세부목표와 지표를 선택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점도 SDGs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2017년에는 SDGs의 17개 목표 달성을 확인하기 위한 범세계적 수준의 지표 232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한국도 이를 바탕으로 국내 상황에 맞는 세부목표 및 지표수립에 착수하였고, 2016년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SDGs를 반영하여 17개 분야 122개 세부목표 및 214개 지표로 구성되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다.

ESG와 SDGs는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이라는 점에서는 그

기원과 시각을 공유한다. 현재 많은 경우 ESG 논의는 지속가능성 개념을 기업이나 투자자 등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집단에 초점을 둔다. 반면 SDGs는 기업부문의 활동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서 범세계적인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논의를 지향한다. 한편 SDGs는 기업에도 지속가능발전 위한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2030 Agenda’⁸⁾ 제67조는 사회의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이 조항은 SDGs와 ESG 활동이 배타적이지 않으며, SDGs 달성을 위한 기업과 자본시장에서의 노력이 상당부분 ESG에 반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보고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기업 중심의 ESG 개념과 정부 중심의 SDGs 개념을 통합하여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국제협력이라는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국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4. 중소기업과 ESG

현재까지 ESG 개선과 관련된 움직임은 주로 대기업에 집중되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보고서의 작성의무 부과가 이연되는 등 상대적으로 ESG 압박 수준이 낮았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은 낮으며 ESG 현황 또한 대기업보다 열악한 것으로 파악된다(오덕교 2012). 그러나 멀지 않은 미래에 중소기업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ESG 수준 향상 압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투자자들이 중소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것이다. 기업의 ESG 관련 활동의 주요한 원동력은 투자자의 ESG 활동에 대한 수요다. 현재까지 ESG 관련 투자자들의 요구는 주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8) UN,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온라인 자료 (검색일: 2021. 6. 22).

그러나 채권투자, 은행대출에서도 기업의 ESG 활동을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⁹⁾¹⁰⁾ 이러한 움직임은 중소기업의 ESG 활동 강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공급망(supply chain)을 통해서도 ESG 수준 향상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공급망 전체를 ESG 활동으로 묶지 않을 경우 공급망 위쪽에 위치한 대기업에 대한 ESG 관련 부담을 공급망 아래쪽에 위치한 중소기업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¹¹⁾ 이 경우, 해당 기업만의 ESG 수준은 향상될 것이나, 사회적 수준에서나 공급망 전체적으로는 ESG 수준이 향상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ESG에 대한 요구는 기업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 전반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산하의 공급망에 포함되어 제품을 납품하는 영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에 대한 ESG 요구는 하청업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RE100 캠페인은 가입기업이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러한 요구는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supply chain)에 위치한 모든 협력사에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처럼 공급망 단위로 ESG 수준 향상을 요구하는 일은 점차 확대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공급망 전반에 걸친 ESG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예로 LG전자나 아모레퍼시픽은 협력사 선정 시 생산과정의 안전, 노동 및 환경 측면에서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고려한다.

가용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ESG 대응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하여 사업 범위가

9) 「은행 “환경 오염 기업에 대출 않겠다”...여신도 투자도 ESG 중심 재편」(2021.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6).

10) 「KB금융 “화력발전 투자·대출 더는 안한다”」(2021. 1. 25),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18).

11)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품을 자체 제작하는 대신 하청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하거나, 작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험작업 진행과 관련하여 안전에 투자하는 대신 아웃소싱을 하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외주회사에 전가하는 방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고 주요 이해관계자가 납품업체인 대기업으로 단일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좁은 만큼 ESG 대응 범위도 대기업보다 좁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은 대기업처럼 전방위적인 ESG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중요도를 고려하여 선별적 ESG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소기업은 지속가능보고서를 포함한 ESG 정보 공시와 관련하여서도 핵심 이슈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ESG 관련 공시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는 것은 자원이 제약된 중소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핵심 산업군과 관련하여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공시 핵심 원칙과 고객이 요구하는 핵심 ESG 정보를 중심으로 공시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방법일 것이다.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대부분 ESG 평가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개발된 것으로, 영업의 범위와 기업 자원의 차이가 큰 중소기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ESG 활동의 평가가 대출심사, 정책금리 적용 및 대기업 납품을 위한 평가 등에서 널리 활용될 예정인 만큼 중소기업의 환경을 잘 고려한 지표의 개발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ESG 평가지표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 예로 2021년 8월 한국기업데이터(KED)가 ‘중기 ESG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소기업은 내부자원이 부족하므로 증가하는 ESG 활동 및 공시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 나수미(2021)는 현재 ESG 대응이 미비한 중소기업은 ESG 환경 변화에 적응할 때까지 단기적으로는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산업이나 영업 모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ESG 위험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을 통해 ESG 위험에 노출되어온 대기업 경영자들과 달리 상당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현재 ESG

위험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경영자들이 ESG 위험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ESG 위험이 현실화된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응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ESG 관련 공시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나, 거래처로부터 ESG 평가를 이유로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이를 해결하고 갈등을 중재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ESG 관련 유관부처들이 2021년 8월 발표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¹²⁾은 이러한 고민들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다. 우선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집중할 활동과 공시할 항목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내재적인 변화를 유도하여 자체적으로 ESG 환경에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세계적인 규제 흐름을 고려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여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기업은 ESG 채권을 발행해 ESG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나 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정책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데이터 관리도 중요하다. ESG와 관련된 정보 가운데 상당부분은 비재무적 정보인데, 중소기업은 비재무적 정보 관리가 대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ESG 관련 보고서를 제작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에 직면한다. ESG 관련 자료 작성에 필요한 정보 리스트를 제시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ESG 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ESG 위험 대응 관련 협력을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 관계부처합동(2021. 8. 26),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민간영역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ESG 대응이 미비한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ESG 관련 자본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ESG 관련 활동은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ESG 관련 생태계를 지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로 인하여 생태계가 세계적 변화의 흐름에서 이탈하는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3장



ESG 기업 사례

-
1. 파타고니아
 2. 유니레버
 3. 슈나이더일렉트릭
 4. CLP그룹
 5. 외르스테드
 6. 월마트, 페덱스
 7. SK이노베이션
 8. 풀무원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ESG 활동에 대한 요구에 발맞추어 많은 해외 기업에서 ESG 관련 활동 수준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ESG 활동들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수준에서 주로 진행된다. 수많은 기업의 ESG 활동을 모두 조사해 이 보고서에 담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ESG 국가전략에 초점을 맞춘 본 보고서의 목적상 시사점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SG 활동에서 모범적인 대표적 기업들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ESG와 관련하여 기업, 그리고 자본시장을 포함한 민간영역과 국가의 협력 및 역할분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파타고니아

파타고니아는 ESG에 대한 요구가 미미하던 시기부터 ESG 관련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ESG의 아이콘과 같은 기업이다. ESG에 대한 자본시장의 요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ESG 관련 활동을 진행해 온 만큼 파타고니아의 ESG 활동은 국가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진행되기보다는 기업단위에서 공급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계약, 또는 자발적인 활동의 형태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 쌍방의 공정한 계약에 의해 추진되는 ESG 활동들은 전적으로 시장에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표 1-1 참고). 그러나 일부 활동에서는 기업의 유인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된다.

파타고니아 창업주 이본 쉬나드는 본인의 클라이밍 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본 쉬나드가 제작한 장비는 시장에 판매되던 제품보다 품질이 좋았으며, 이를 알게 된 클라이머들 사이에서 이본 쉬나드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겨났다. 이본 쉬나드는 이들에게 자신이 제작한 장비를 판매하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높은 수요에 힘입어 쉬나드이쿵먼트

(파타고니아의 전신)라는 암벽등반용 장비 생산업체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70년대에는 미국 암벽등반용 장비 생산업체 가운데 최고 매출을 기록하기에 이른다.

1970년까지 쉬나드이쿱먼트의 핵심 제품은 해머를 이용하여 암벽의 크랙에 박아 넣어 디딤대로 사용하는 장비인 피톤이었는데, 피톤은 암벽에 영구적인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이본 쉬나드는 피톤이 암벽 훼손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자 피톤을 대신하는 장비인 초크를 개발하여 판매를 늘리는 대신 피톤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피톤이 회사에 안겨주는 매출보다도 암벽에 남기는 영구적 훼손을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피톤 판매중지는 파타고니아(와 그 전신인 회사들)가 제품과 연관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경영의 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시작한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파타고니아는 사업목적, 즉 사명(Mission)을 지구를 되살리는 것으로 설정하고,¹³⁾ 사업을 위해 환경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보호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¹⁴⁾ 이러한 기업 사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 및 비사업 활동에서 ESG 활동이 진행된다. 1985년부터 매출의 1%를 환경보호에 기부하는 ‘1% for the Planet’¹⁵⁾이라는 프로그램은 지금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누적 기부금액이 1,4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부활동은 파타고니아의 적극적인 ESG 활동의 일부일 뿐이다.

파타고니아는 핵심 사업에서도 ESG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핵심 사업에서는 수익성이 우선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파타고니아는 경영 의사결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의사결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경향은 원재료의 선택에서 뚜렷하다. 파타고니아는 버려진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생산한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의류생산에 사용하는데, 이는 최종제품 제조과정

13) 파타고니아코리아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20).

14) 2021 ESG 커넥트포럼,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1).

15) Patagonia, 1% for the Plane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0).

까지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면직물 제품생산의 경우, 목화 재배에서 많은 농약이 사용될 뿐 아니라 면화를 원단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도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1994년부터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직물 사용을 점차 늘려 왔고, 1996년부터는 모든 면 제품을 유기농으로 재배된 면화만을 원재료로 하여 제작한다.

파타고니아는 친환경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을 줄이는 활동도 진행한다. 이들은 생산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므로 생산을 줄이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을 만들어야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새 옷을 사는 대신 훼손된 옷을 수선해 착용하는 운동을 펼치며 관련된 유튜브 동영상상을 올리는 등 기존의 자사 제품을 오래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억제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매출확대를 최대 목표로 둔 일반 기업들의 활동과는 분명하게 결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2011년 『뉴욕타임스』¹⁶⁾에 게재한 블랙프라이데이 광고에서 파타고니아는 자신들의 인기상품인 점퍼를 사지 말라는 광고를 게재한다. 이 광고에서 파타고니아는 그 점퍼가 제조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물과 탄소배출량, 그리고 제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량 등을 공개하면서 자신들의 제품이 생산될 때마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소상히 밝히고, 블랙프라이데이 할인으로 저렴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장에 필요 없는 점퍼를 구매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알렸다.

친환경 활동의 범위는 파타고니아의 관계기업으로도 확대된다. 파타고니아는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에만 주어지는 ‘B Corporation 인증’¹⁷⁾을 받은 기업이 아닐 경우 그 기업의 단체복 주문을 받지 않는다.

16) Patagonia, "Don't Buy This Jacket, Balck Friday and the New York Times,"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7. 26).

17) 환경보호에 적극적인 기업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연매출 1%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에만 주어지는 인증이다. 당연히 파타고니아도 B corporation 인증기업이다(B Corpor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6)).

파타고니아는 앞에서 기술한 것 외에도 각종 환경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환경에 대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공급자와 도급업자의 관계를 중시하고 공정무역 인증 제품을 판매하는 등 환경 이외의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해관계자 전반을 아우르는 경영을 실천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본 보고서의 주제인 국가전략과 관련지어 평가해 보면, 파타고니아의 ESG 활동 대부분은 사적인 계약 또는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서 진행되는 반면,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제공과 활용, 그리고 제도 등의 개입은 극히 적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수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원자재 및 소모재와 관련된 생산과정의 환경 오염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폐기물관리 및 자원재활용의 거시적 계획 수립과 공동 처리 인프라 및 처리방법을 제공하며, 산업 분야별로 적절한 목표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업이 환경보호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표 1-1]의 국가가 '시장과 제휴' 또는 '시장을 선도'에 해당한다.

2. 유니레버

유니레버(Unilever)는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한 후에 ESG 관련 활동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의 요구나 정부정책 등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기업의 자발적인 내부전략 수정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유니레버는 컨설팅기관인 글로브스캔(GlobeScan)과 싱크탱크인 서스테이너빌리티(SustainAbility)에서 실시한 2020 Leader Survey에서 10년째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2000년대 경쟁사인 프록터앤드갬블(P&G: Procter and Gamble)과 경쟁에서 뒤쳐져 고전하던 유니레버는 2009년 당시 네슬레 미국 법인장이자 경쟁사인 P&G에서 27년간 재직한 경력이 있던 폴 폴먼(Paul Polman)을 CEO로 영입한다. 폴 폴먼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유니레버의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전략을 수정하였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경영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2010년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¹⁸⁾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10년간의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①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고 ②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절반으로 줄이고 ③ 수백만 명의 생계수단을 강화하겠다는 큰 목표와 이에 필요한 전략을 담았다. 이 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기업의 재무적 성장 목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환경 및 사회적 가치 목표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폴 폴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은 전담 조직 차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함께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유니레버는 CSR 전담 조직을 해체하였다. CSR 전담조직,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경우 대부분 부서는 매출을 높이고 성장을 꾀하는 활동에 기본적으로 초점을 두게 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은 CSR 전담조직의 업무일 뿐 자신들의 핵심 업무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니레버는 조직 개편을 단행함과 동시에 분기별 실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단기 실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구성원들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보다 단기적인 재무적 결과에 초점을 두어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단기적인 재무적 결과보다 장기적인 목표, 즉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경영하겠다는 것이 이러한 결정의 목적이었다.

이후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제품 개발단계부터 전사적으로 반영되고 있

18) Planet & Society | Unilev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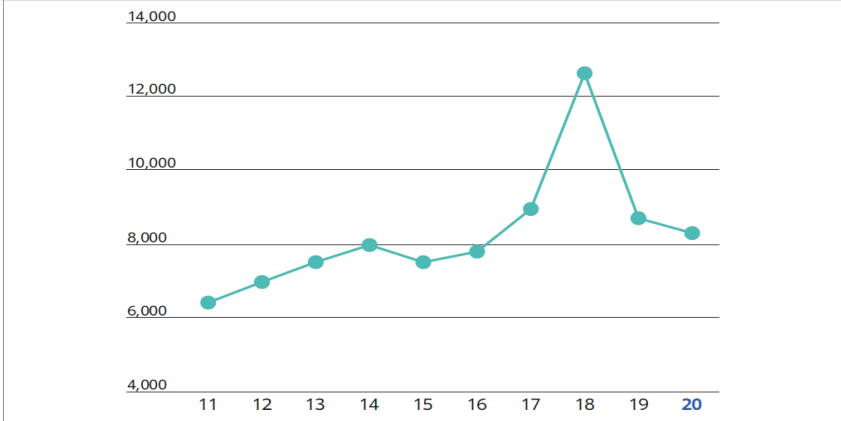
다. 이러한 노력은 지속가능성 향상 목표의 달성뿐만 아니라 재무적 성과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 대표적 사례가 유니레버의 인기상품 가운데 하나인 립톤을 지속가능 방식으로 재배된 차잎만을 구매하여 생산하기로 한 결정이다. 유니레버가 지속가능 방식으로 재배된 차잎만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기 이전에는 차잎 공급자들이 차 재배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없애고 경작지로 개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차 재배과정에서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였다. 열대우림의 파괴와 화학물질의 사용은 재배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고 토양 침식을 가속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수확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었고, 이를 벌충하기 위한 열대우림 파괴와 화학약품 사용량은 더욱 많아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즉, 기존의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또한 기존의 방식에서는 재무적 성과, 즉 구매단가 절감에 초점을 두어 따라서 공급자 측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열악한 경제 환경에 내몰리는 문제가 있었다.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분위기에서 유니레버는 기존의 차 재배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평판에 위험요소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재배한 차만을 구매한다면 구매단가의 상승이 예상되었다. 유니레버는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대가로 이러한 비용 상승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구매원가를 증가시켰으나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수확량이 5~15%가량 증가했고, 차잎의 질이 높아졌으며 운영비가 절감되었고 판매가격도 높일 수 있었다. 대략 5% 비용 상승이 발생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입은 1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재무적 측면에서는 차 공급자 측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잠재적인 평판하락 위험도 낮아졌다.

그림 3-1. 유니레버의 영업이익 추이(2011~20년)

(단위: 백만 유로)



자료: Unilever(2020), "Unilever Charts 2011 - 2020 in Annual Report and Accou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7).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레버의 ESG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공 식품의 생산에서 트랜스지방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 농산물 사용량을 늘림으로써 건강과 환경보전에 신경쓰며,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 또한 전사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유니레버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러한 노력은 결과적으로 재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오히려 2009년 이후 유니레버의 영업이익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에 있다(그림 3-1 참고). 이러한 성장추이가 전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속가능경영이 반드시 재무적 성과의 하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립톤 사례는 ESG와 관련된 글로벌기업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시사점을 준다. 유니레버는 유럽에 기반을 둔 기업이지만, 립톤 찾임 공급자는 주로 열대 우림지역에 존재하며, 립톤의 차는 유럽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에서 판매된다. 이처럼 국경을 넘어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본사와 그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부서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일어나는 지리적·재무적 위치와 의사결정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는 위치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처럼 지리적 거리가 존재할 때에는 기업 내부적인 감시와 통제가 어렵다. 이러한 경우 ESG 활동 또한 본사와 해외사업장 사이에 충분한 통제가 어려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통제의 어려움을 본사 차원에서 악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기업 내부적으로 통제가 어렵다면 기업 외부자인 자본시장 참여자들 또한 해외 사업장의 ESG 활동까지 감시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국가의 정부가 적절한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국경에서 그 권한이 끝나는 한 국가의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사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위로 기업의 ESG 관련 활동에 개입하거나 책임지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글로벌기업의 전반적인 ESG 활동은 기본적으로는 자본시장에 맡기되, 자국 영역 내의 글로벌기업 사업장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기업의 ESG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국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서는 국가 간 공조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슈나이더일렉트릭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슈나이더일렉트릭(Schneider Electric)은 기존의 조선, 해양, 해외건설, 정유 분야의 사업모델을 떠나 지속가능성의 부각과 함께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 분야로 이전하면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기업이다. 앞서 살펴본 소비재 관련 기업과의 차이점은 사업 자체가 최근의 지속가능성 강화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이 현재 주력 사업으로 삼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은 통일된 규격이 필요한 특성으로 인하여 정부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국가와 시장의 협력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2021년 캐나다의 코퍼레이트나이츠(Corporate Knights)가 선정한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에서 1위로 선정¹⁹⁾되는 등 지속가능경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80여 년 전인 1836년 아돌프 슈나이더(Adolphe Schneider)와 외젠 슈나이더(Eugène Schneider) 형제는 버려진 주조 공장을 인수하여 슈나이더일렉트릭의 전신인 슈나이더 앤 시에(Schneider & Cie)를 설립하였다.²⁰⁾ 이후 증장비와 조선을 포함한 운송장비와 같은 철강재를 이용한 대규모 하드웨어 제조업 분야에서 다각화된 대기업으로 성장한다. 1975년 슈나이더그룹은 배전장비 제조업체인 메를린 게린(Merlin Gerin)의 지분을 인수하여 전기산업에 진입하였다. 자산매각과 인수를 통하여 에너지 공급 및 그와 관련된 자동화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1999년 사명을 현재의 슈나이더일렉트릭으로 바꾸었다.

슈나이더일렉트릭은 현재 청정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전력 관련 솔루션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다. 전력산업에서 친환경과 탄소중립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기업과 가정에서 이와 관련된 설비 및 기술 수요가 많아졌는데, 슈나이더일렉트릭의 핵심 사업은 이러한 기술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에 자문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²¹⁾ 슈나이더일렉트릭이 제공하는 솔루션은 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와 관련된 것들이다.²²⁾ 가정의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솔루션으로도 사업 확대를 꾀하는데, 2021년 CES에서는 ‘Smart and Sustainable Homes’라는 주제로 주택과 관련된 친환경 전력 및 에너지 관리 시스템 개발 계획²³⁾을 발표한 바 있다. 철강

19) Corporate Knights(2021), “Top company profile: Schneider Electric leads decarbonizing megatren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9).

20) 설립 당시 명칭은 ‘Schneider & Cie’이다. 이후 다각화를 거쳐 Schneider Group이라는 대기업으로 이름을 바꾼 후, 1999년부터 슈나이더일렉트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21) Schneider Electric Korea,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22) 「[현장 돋보기] ESG 경영은 마라톤... 명확한 목표와 세밀한 실행력이 필수」(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7).

23) CES(2021), “Schneider Electric: Smart Sustainable Homes(EU),”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기반 하드웨어 제조업체에서 통합 에너지관리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분야로 핵심 사업을 재구축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성장을 도모하는 첨단 기술기업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²⁴⁾ 에너지산업에서 탄소배출 절감이 주요 화두로 부상함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친환경에너지 사업은 한 국가의 에너지 관련 인프라 정책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국가는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을 갖고 장기적인 에너지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정부정책의 수립과 관리에 따라 사업위험이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친환경에너지 전환기업의 사업위험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키지 않고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제도를 정비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에너지 보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기업뿐만 아니라 전력소비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태양광 발전에서 보듯이 분산전력의 성격을 가지는 친환경에너지 특성상 발전인프라 설치와 관련된 금전적·비금전적 부담이 전력 소비자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²⁵⁾ 이러한 부담은 친환경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된다. 따라서 전력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서 탄소중립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또한 국가의 몫이다.²⁶⁾ 태양광의 발전단가가 크게 낮아지는 등²⁷⁾ 친환경에너지의 경제성도 많이 개선된 상태이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으며,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본 절에서는 핵심사업 재편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으나, 슈나이더일렉트릭은 성평등 및 생물 다양성 등과 관련된 ESG 활동도 추구하는 등 핵심 사업 외에서도 ESG 활동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Newswire(2021), "Schneider Electric included in Bloomberg Gender-Equality Index for fourth consecutive ye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슈나이더 일렉트릭,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책 공약 발표로 ESG 경영 지속」(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6).

25) 분산전력에서는 많은 전력소비자들이 프로슈머개념으로,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26)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이 예 가운데 하나다.

27) NC WARN(2010), "Solar and Nuclear Costs - The Historic Crossover - A Report by Dr. John Blackbur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4. CLP그룹

대표적 탄소배출 사업인 화력발전 분야에서는 전력생산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 분야는 석탄화력발전 비율을 낮추라는 압력이 시장으로부터 강하게 제기 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에 전력기업들이 적응하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움직임들이 기업 간에 속도 차이를 두고 진행 중이다. 홍콩의 전력회사인 CLP그룹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전력사업을 재편하는 중이다. 전력 관련 분야는 인프라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이에 따라 국가의 의사결정과 시장 조성기능 등이 ESG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LP그룹은 1901년에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는 홍콩, 중국 본토, 인도, 동남아시아, 태국 및 호주에서 전력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전력공급 기업이다. CLP그룹은 1990년까지 전적으로 석탄을 이용한 발전만을 실시하였다. 비록 1990년대에 들어서 원자력 발전을 전력생산 인프라에 추가하였으나,²⁸⁾ 200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가스화력 발전이 주요한 발전방식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특히 환경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²⁹⁾

CLP그룹은 탄소배출을 감축하라는 시장의 요구와 세계적 경향을 인지하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업위험으로 다가올 것으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³⁰⁾ 2004년 CLP그룹은 처음으로 기후전략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28) 원자력을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원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현재 녹색 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200309-sustainable-finance-teg-fin-al-report-taxonomy_en.pdf(검색일: 2021. 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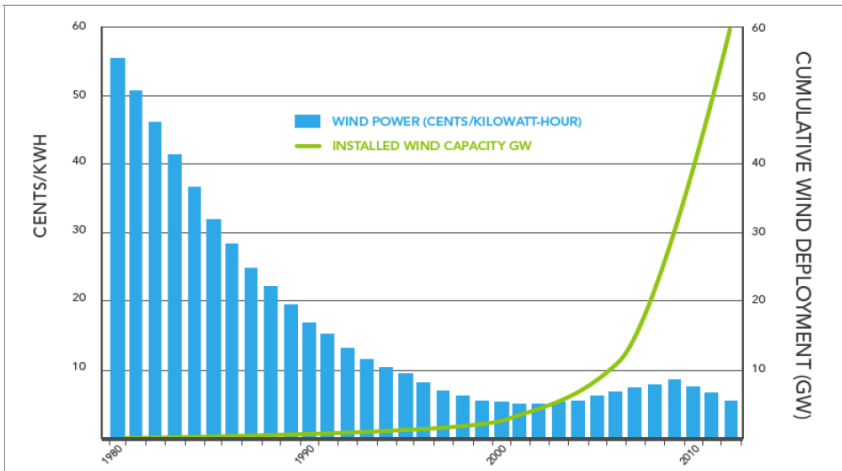
29)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이후 제법 많은 시간이 지난 2013년에도 CLP그룹이 생산한 전력 가운데 석탄화력발전에 의한 비중이 65.4%나 되었다. 같은 해, 가스화력발전이 14.4%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2000년 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는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더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유추된다.

30) Serafeim, Henderson, and Lau(2015).

CLP그룹은 전체 전력생산량 가운데 재생가능 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의 비중을 2004년 1%에서 시작하여 2010년 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2004년까지는 정부 규제 등에 의해 탄소저감 활동이 강제되는 시기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에 비해 친환경적인 대안들인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등의 발전단가가 높았다. 그러나 CLP그룹은 장기적으로 친환경적 발전방식의 발전단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그림 3-2, 그림 3-3 참고). 또한 탄소배출을 줄이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고려할 때 석탄화력발전은 규제 도입으로 인해 환경부담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이를 종합할 때 2004년에는 친환경 발전이 재무적으로는 나쁜 선택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면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CLP그룹은 결론 내리고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확대하기로 스스로 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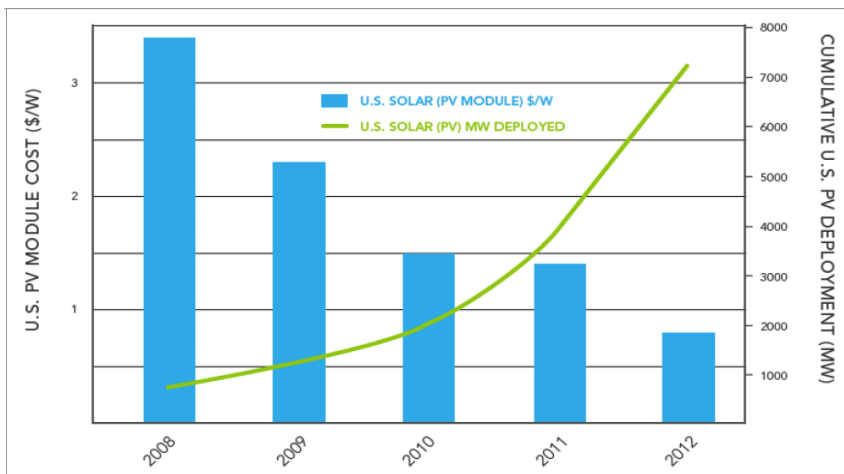
그림 3-2. 풍력발전 단가 및 미국의 육상 풍력발전 용량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2013), "Revolution Now: The Future arrives for Four Clean Energy Technologies," p. 2,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 발전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CLP그룹은 이러한 움직임을 더욱 가속하여 2007년에는 ‘Climate Vision 2050’이라는 앞서보다 강력한 계획을 발표한다. 이 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50년까지 CLP그룹의 발전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탄소 집중도(intensity)를 75%로 줄여, 2050년에 킬로와트당 0.2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수준으로 탄소배출을 감소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전력생산량의 20%를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발전방식으로 생산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CLP그룹의 전체 발전용량 가운데 석탄발전의 비중은 2016년 53.1%부터 2020년 48.6%까지 꾸준히 떨어지는 추세에 있으며,³¹⁾ 기존의 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탄소배출 저감활동이 진행 중이다.

그림 3-3. 태양광발전 단가 및 태양광발전 용량 추이



자료: U.S. Department of Energy(2013), "Revolution Now: The Future arrives for Four Clean Energy Technologies," p.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15).

31) CLP Group(2020), "Sustainability Report," p. 59.

5. 외르스테드

CLP그룹과 같은 전력산업에 종사하나 탄소배출 저감활동에서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기업 중에 외르스테드(Ørsted)가 있다. 덴마크 기반의 전력회사인 외르스테드 또한 CLP그룹과 유사하게 탄소배출을 수반한 발전사업에서 친환경 전력생산으로의 전환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외르스테드와 CLP그룹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력 관련 분야에서 저탄소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1872년 북해의 가스 및 석유자원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덴마크 국영기업 Dansk Naturgas A/S가 외르스테드의 전신이다. 이 회사는 Dansk Olie og Naturgas A/S(DONG)로 사명을 변경하고 전력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에 참여하였다.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동(DONG)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2005년 이 회사는 전력공급회사 몇 개를 합병하여 DONG Energy라는 회사로 전환하였으며,³²⁾ 2017년 현재의 외르스테드로 사명을 변경한다.

합병이 승인된 2006년의 DONG Energy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비중이 85%에 달하는, 탄소집약적 사업모형을 가진 기업이었다.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을 외르스테드가 배출하였다. 이러한 생산방식은 탄소배출 저감을 요구하는 당시 유럽의 분위기에서 지속가능하지 않았다. 2009년 외르스테드는 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때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06년 발전량 가운데 15%만을 담당하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85%로 올릴 계획이었다.

외르스테드³³⁾의 재생에너지 발전 전환은 CLP그룹보다 더욱 빠르게 전개

32) 합병 승인은 2006년에 이루어져서 2006년을 DONG Energy 설립으로 보고하기도 한다.

33) 위에서 외르스테드라는 이름은 2017년부터 사용하였다고 하나, 편의상 DONG를 외르스테드라고 부르기로 한다.

되었다.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석유 및 가스 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단지 조성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였다. 계획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85% 달성 시점을 2040년으로 설정했으나 실제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 85%를 달성한 시점은 2019년이었다. 석탄 사용량은 87% 줄었으며 2006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은 72% 감소하였다.

풍력발전 비중을 크게 늘린 결과, 외르스테드는 해상풍력발전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2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2006년 탄소집약적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던 기업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으로 완전 변신에 성공한 것이다.

2020년 다보스포럼은 'The 100 Most Sustainable Companies of 2020' 가운데 1위로 외르스테드를 선정하였다. 또한 2020년 Corporate Knights 선정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Global 100 Most Sustainable Corporations in the World)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외르스테드는 202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³⁴⁾ 또한 2032년까지 천연가스 구매 및 판매, 그리고 공급망과 관련된 탄소배출량³⁵⁾을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40년까지는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발자국 제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CLP그룹과 외르스테드는 발전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ESG 활동의 전개속도, 특히 석탄화력발전 등의 화석연료 사용 축소 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의 상당부분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의 정책과 캠페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외르스테드가 본사를 두고 있는 유럽은 EU 차원에서 환경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르스테드의 에너지 비중 전환은 이러한 환경에서 가속화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34) 이것은 외르스테드만의 목표다. 공급망상의 기업들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35) 2025년에는 자사의 탄소중립만을 목표로 하였고, 2032년에는 자사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자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서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의미이다.

덴마크 정부는 외르스테드의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이므로, 정부의 환경정책이 외르스테드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주었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외르스테드의 움직임이 CLP그룹보다 크게 앞서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정부정책의 차이에서 찾아볼 수 있다.³⁶⁾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한국전력³⁷⁾은 최근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석탄발전과 관련된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에 수립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계속 진행하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³⁸⁾ 한국전력 역시 정부 지분이 51%에 달해서 정부정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전력과 외르스테드의 석탄화력발전 축소 행보의 속도 차이는 정부정책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가 인프라와 연관된 산업에서는 정부가 ESG와 관련된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ESG 활동수준을 제고하고 촉진할 수 있을 것임을 CLP그룹, 외르스테드와 한국전력의 예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6. 월마트, 페덱스

사업모델에서 큰 변화가 없더라도 기업의 일상적인 활동에서 ESG 수준을 높인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월마트와 페덱스의 지속가능성 향상 사례는 사업 모델 자체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하는 수단을 다소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인 예이다. 이 두 업체는 물류 측면을 개선해서 ESG 활동을 강화하였는데, 이 지점은 국가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36) CLP그룹이 저개발국가에서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화력발전의 비중을 빠르게 줄이는데 제약이 컸을 것이라는 사실도 무시할 수 없다.

37) 3장 9절 참고.

38) Greenpeace(2020), 「블랙록 경고장 받은 한국전력, '석탄 투자 중단' 지직에도 투자강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월마트는 2005년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운송수단의 효율성을 2015년까지 두 배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의 특성상 물류활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 분야의 효율성 향상은 비용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다. 월마트는 2005년에 5.9mpg에 불과하던 연료효율을 2008년 7.1mpg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연비향상은 트럭에 공기저항을 떨어뜨리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간단한 작업으로 달성되었다. 이후에도 월마트의 연비 향상 노력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력은 약 8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비절감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 향상도 가져왔다. 월마트는 2015년까지 효율성 향상을 통해 트럭 연료비용을 연간 10억 달러가량 절감하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의 4%에 해당한다. 트럭에 부착물을 설치하는 추가 지출은 절감된 연료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월마트는 운송수단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각 매장에서 에너지 효율도 높였다.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월마트 매장의 에너지 효율은 약 1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용도 2억 5천만 달러가 절감되었다.

운송업체인 페덱스 또한 운송에서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였다. 페덱스는 운송차량을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로 교체하는 계획을 진행하였다. 페덱스는 차량 20%를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차량으로 교체한 결과, 연료소비가 19% 절감되었다고 밝혔다.

두 업체 모두 물류운송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므로, 물류 운송이라는 기능은 유지하는 대신 친환경적인 접근을 통해 재무적 성과와 ESG 활동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였다. ESG 활동의 중요성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사업모델의 제약으로 ESG와 상충하는 부분이 발생한다. 월마트와 페덱스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이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수단의 발견과 전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페덱스의 경우 차량을 전기차 혹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전 인프라 설치 및 친환경 차량 교체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등의 방법을 찾아볼 수 있다. 단, 이러한 지원은 산업 및 기업마다 비즈니스 모델이 서로 다른 만큼 세심한 정책적 설계가 필요하다.

7. SK이노베이션

해외 기업들이 일찍이 ESG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것에 비하면 국내 기업의 ESG 활동은 상대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특히 환경 분야의 대응이 늦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³⁹⁾ 그러나 이제는 탄소배출 저감과 관련해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한국기업들도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탄소배출 저감 이외에 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부터 울산공장에서 감압잔사유 탈황장비(VRDS: Vacuum Residue Desulfurization)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 장치는 중유에서 황 성분을 걸러내는 장비인데, 이 장비로 황을 걸러낼 경우 중유를 연소시킬 때 발생하는 황산화물의 86%가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SK이노베이션이 VRDS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1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 저유황 중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략 연간 3천억가량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SK이노베이션은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의 핵심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공정 개선 작업을 통한 친환경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벤젠 및 자일렌 생산 공정에서 흡착설비를 제거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39) 「EU 수출 '탄소 리스크' 가시화... "韓기업 받아들 청구서만 연 1兆"」(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20).

시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였으며, 원유 정제작업에 들어가는 핵심장비인 열교환기 세척을 자동화함으로써 용수를 절감하는 등 일상적인 공정 개선을 통한 친환경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활동 사례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정부가 나름의 역할을 함으로써 기업의 활발한 친환경 활동을 촉진하게 할 여지가 있다. 유해물질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은 현재도 존재한다. 그러나 글로벌한 ESG 강화 추세하에서의 환경 관련 규제 및 감독은 유해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단계를 떠나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EU의 규제가 EU 소속 국가와 기업들이 탄소저감 활동에서 선도적 위치에 서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환경 관련 활동은 기업으로서는 재무적 부담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낮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기업의 대응수준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ESG 관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의 정체되지 않은 다양한 요구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줌으로써 ESG 활동과 관련된 시장과 기업 사이의 마찰을 줄이는 완충역할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할 수도 있다.

8. 풀무원

ESG 가운데 기업에서 가장 관심이 덜한 분야는 G, 즉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다.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한국의 대다수 기업이 대주주에게 통제되고 있다는 점과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약한 한국적 특성이 기업지배구조에 관하여 기업들이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한국기업의 약한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다국적 금융기

관들이 실적뿐만 아니라 ESG를 투자의 주요한 지표로 활용함에 따라 기업지배 구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G와 관련된 모범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로 풀무원을 소개한다.

풀무원은 ESG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기업 가운데 선진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풀무원은 2017년부터 이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업 차원의 ESG 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친환경 활동 강화로 이어졌다. 포장 용기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비중을 늘리는 등의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사탕수수를 활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포장재 공급망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등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풀무원의 환경 관련 활동과 사회책임 활동도 높은 평가를 받지만, 풀무원의 ESG 활동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지배구조(G)이다.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한국 기업에서는 대주주와 관련된 위험요소나 돌발사건이 많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는데, 풀무원은 기업지배구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주주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낮다는 특징이 있다.

풀무원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경영권 승계 부분이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해외 기업들은 경영자 교체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과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승계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녀로의 성공적 승계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안정성이 저하되거나 각종 잡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풀무원 창업자인 지배주주 남승우 전 대표는 풀무원에 입사하여 사내에서 경영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경영인 이효율 대표에게 경영권을 승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승계로 인한 경영공백이나 사업의 불확실성은 발생하지 않았다.

풀무원 그룹 내 기업 간 소유구조도 주목할 만하다. 풀무원은 지주회사 체제로 운영되며,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전량 또는 절대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책임경영에 필요한 소유구조를 갖추고 있다. 풀무원의 지주회사는 2020년 7월에 풀무원생활건강(주)의 타인지분을 매입함으로써 풀무원생활건강(주)의 지분을 전량 확보하였으며, 2021년 2월 네슬레가 보유하고 있던 (주)풀무원샘물의 지분을 매입하여 70% 지분을 확보하는 등 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 비율을 높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풀무원 지주회사의 8개 자회사 가운데 5개 자회사는 100%, 2개 회사는 각각 70%와 69.3%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지주회사가 (주)힐리언스를 제외한 모든 자회사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다.⁴⁰⁾ 지주회사가 절대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을 가진다는 것은 자회사의 경영상 문제에 대해 지주회사가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소유구조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

이사회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등기이사 11명 가운데 7인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외이사 가운데 3인을 여성 임원으로 선발하여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사회 내에 8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배구조에서 우수성은 대외적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0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평가하는 ESG 등급에서 풀무원은 지배구조에서 A+ 등급을 받았다. 같은 평가에서 환경부분은 A, 사회책임 부분에서 A+를 받음으로써 2020년 ESG 부분 최우수기업상을 수상하였다.

풀무원과 같이 기업지배구조 및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한국의 우수 기업 대부분은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연인⁴¹⁾ 대주주가 존재하며,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들이 수시로 보고된다. 가공자본을 통하여 안정적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 일가의 이기적 편향(Self-serving bias)은 이사회의 존재나 주주총회라는 제도만으로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법

40) 풀무원(2020), 「(주)풀무원 제37기 사업보고서」, p. 440.

41) 법인이나 기관투자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여 한국의 특징적인 소유구조로 인한 대리인 문제를 통제할 방법을 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분을 통해 절대적 통제력을 가진 대주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주주의 권한은 소유한 지분을 통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사적이익 추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법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소액주주 보호 관련 법 및 규제는 외관상으로는 해외 여러 국가들과 비교해도 부족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세부사항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성부 2020).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담당해야 할 몫이 크다고 판단된다.

9. 한국기업의 ESG 관련 이슈

한국기업들도 ESG위원회를 조직하거나 ESG 경영 선포식을 여는 등 ESG 활동과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기 보다는 대외적인 요인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여 단지 그들의 눈길을 무마하는 방식으로 ESG 활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견된다.

(주)한화의 경우를 예로 살펴보자. (주)한화는 2020년 11월 집속탄 제조사업부를 매각하였다. 집속탄은 넓은 영역에 걸쳐 광범위한 공격을 가하는 특징으로 전투병력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피해를 줄 소지가 다분한 무기이다. 유엔을 중심으로 세계 많은 국가는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2010년에 금지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한국은 휴전상황을 이유로 이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한화는 집속탄을 계속 생산할 수 있었는데, 돌연 2020년 7월 집속탄 제조부분의 물적 분할을 발표하고 11월에 이 사업부를 매각하였다. 이러한 매각은 (주)한화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이라기 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였

다.⁴²⁾ 유럽 연기금이 (주)한화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이 발생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한화그룹은 그룹차원에서 핵심 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집속탄 제조로 애로를 겪게 되었다. 집속탄 제조기업인 (주)한화는 태양광 사업의 주체인 (주)한화솔루션의 지분을 보유한 모기업이다. 모기업이 집속탄 제조업체라는 이유로 유럽기업들이 태양광 사업 협력업체로 (주)한화솔루션을 선택하기를 꺼렸고, 이로 인해 한화그룹은 태양광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주)한화의 집속탄부문 매각은 태양광 사업의 추진 또한 고려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즉, 집속탄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염두에 둔 능동적 선택이라기보다는 투자자와 협력업체의 압력으로 인한 수동적인 선택이라는 것이다.

한국기업의 수동적인 ESG 대응은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기도 했다. 2020년 6월 IEEFA(Institute for Energy Economy and Financial Analysis)는 “Question Time for KEPCO’s Board”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하여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거부감이 증가하고 친환경에너지를 통한 발전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한국전력(KEPCO)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적 위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2020년 2월에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한 것은 한국전력의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탄소배출 저감 노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IEEFA의 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인 2020년 4월에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도 한국전력에 서한을 보내서 석탄화력발전소에 계속 의존하면 투자를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대외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2020년 10월 한국전력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주)한화와 한국전력의 사례는 한국기업이 글로벌적 ESG 강화 추세 속에서

42) 「한화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 사업 분리」(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8).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1년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가슴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수많은 영유아 사망자를 초래한 가슴기살균제 판매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Oxy Reckitt Benckiser)에 부과된 징벌이 단지 살충제를 인간에게 사용가능하다고 허위로 광고하였다는 이유로 부과된 벌금 4만 5천 달러가 전부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놀랄 만큼 기업범죄에 관대하다고 지적하였다.⁴³⁾ 이처럼 기업의 범죄에 너그러운 분위기 안에서 한국기업들은 그동안 환경 또는 사회적인 이슈와 관련한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사업을 영위해 올 수 있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하여 경영자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사소하게 생각하는 관성이 아직도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ESG가 투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간 등한시해 왔던 환경 또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기업이 관심을 가지라는 압박이 국제 자본시장과 공급사슬망 상의 이해관계자들을 통해 기업에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이는 한국 기업들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이슈는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다. 한국의 우수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지배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빈번하게 지배주주들의 불법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총수가 구속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것은 삼성의 MSCI ESG 등급을 A에서 BBB로 하락시켰다. 또한 지배구조의 문제로 삼성은 MSCI Korea ESG Leaders Index에서 제외되었다. 이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MSCI ESG Rating이 BB 이상이어야 한다. 경제적 실적에만 관심을 갖던 때와 달리 지배구조라는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삼성이 재무적 성과가 탁월할지라도 투자자들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많은 한국기업들의 공통된 문제다. 경영권을 가진 지배주주

43) “After Deaths From Disinfectants, Ex-Chief of Consumer Goods Firm’s South Korean Unit Is Jailed”(2017),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5).

에 의한 횡령과 같은 불법 또는 탈법 사례들이 여러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경영자인 지배주주에 의한 문제는 해외 ESG 평가에서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의 문제점을 드러나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투자 제한 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ESG 활동이 환경위기 대응과 탄소배출 저감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히 기업지배구조(G) 측면에 관해서는 큰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지 않다. 심지어 횡령 등의 혐의로 경영에서 잠시 물러났던 경영진이 복귀하여 ESG 담당조직을 총괄하는 자리에 배치되는 사례도 보고된다.⁴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G 측면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면 지배구조 문제에 소극적인 한국기업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SG 경영에서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은 여전하다. 과거의 주주자본주의 기조에서는 기업이 주주들의 부만 책임지면 되었지만 ESG 경영에서는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한 책임이 강조된다. 기업이 만드는 파이, 즉 부를 공유해야 할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알렉스 에드먼스(Alex Edmans)는 자신의 저서 *Grow the Pie*⁴⁵⁾에서 기업이 사회적 가치, 즉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함으로써 ESG 경영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이 이윤의 성장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의 성장 또한 기업이 원하면 언제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무적,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성장이 제약될 경우에는 기업이 산출한 가치를 이해관계자들이 나누게 되는 제로섬 게임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면 창출된 가치가 지배주주에게로 집중될 것이며, 소액주주들과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가치의 공유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될 것은 자명하다.

44) 「'횡령한 사람이 ESG 위원장?' ...김정수 복귀로 도마 위 오른 삼양식품」(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5).

45) Edmans(2020).

현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제도들은 소액주주들만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ESG 환경에서는 이해관계자 전반에 대해 기업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가 ESG 환경에서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의 책임에 대한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제4장



ESG 국가전략의 필요성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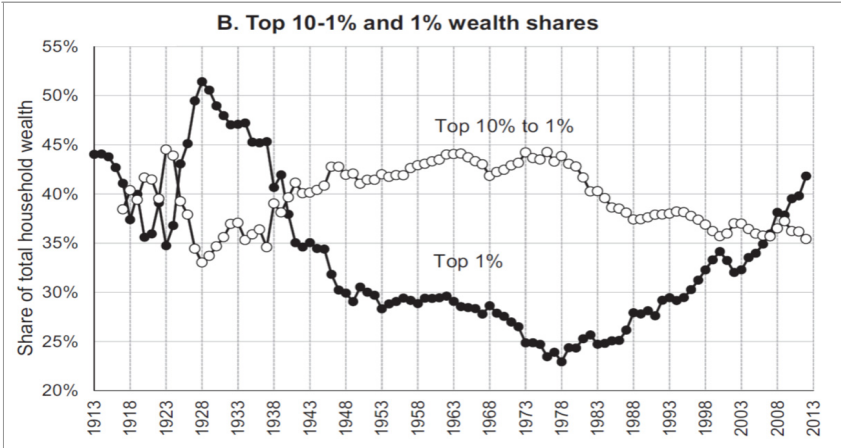


1. 기존의 사회문제 누적

최근 국제적으로 ESG 논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누적된 측면이 존재한다. 특히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대형 금융회사나 대기업 등이 사회경제 시스템의 위기상황에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비용은 공유화하면서 시장기제의 도덕적 정당성에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세계경제 전체로 급격한 생산 및 소비의 증가에 따라 전반적인 환경오염 증대와 대형 환경파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경제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소득 및 자산의 불평등 심화 추세가 학문적으로나 대중적으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그림 4-1 참고).

한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으며, 특히 근래에는 저출산 고령화와(그림 4-2 참고) 경제력 및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가(그림 4-3 참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주택가격 및 전세가 급등으로 상당수 서민의 주거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갈등 역시 나날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고용 측면에서도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및 파견하청, 그리고 청년실업 문제 등이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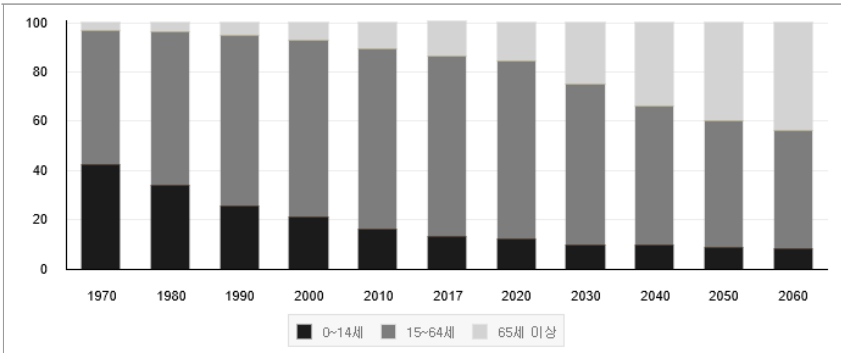
그림 4-1. 미국의 상위 1%와 10%의 부 비중 추이



자료: Saez and Zucman(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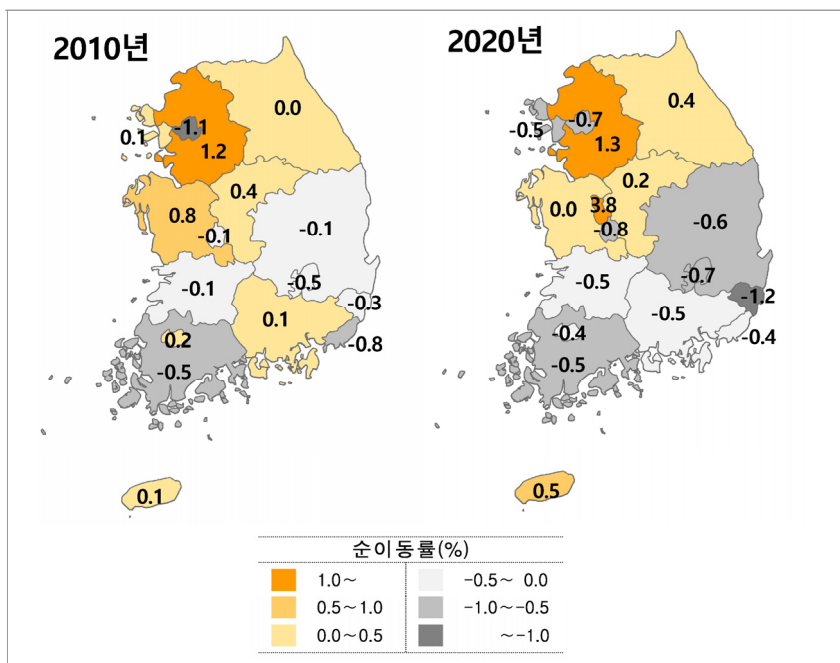
그림 4-2. 연령별 인구 구성비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 중위추계 결과.

그림 4-3. 지역별 인구 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는 사회적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상호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단편적인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풍선효과 등 부작용만을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근본적이고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데, 이러한 해결방안은 분권적 성격이 강한 시장보다는 집중적 성격이 강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모든 일을 정부가 다 수행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시장과 정부가 각자 효율성 우위 분야를 파악하여 적절한 역할분담 및 협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 시장과 정부 역할분담 경계의 변화

가. 자본주의 4.0

현대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 시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Kaletsky(2011)에 따르면 자본주의 체제는 크게 4 단계로 변화했다고 한다. 자본주의 1.0에서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국부론』을 출간한 이래 1929년 대공황 시기까지 자유방임형 시장경제체제가 운영되었다. 대공황을 계기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일반이론』이 출간되고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이 뉴딜(New Deal)정책을 실행한 이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시스템이 붕괴되고 오일쇼크(Oil shock)를 경험하게 되는 1970년대까지는 자본주의 2.0 시대로 정부의 정책적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다. 한편 1970년대 이후 학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향이 득세하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이 집권한 이래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까지는 자본주의 3.0 시대로 탈규제화 등 시장의 자율이 크게 강조된 시기였다. 자본주의 4.0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불안, 무역불균형, 핵확산, 에너지와 환경, 고령화 문제 등에 직면한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를 지칭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념적 갈등에서 벗어나 시장과 정부의 협조 솔루션이 필요할 것이다.

나. 도전에 직면한 주주가치 극대화 이념

오늘날 시장경제에서 중요한 경제주체 가운데 하나인 주식회사 대기업의 경우 주주가치 극대화가 가장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경영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전형적인 주주자본주의 논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회적 공헌 활동에는 경쟁우위가 없으므로 기업가치, 그중에서도 특히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Hart and Zingales(2017)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공헌활동을 분리해야 한다는 논지는 기업활동과 그 결과물 사이에 분리 가능한 가역적 관계성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중간적인 절충방안으로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1981년 주주지정기부(shareholder designated contribution) 프로그램을 통해 각 주주들이 지정한 분야에 기업이 직접 기부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주들이 직접 기부활동을 수행함에 따르는 세금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기업경영과 분리 가능한 것으로 증가된 기업가치에 근거해 주주가 개인적으로 수행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다른 예로 회사가 공해를 배출하여 수익을 더 많이 얻은 후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는 그 배당금을 오염물질 제거활동을 하는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기부활동 자체는 경영과 분리 가능하므로 회사가 수행하나 주주가 수행하나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회사가 수익이 줄더라도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기술을 이용한다면, 추후 오염물질 제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저공해 기술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규제가 어려운 모호한 상황도 많이 있으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가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외부효과 논의는 사회적 이익과 기업의 이익의 크기를 비교하여 당위성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관점의 논의들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art and Zingales(2017)는 개별 주주들이 투자에 따른 금융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 사

이에 주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의사결정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친사회적 경영결정에 영향력이 클 때, 즉 자신의 역할이 중요할 때 주주들은 친사회적 경영을 위해 금융적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 직관적으로도 개인들이 투표를 하거나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유사한 속성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시장과 정부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일반적으로 국가정책의 정당성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 현상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Tirole(2001)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의에서 이해관계자 접근법의 문제점으로 “경영자는 거의 언제나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시장실패라는 추상적 개념만으로는 거의 언제나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합리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는 용어가 말해주듯 많은 정책이 부작용을 낳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은 효율성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장이나 정부냐의 이분법적 이념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협조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정부는 시장에 비해 효율성 측면에서 열등한 경우가 많다. Wilson(1989)은 시장의 기업과 비교하여 정부의 관료는 목적(goals)이 아니라 제약(constraints)에 의해 작동된다는 특징이 있다고 강조한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관료는 대통령, 국회, 법원 등 여러 주인을 섬기므로 자기 부처에 대해 호의를 얻고 비판을 달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정부기관은 기업들에 비해 비효율적이며, 시장에 의해 규율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비효율성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부 서비스는 가능한 한 민영화하고 성격상 민영화가 어려운 분야는 제약적인 규제를 줄이고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침 등을 통해 효율

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⁶⁾

그럼에도 오늘날 상당히 많은 서비스가 여전히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근래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계약기제를 이용하는 경우 발생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 민영화 시 발생 가능한 과도한 경쟁이나 독과점 폐해, 그리고 불완전계약 및 정보의 손실, 복수의 주인이 존재하는 상황, 계약이 어려운 질적인 측면에 대한 과도한 무시 등을 그 이유로 설명한다.⁴⁷⁾

만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ESG 경영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면, 그리고 기업이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부는 기업이 그 역할을 더 잘 감당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rt and Zingales(2017)는 투자자들은 자신의 결정이 기업의 친사회적 경영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수록 금융적 이익을 포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기업의 친사회적 경영결정을 더 잘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된다면 친사회적 주주들의 영향력 실천도 더 증가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Fisch(1997)의 논의처럼 기업의 CSR 경영활동 또는 ESG 경영활동 등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인 동시에 기업이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는 또는 바람직한 것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이러한 친사회적 활동이 경영활동과 본질적으로 불가역적 관계성을 가져 기업의 직접적인 개입이 효율성 측면에서 정당화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시장과 정부의 경제적 역할분담에 대해 축구 경기를 비유로 들자면, 시장은 공격수, 정부는 수비수로 생각할 수 있다. 즉 공격수는 여러 번 실수하더라도 과감한 도전을 통해 결정적인 순간에 멋진 골을 넣은 것이 중요한 반면, 수비수는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46) Person(1991. 9. 1), "Book Review: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y James Q. Wils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47) Hart, Shleifer, and Vishny(1997).

축구 경기를 승리하기 위해 공격과 수비가 모두 중요하듯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의 조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술·전략 측면에서 근래에 들어 체력보강을 통해 전원공격 전원수비가 가능하도록 미드필드를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시장도 어느 하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술과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지속가능한 경제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새로운 기술발전의 활용

근래의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 발전과 첨단 금융수단 및 다양한 조직형태와 경영기법 등을 참고할 때, 기존 정부정책 개입의 영역을 새롭게 조정하고 그 방식을 혁신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분권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시장과 비교할 때, 중앙집중식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부는 대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적시적으로 반영할 때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 수집 및 처리 능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 따라서는 정부와 민간의 격차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정부에 더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파생상품이나 혼성증권 등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조직관리 및 비용관리 측면에서도 다양한 경영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정부가 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할 때, 기본적으로 대출을 이용하는 것과 지분투자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므로 기업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는 향후 중소기업이 성공하면 정부가 함께 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전환사채

(CB: Convertible Bond) 형태로 한다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방만한 경영을 억제하면서도, 동시에 성공에 따르는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원 대상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수단을 활용한다면 좀더 효율적인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근래에 타다와 택시회사의 갈등이 불거져 결국 검찰이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기소했다. 최근 일부 전자회사가 자사 유통망을 통해 유명 브랜드 휴대전화를 직판하려 하여 시중의 이동통신 대리점 업주들과 다른 휴대전화 제조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⁴⁸⁾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비대면 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회사는 최근 공인중개사들과 협업을 통해 부동산 매매시장에도 진출하여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⁴⁹⁾ 지자체가 수수료 없는 배달중개 등을 위해 공공앱을 만들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또는 민간의 사업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⁵⁰⁾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독점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근래에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참고로 2021년 6월 15일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에 리나 칸(Lina Khan)이 취임하였는데, 그녀가 2017년 발표한 논문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⁵¹⁾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급격한 기술의 개발에 따라 기존의 사업방식이 급속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주체들에게 사업기회들이 크게 생겨나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이에 지자체나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기존의 정부 서비스 가운데 어떤 영역은 예전의 정당성을 잃어버려 민영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게 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영역은 새

48) 「LG전자가 아이폰 판매?...중소 대리점 “골목상권 침해”」(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49) 「O2O 플랫폼 ‘직방’, 입차·임대인 연결 넘어 부동산 매매까지」(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50) 「혈세들여 수수료없는 ‘공공앱’ 만든다?...‘일자리’는 누가 만드나」(2020),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7. 2).

51) Khan(2016), pp. 710-805.

로이 정부가 경쟁력을 확보한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각 서비스 영역에 대해 개별 부처별로 참여 여부나 방식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국가전략 전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국제적 협력과 상호발전적 경쟁

최근 논의되는 ESG 관련 국제적 이슈로는 앞서 살펴본 탄소세와 최저법인세를 규제 있다. 기업이 환경규제나 세금 부담을 회피해 생산지나 법인설립지를 외국으로 바꾸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고, 동시에 규제나 기준을 성실히 부담하는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한편 국제협력 및 경쟁 차원에서 EU의 경우 탄소세 도입이나 환경규제 등에서 오래전부터 잘 준비되어 왔으며, 미국도 자연환경상 풍력이나 태양광발전 등에서 자연입지적으로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이나 여타 개발도상국 등은 화석연료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환경규제 등의 준비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은 최근 경제규모 및 기술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였으나 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는 아직 중간적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적극 협력하고 부응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동시에, 일부 산업이나 중소기업은 급속한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과중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이행이나 보조적 지원제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무기한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통상마찰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개별 기업이나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유인부합적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2021년 말로 일몰 종료되는데, 탄소세를 기존 세제와 통합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중이나 구체적인 탄소세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휘발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등을 부과하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⁵²⁾ 탄소세 도입은 에너지 수급의 특성과 국가적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환경 및 에너지 세제의 통합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21년 3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가 일괄 부과된다는 가정하에 업종별 부담은 중위 시나리오(30달러/tCO₂eq) 기준으로 발전에너지 8조 8천억 원, 철강 4조 1천억 원, 석유화학 2조 1천억 원, 시멘트 1조 4천억 원, 정유 1조 2천억 원 순이며, 특히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 및 자회사 7개사가 부담하는 탄소세만 7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⁵³⁾ 따라서 이들 업종 및 해당 기업들이 탄소세 도입에 대비하고 관련 투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탄소세 대비 신규 투자 및 지원 방안은 기술개발과 기존 일자리 전환 등과 통합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의 청년취업 지원 정책이나 지자체의 지역기업 유치 및 지원 정책과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52) 「탄소세 도입,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산업계 다층의견 수렴해야」(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53) 「탄소세 도입시 최대 36.3조 원 추가 부담... 신중히 검토해야」(2021),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16).

제5장



ESG 국가정책 사례

-
- The background of the lower half of the page features a semi-transparent globe with a network of grey lines and dots connecting various points across its surface. In the bottom right corner, a blurred city skyline with several tall buildings is visible, suggesting a global or urban context for the content.
1. EU
 2. 미국
 3. 일본
 4. 중국
 5. 인도
 6. 국제기구 및 NGO
 7. 정책적 시사점

1. EU

유럽연합(EU)은 ESG 정책의 확산과 법제화를 매우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지속가능 경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ESG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 EU가 진행하는 주요 입법활동⁵⁴⁾으로 크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녹색 분류체계(Taxonomy Regulation),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 공시(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의무 부여, 그리고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포함하는 'Fit for 55'라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이다.

가. 녹색분류체계(Taxonomy) 규정

EU의 녹색분류체계 규정(Taxonomy Regulation)⁵⁵⁾은 2020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다.

EU는 2018년 3월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행동계획의 하나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을 처음 촉구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의와 분류가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야만 친환경 목적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성 정책의 수립 및 환경 친화적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54) 강애림(2021); 강노경, 한승권(2021).

55) European Union(2020), "Regulation(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EU) 2019/2088."

2018년 설치된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TE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작성한 보고서⁵⁶⁾에 기초해 본 규정은 환경 관점에서 6개 목표와 4개 판단기준에 대한 프레임틀을 제시하고 있다.

EU의 친환경 지속가능 목표 6개는 ① 기후변화 완화(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④ 순환 경제로의 전환 ⑤ 오염 방지와 관리 ⑥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와 회복이다. 목표별 4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된다. ① 6개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할 것 ② 기여한 환경목표 외에 다른 목표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 ③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기준(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협약, UN 인권과 기업 책임에 대한 지침 등)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일 것 ④ 기술심사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에 부합할 것 등이다.

이후 EU 녹색분류체계는 위임법률(Delegated Act) 제정을 통해 6개 환경 목표별로 상세한 기술심사기준(TSC)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적응의 2가지 환경목표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위임법률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나머지 4개 환경목표에 대한 기술심사기준(TSC)은 2022년 말에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나. 지속가능금융 공시(SFRD) 규정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는 EU 소재 금융기관이 투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2021년 3월 10일에 1단계가 발표되었다. SFDR로 인해 EU 금융기관 또는 EU에 금융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비EU 금융기관은 다음 2가지 형태의 의무 공시를

56) EUTEG(2020. 3).

수행해야 한다.

- 금융회사 차원: 금융회사가 투자결정 시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해당 리스크가 투자판단에 반영되는 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 금융상품(투자상품) 차원: ESG를 표방하는 개별 금융상품에 대해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투자 결정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EU에서 18개 지표⁵⁷⁾로 분류한 ‘지속가능성 관련 부정적 영향(PAIs: Principal Adverse Sustainability Impacts)’이 금융자산 운용이나 수익에 미치는 정도를 식별하고 실시하여 이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만약 PAIs를 투자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와 지속가능성 관련 리스크와 연계된 보상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PAIs 의무 공시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의 대형 금융회사에 대해서 적용된다.

ESG를 표방하며 EU에서 판매되는 개별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담하며, 계약이전 단계 공시, 웹사이트 공시,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의 내용을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전 단계 공시(pre-contractual disclosures)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상품의 ESG 기준 충족 방법, 벤치마크 지수가 있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지수와 상품별 지속가능성 목표의 연계성 여부, 벤치마크 지수가 없는 경우에는

57) 지표의 범주는 크게 투자국가, 부동산, 투자기업의 3개 대분류가 있고, 투자국가 범주에는 온실가스 배출, 사회 관련 국제규범 위반의 2가지 지표가 있다. 부동산 범주에는 에너지 비효율 부동산 익스포저, 화석연료 관련 부동산 익스포저의 2개 지표가 있다. 투자기업 범주는 다시 기후·환경과 사회·노동자의 세분류 범주로 나뉜다. 기후·환경 세분류 범주에는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발자국, 생물 다양성, 폐수방출, 유해폐기물 비율, 피투자기업 집약도, 화석연료 관련 기업 익스포저, 에너지 소비 집약도, 비재생에너지 소비·생산 비중의 9개 지표가 있다. 사회·노동자 세분류 범주에는 국제규범 위반, 국제규범 준수 감독 여부, 이사회 성별 다양성, 남녀 임금 차별, 분쟁무기 제조·판매의 5개 지표가 있다.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회사 웹사이트 공시는 계약 이전 단계 공시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투자 목표, 지속가능성 지표 및 식별 기준, 정보 출처, 환경·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분석·감독 방법 등의 내용을 웹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ESG 금융상품의 환경 및 사회적 성과 달성 방법, 지속가능성 지표에 따라 측정된 해당 금융상품의 지속가능 성과의 규모 등을 공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에는 앞서 1단계에 발표된 18개 PAIs 지표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가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적용되는 2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다. 기업지속가능성 공시(CSRD) 규정

2021년 4월 21일에 발표된 ‘기업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⁵⁸⁾ 개정안은 2014년 10월 제정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⁵⁹⁾의 개정 버전이다. NFRD는 EU 소재 대기업⁶⁰⁾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이사회 다양성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하여 그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시 내용의 검증과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7년 6월, NFRD를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비재무적 정보의 일관성

58) European Commission(202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EU) No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59) European Union(2014),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60) EU 내 상장기업, 비상장 은행, 비상장 보험사 및 회원국에서 공익단체로 지정한 기업 중 근로자 500인 이상이고 자산 2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이익 4천만 유로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고를 위해 공시의 6대 원칙 및 6대 공시항목의 제시를 골자로 하는 NFRD 가이드라인⁶¹⁾이 발표되었다. 2019년 6월에는 NFRD 가이드라인의 6대 공시항목에 구체적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을 추가한 부록⁶²⁾이 발표되었다.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에서 2015년 12월에 설립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전담협의체(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⁶³⁾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프레임워크 권고안과 지침이 2017년 6월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NFRD 가이드라인을 표준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후속조치에도 불구하고 NFRD 개정안들이 담고 있는 공시 정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공시 규정인 CSRD가 2021년 4월 21일에 제안되었다. NFRD가 환경과 사회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만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이 정보가 재무정보와는 큰 관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CSRD는 규정 명칭에서 '비재무적'이란 용어를 제거하고 '지속가능성 공시'라는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NFRD 발표 이후 EU의 다른 ESG 정책들과의 연계성이 보다 강화되었다.

CSRD의 주요 내용을 NFRD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대기업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던 NFRD와 달리 CSRD 규정은 상장된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며, 비상장 대기업과 비EU 기업의 EU 자회사에도 적용된다. 둘째, 공시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지속가능성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동시에 파악하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의 개

61) European Commission(2017),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methodology for reporting non-financial information) (2017/C215/01)."

62) European Commission(2019),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Supplement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 (2019/C209/01)."

63)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의해 2015년 12월에 탄생하였다.

념을 더욱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모델과 전략, 지속가능성 목표의 설정과 시행절차,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진과 이사회역의 역할과 책임, 공급망에 대한 실사 절차, 공시항목과 관련된 측정지표, 지적재산,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 등의 무형적 정보에 대한 공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셋째, 기업 공시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디지털 표준 포맷인 XHTML 포맷으로 지속가능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에 따른 분류체계에 의한 태그를 달도록 하였다. 넷째, 지속가능성 정보와 공시의 준수 여부를 회원국 자율에 맡겨두었던 NFRD와 달리 CSRD에서는 검증과 미준수에 대한 제재를 강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CSRD 시행은 2022년 말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늦어도 2024년부터는 EU 내 상장 또는 비상장 대기업이 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규정 시행 후 3년 정도의 적용 유예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라.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Due Diligence) 제도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기업실사 제도(EU System of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⁶⁴)는 기업의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와 환경 위험 등에 대해 실사하는 제도이다. EU 의회는 2020년 11월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처음 발표하였으며 법사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기업실사 지침안을 2021년 3월 10일 의결⁶⁵)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4년 시행을 목표로 권고안의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 지배

64) 강애림(2021).

65) European Parliament(2021. 3. 10), "(Resoluti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구조법안」⁶⁶⁾을 2021년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실사 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의 자사 사업장과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과 환경 등을 침해하는 활동 여부의 확인(identify), 보고(address), 개선(remedy)의 의무 부여
- 인권 및 환경 위험 발생 시 해당 내용을 담은 실사보고서 작성과 대응책 공개
- 위험이 없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
- 위무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제재

기업실사 의무 적용 대상은 EU 소재 대기업 및 상장 중소기업, 고위험 산업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EU 시장에 진출한 비EU 기업들까지 포함된다. 법안에는 EU 기업의 역외 공급망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피해자는 EU 사법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마.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 ‘Fit for 55’라고 하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하여 기후, 에너지, 토지와 삼림 활용, 운송, 조세 분야에 대한 12개 실행 법안과 사회적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까지를 망라한 패키지 입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⁶⁷⁾은 다음과 같다.

- 배출권거래제(EU ETS)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해운, 육상운송, 건축물

66)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2021),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4).

67) 장영옥, 오태현(2021).

부문을 추가하고 항공 분야의 기준을 강화함

- 일종의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⁶⁸을 도입하여 2026년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의 5개 품목에 대해 EU가 수입하는 물품은 EU 배출권에 상당하는 탄소가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함
- 재생에너지 지침(Renewable Energy Directive)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40%로 상향 조정
- 에너지조세지침(revision of the Energy Taxation Directive) 및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개정하여 친환경 전환을 지원
- 토지의 이용과 이용변경 및 삼림 규정(Regulation on 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을 개정하여 탄소흡수원을 확대
- 2035년부터 내연기관의 출시를 금지하고 강화된 탄소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항공운송의 친환경 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해상운송의 온실가스 총량을 규제
- 친환경 전환과정에서 피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기후펀드(Social Climate Fund)와 현대화펀드(Modernization Fund) 등을 조성하는 공정전환 대책 마련

2. 미국

가. 바이든 정부의 ESG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기후변화 적극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대, 재정지출 확대와 부자 증세,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

68)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2021).

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과 기업 책임의 확대 등을 강조하며 집권하였다. 그가 내세운 공약과 이에 근거하여 현재 펼치는 국가적 정책들은 미국 내 ESG 확산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집권과 동시에 환경과 사회를 아우르는 매우 공격적인 ESG 정책을 펼치고 있다.

나. 환경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주요 공약은 파리협정 재가입,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 목표 달성,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2조 달러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이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취임 초부터 발동하였다. 2021년 1월 20일 ‘공중보건 및 환경 보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 복원’ 행정명령(EO 13990)⁶⁹⁾을 발표하여 Keystone XL 파이프라인⁷⁰⁾ 사업 허가취소, 북극 보호 지역의 석유 시추 중단,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도록 하였다.

2021년 1월 27일에는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정명령(EO 14008)’⁷¹⁾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로 다루어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관련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후특사직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에게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120일 내에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69) White House(2021. 1. 20),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70) 텍사스에서 캐나다 앨버타주까지 이어지는 1,800km의 송유관 건설 사업.

71) White House(2021. 1. 27),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서 백악관 내에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을 설치하였다. 셋째, 정부조달 측면에서 연방정부기관들이 저탄소 전력과 전기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청정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였다. 넷째, 전향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개발과 감축전략을 담은 기후재정계획을 수립⁷²⁾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공유지에서 화석연료 신규 채굴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대와 허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2021년 5월 20일에는 ‘기후관련 금융위험’의 행정명령(EO 14030)⁷³⁾이 발표되어 기후변화가 초래할 재무적 위험을 측정·평가하며 이를 공개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크게 다섯 가지 내용⁷⁴⁾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국가기후보좌관(National Climate Advisor)과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위원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연방정부 프로그램과 정부 자산/부채에 초래할 재무적 위험을 파악하여 정보를 공개하며,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향후 120일 내에 개발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략에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금 조달 필요성 및 규모,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이러한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등을 담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규제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72) 2021년 4월 22일에 개최된 기후정상회의에서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52%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하였으며, 기후정상회담 직후 백악관은 NDC 달성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White House(2021. 4. 23),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73) White House(2021. 5. 20),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74) The National Law Review(2021. 6. 30), “President Biden Issues Federal Direction o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Council)의 의장을 맡고 있는 재무장관이 연준(FRB)⁷⁵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 협력하여 기후위험이 연방정부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권장하였다. 또한 기후 관련 금융위험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FSOC 회원기관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18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규제·감독하는 기관별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합하고자 하는 FSOC 회원기관의 노력과 권장조치, 기후변화 관련 공시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도록 하였다.

셋째, 저축과 퇴직연금을 기후변화 관련 금융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취할 조치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연방퇴직저축투자위원회(FRTIB: Federal Retirement Thrift Investment Board)가 연기금 운영 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을 어떻게 고려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투자회사들의 퇴직연금 관련 투자결정 시 기후 관련 위험을 포함한 ESG 요소들의 고려를 금지할 수 있게 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규정에 대해 이를 취소 또는 개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노동부장관에게 지시하였다.

넷째,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위험 정보를 연방정부 대출 프로그램, 정부조달, 정부계약과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주요 연방기관에 공급하는 업체의 탄소배출량과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공개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이 낮은 공급업체에 특혜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연방조달 규정의 변경을 검토할 것도 지시하였다. 또한 연방기관은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조달 프로세스에 통합해야 하며, 조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

75) 2021년 3월 23일, 연준(FRB)의 Lael Brainard 이사는 연준이 금융안정기후위원회(FSCC: Financial Stability Climate Committee)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기구는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칠 거시건전성 위험을 다루고, 그 대응책을 마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미 동년 1월에는 기후감독위원회(SCC: Supervision Climate Committee)를 신설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감독 대상 금융 기관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Brown(2021), "US Federal Reserve Announces New Climate Committee and Provides More Guidance on Its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Ris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할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연방정부 예산 계획 수립에 기후 관련 위험을 반영하도록 하여 미국 관리예산실(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감독 등을 통해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기후 관련 금융위험 노출에 대한 평가 방법을 개발해 매년 발표하도록 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에너지 및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수행했던 관련된 조치들을 모두 검토하여 Keystone XL 파이프라인 사업허가 취소, 공유지 내 석유/가스 시추 신규허가 중단, 연방정부 화석연료 직접 보조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 자원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개발과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산업부흥 종합계획’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도록 하였다. 2021년 8월 10일 발표된 행정명령(EO 14037)⁷⁶⁾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와 소형트럭 신차의 50%를 전기차 등의 친환경차로 생산하는 목표를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인프라 확충 등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정책의 수립과 신차 연비, 온실가스 배출, 질소산화물 규제 정비도 동시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EU의 탄소국경세 도입과 궤를 같이하여 2021년 3월 미국도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 의제 보고서⁷⁷⁾를 통해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Adjustments)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의무 미이행 국가에 대한 동맹국들의 대응에 미국도 참여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19일 탄소집약적 수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⁷⁸⁾를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의 품목 비중이 50%

76) White House(2021. 8. 10),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6).

77) USTR(2021. 3. 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78) U.S. Congress(2021), “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초과인 탄소집약적 수입 제품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개발도상국, 미국산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온실가스 관련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다. 사회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문제 못지않게 ESG 요소 중 사회적 가치(S)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사회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및 접근성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취임 초부터 인종 형평성 향상, 노조와 노동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 금지,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행정 및 입법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사회적 갈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꾀하고 있다.

2021년 1월 20일에 발표된 「인종 형평성(racial equity)에 대한 행정명령(EO 13985)」⁷⁹⁾은 인종 형평성 확보와 증진을 위한 연방정부 정책을 제도화하여 인종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연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과 정책 수혜와 기회에서 구조적인 인종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고, 관리예산실(OMB)은 연방자금이 필요한 지역에 인종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분배되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연방 주택정책에서 인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 있는지 조사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주택도시개발부에 지시하였다.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이념적 애국 교육을 홍보하기 위해 세운 1776 위원회(1776 Commission)를 인종차별적 요소를 이유로 폐지하였다.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기존 시간당 10.95달러에서 15

79) White House(2021. 1. 20),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EO 14026)⁸⁰⁾을 동년 4월 27일 발표하였다. 인상된 최저임금⁸¹⁾은 물가에 연동되며 2022년 1월 30일부터 적용된다. 약 500만 명 이상의 계약직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에서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중시하는 무역정책을 강조하고 이를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 의제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2020년 7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민주당 요구로 노동자 권익이 보다 강화된 별도의 노동 관련 분쟁해결절차인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Enforcement Mechanism)이 도입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멕시코나 캐나다의 위반사례 발생 시 직권 개시나 제소를 통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을 밝혔다. 특히 새로운 통상정책을 수립할 경우 노동권 보호를 위해 강화된 노동 기준 및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강제노동이나 노동착취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역사회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⁸²⁾을 개혁하고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CDFI: 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s)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우선 재무부 CDFI 펀드의 2022년 예산을 22.2% 대폭 증가시켜서 3.3억 달러를 배정하였는데, 이 자금은 CDFI를 통해 저소득 지역민, 소상공인, 소기업 등을 위한 주택 건설 등의 지역 공동체 사업에 지원된다. 2021년 6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해 12억 5천만 달러⁸³⁾가 CDFI에 긴급자금으로 지원되었다. 소수 인종과 가

80) White House(2021. 4. 27),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2).

81) 기존 법정 최저임금인 7.25달러를 2025년까지 15달러로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은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에서 무산되었다.

82) 특정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피감 금융기관(총자산 10억 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대해 영업지역 내 빈곤 지역과 저소득층,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 수요에 부응하는 정도를 연방금융감독기관이 평가하여 지점 개설이나 인수·합병 등의 인허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방법임.

83) OpportunityFinance(2021. 6. 15), "CDFI Fund Awards Historic \$1.25 Billion in Rapid

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한 CRA법의 인권법적 기능을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CRA법 개정 과정에서 크게 약화시켰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정을 전격 폐지하고 이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⁸⁴⁾

라. 공시

비재무적 정보 공시와 관련⁸⁵⁾하여 2010년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정보공시 규정인 Regulation S-K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10-K)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지침(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환경 법규 준수가 수익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규모, 환경 관련 소송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10-K)에 담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SEC 위원장은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SEC는 2021년 3월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위해 의견 청취가 필요한 15가지 항목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15개 항목에는 기후변화 위험 관련 정보측정과 계량화 방법, 공시 표준 제정의 참여자 기준, 산업별 기후변화 공시 표준의 마련 여부, 공시 프레임워크(TCFD, SASB, CDSB)의 결정 문제, 글로벌 단일 ESG 기준의 사용 여부,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신뢰성,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의무화 여부, ESG 정보 공개와 기후 정보 공개의 연관성 여부, ESG 감독의 범위, 기후변화 정보의 사업보고서 포함 여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새로운 SEC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방향성을 UN PRI 웨비

Response Grant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84) “Biden reverses Trump changes to bank antidiscrimination law”(2021. 5. 18), 온라인 기사 (검색일: 2021. 8. 5).

85) 법무법인 지평(2021. 9. 7), 「미국 ESG 공시제도화와 국내 영향」.

나86)87)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 기후변화 공시는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공시 내용을 연간 사업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적 측면'의 공시를 포함하여야 함. 즉 기후변화의 위험과 기회는 무엇이고 이를 기업의 경영전략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규제나 정책, 시장의 변화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예로, 탄소중립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함.
- 기후변화와 관련된 '양적 측면'의 공시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음. 즉 탄소배출 관련 지표,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기후변화 달성 목표 및 달성률, 기업 자체(Scope 1, Scope 2)의 탄소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내 협력업체(Scope 3)의 탄소배출량 등과 같은 수치적 정보의 공시
- 금융업, 운수업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공시기준을 만들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의 근거 및 목표 달성 여부
-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린, 지속가능, 저탄소 등의 이름을 가진 펀드들이 실제로 관련 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의 공시 프레임워크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 태스크포스(TCFD) 프레임워크,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기후공시표준위원회(CDSB: 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프레임워크 등이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음.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86) UN PRI(2021. 7. 28),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Discussion with SEC Chair Gensle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87) Gensler(2021. 7. 28), "Prepared Remarks Befo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ebinar,"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10).

관리, 지표/목표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TCFD 프레임워크 방법론이 그중 유력하게 고려될 수 있음.

ESG 공시와 관련하여 하나의 진전은 「ESG 공시 및 단순화법(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⁸⁸⁾이 2021년 6월 8일 미국 하원에서 215 대 214의 1표 차이로 근소하게 통과된 것이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ESG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시하던 지금까지 관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ESG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장기적 경영전략과 ESG 지표의 관련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관계를 어떤 방식과 절차로 분석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사용된 ESG 지표의 정의와 측정 기준, 지표값을 공개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정치활동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정치기부액, 기부일자, 기부대상 정치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기후위험, 임원 급여 인상률, 세율, 세무행정 관할별 납부 세금의 비율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실제 상원을 통과하여 법률이 제정될지는 아직은 불확실하다.

미국의 공시 규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기후공시 또는 ESG 공시의 표준(프레임워크)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서너 개의 공시 표준이 통용되는데, 그중에서 TCFD로 공시 표준을 단일화하기로 밝힌 국가는 영국, 뉴질랜드, 스위스 3개국이며,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도 TCFD 공시 표준 의무화를 지지하고 있다. 2021년 11월경에 공개될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개발한 ESG 프레임워크도 미국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시 표준이다. EU의 규제당국과 세계경제포럼(WEF)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CISO) 등이 지원하며 블룸버그, MSCI, S&P

88) U.S. Congress(2021),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글로벌 등의 CEO들도 IFRS의 프레임워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3. 일본

가. 환경

1) 기후변화 관련 공시 지침

일본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점증하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정보 공시 요구를 반영하여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기회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정보공시 가이드라인⁸⁹⁾을 마련하였다. 경제산업성은 금융안정위원회(FSB)가 2017년 6월 공개한 'TCFD 권고안'의 해설과 주요 업종(자동차, 철강, 화학, 전기·전자, 에너지)별 지침, 그리고 사례 소개 등을 담은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TCFD지침(TCFDガイダンス: 気候関連財務情報開示に関するガイダンス)'⁹⁰⁾을 2018년 12월 25일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TCFD 권고안에 의한 기업의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돕기 위해 2019년 5월 TCFD 컨소시엄이 민간 주도로 설립되었다. 경제산업성은 TCFD 컨소시엄과 함께 업종(식품,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별 지침을 추가하고 일본기업들의 TCFD 공시 사례 등을 추가하여 개정판인 「TCFD 지침 2.0」⁹¹⁾을 2020년 7월 31일 공표하였다.

이와 함께 기업이 'TCFD 권고안'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용이하게 수행할

89) 일본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이나 글로벌기업들은 국제적인 주요 ESG 정보공시 표준(프레임워크)인 SASB 스탠더드(2018년 발표), GRI 스탠더드(2016년 발표), IIRC 프레임워크(2013년 발표), TCFD 권고안(2017년 발표) 등에 의거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이러한 국제적인 정보공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서 소개한다.

90) 経済産業省(2018), 「TCFDガイダンスの策定とTCFDへの署名を行い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91) 経済産業省(2020a), 「TCFDガイダンス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수 있도록 환경성은 2019년부터 「TCFD를 활용한 경영전략 수립 권고: 기후 관련 리스크·기회를 포함한 시나리오분석 실천가이드」⁹²⁾라는 안내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환경성은 2018년부터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업종을 중심으로 ‘TCFD에 따른 기후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시나리오분석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는데, 이 안내서는 이 지원 사업의 시나리오 분석 사례와 지원성과, 그리고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관련 데이터 등을 정리한 것이다. 2021년 3월 현재 「TCFD 시나리오 분석 실천 가이드 ver3.0」까지 발표되었다.

국토교통성에서도 2021년 3월 30일, 부동산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일본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부동산 분야 TCFD 대응 지침’⁹³⁾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특히 태풍이나 해일 등의 자연 재해가 많아 풍수해에 직접 노출되는 부동산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협의 영향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응한 부동산 분야의 정보 공개를 진작하고 TCFD 권고안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 부동산 분야의 고유한 상황이 고려된 시나리오 분석 개념과 방법을 해설하고 국내외 사례들도 소개하고 있다.

2)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녹색성장 전략

일본정부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의 2015년 파리협정과 2018년 권고안⁹⁴⁾에 따라 2020년 12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전략”의 초안을 발표하고 2021년 6월⁹⁵⁾ 이를 확정하였다. 본

92) 環境省(2020),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気候関連リスク・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オ分析実践ガイド~」の改訂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3) 国土交通省(2021), 「不動産分野TCFD対応ガイダンス」,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4) IPCC(2018. 10. 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6).

95) 経済産業省(2021b),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정책의 특징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성장의 제약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산업구조와 사회경제적 변혁을 도모하기 위한 산업정책으로서 ‘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나 산업을 선별하기 위해 우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공급의 목표를 안전(Safety)을 대전제로 에너지의 안정공급(Energy Security), 경제성(Economy), 친환경(Environment)을 동시에 달성하는 S + 3E 차원에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하에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14개⁹⁶) 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세부 목표를 설정한 후 그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녹색성장전략이 마련되었다.

녹색성장전략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민간기업의 참여와 투자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예산지원(녹색혁신기금의 조성), 세계개혁, 금융지원, 규제개혁·표준화, 국제협력, 대학지원, 인력 육성 등의 정책을 망라하였다.

예산 측면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조 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에 조성하여 관련된 혁신기업을 향후 10년간 지원한다.

세계개혁 측면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촉진세제, 연구개발세제를 확충하며, 사업재구조 또는 사업재편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이월결손금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특례를 도입한다.

금융 측면에서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전환금융(transition finance)에 대한 국제원칙’⁹⁷을 근거로 2021년 5월 ‘기후 및 전환금융에 대한 기본지침’⁹⁸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저탄소화와 탈탄소화 전환을 위한 혁신적인

96) 해상풍력·태양광·지열, 수소·연료암모니아, 차세대열에너지, 원자력, 자동차·배터리, 반도체·정보통신, 선박, 물류·인적 유통·토목인프라, 식료·농림수산업, 탄소재활용, 주택·건축물·차세대전력관리, 자원순환관련, 일상생활관련 산업의 14개 분야.

97) ICMA(2020),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98) 金融庁・経済産業省・環境省(2021. 5. 7), 「クライメート・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基本指針」.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촉진한다. 특히 간접금융 중심의 일본에서 각 지역의 탈탄소화를 진행하는 데 지역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금융기관과 연계해 각종 정보 제공,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비즈니스 구축과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과제 해결 모델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에 의한 환경·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 ESG 금융의 활동을 촉진한다.

규제개혁·표준화에서는 14개 산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나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신기술의 수요를 창출하도록 일부 분야의 규제를 강화한다. 온난화대책에 관한 국제적 규칙 형성에 부응하여 국제 표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의 이해나 사회적 사정을 국제규칙에 반영하며, 우수한 신기술이 제대로 평가되는 환경을 만든다.

특히 표준화와 관련해 주목할 내용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 빠르게 사회에 구현되고 세계시장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 규칙형성과 표준화를 사업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점이다.

필연적으로 단기실적에 쫓기는 기업은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규칙형성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 기업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고려한 폭넓은 이해관계자와의 연계가 중요해지지만, 그 중요성을 많은 기업이 인지하지 못하며,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연구개발이나 외부 연계 등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사회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이으로써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가치로 수용되는 사회·경제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규칙형성과 표준화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1년 4월 2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틀을 초월하여 사회적 이슈 및

환경문제의 해결이 시장에서 가치로 평가되도록 하는 시스템(규칙형성)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업의 새로운 시장창출로 이루어지도록 각각의 기업 프로젝트에 대하여 '시장형성력(시장의 창조·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잠재 능력)'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시장형성능력 지표 Ver1.0⁹⁹⁾'이라고 명명되어 일반에 공개되었다.

이 지표는 '의제 구상력', '사회문제 해결력', '규칙 형성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각각은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의제를 설정하고 내재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 가치로 평가받는 시장을 형성하는 스토리를 설계하는 힘, 자사의 자원이나 외부 연계를 이용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 설계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끌어들이므로써 시장형성에 필요한 규칙형성을 실현하는 힘을 측정하고자 한다. 기업들은 자신이 생성한 이 지표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젝트에 적용함으로써 ESG 관련 규칙형성 주도형 시장의 창출을 주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수반하는 신기술 시장개척을 위한 전략적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나. 사회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ESG의 사회적 가치(S) 측면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다양성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한 'Diversity 2.0 행동지침'¹⁰⁰⁾을 2017년¹⁰¹⁾ 발표하였다. 이 지침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글로벌 환경변화 속에서 서로 다른 감성·능력·가치관·경험 등의 특성을 가진 다양

99) 経済産業省(2021a), 「市場形成力指標 ver1.0」.

100) 経済産業省(2017. 3. 23), 「ダイバーシティ2.0 検討会報告書~競争戦略としてのダイバーシティの実践に向けて~」.

101) 이 가이드라인은 2018년 개정되었다. 経済産業省(2018. 6. 8), 「ダイバーシティ2.0 行動ガイドライン改訂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한 인재¹⁰²)를 확보하여 이들이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신의 촉진과 이를 통한 새로운 기업가치 창출을 위해 전사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영상의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침에서는 ‘다양성 경영’을 위해 기업 CEO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업이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일곱 가지¹⁰³) 행동원칙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또한 기업의 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들을 소개하고 이를 사업보고서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공개해야 할 KPI의 예로서 이사회외 여성 및 국제인재¹⁰⁴) 비율, 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구성원이 보유한 기술 포트폴리오 현황, 이사 및 감사에 여성과 국제인재가 없는 경우 그 사유와 충원목표¹⁰⁵)를 달성하기까지의 인재육성 계획 등이 있다. 또한 채용 시 여성 비율, 채용 시 남녀 경쟁률, 남녀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 성별의 육아휴직 취득률, 전체 및 남녀별 이직률, 남녀별 재고용 또는 중도채용 실적, 다른 직종이나 고용 형태의 남녀별 전환 실적 등도 공개해야 할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수치적인 다양성 활동 결과를 나타내는 항목 이외에,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경영 방침(기업 이념 및 경영전략, 경영평가의 목표 등)과 구체적인 활동(목표 달성을 위한 KPI 로드맵과 전사적인 규정 정비 상황 등),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해석도 공개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2012년부터 2020년 동안 경제산업성은 다양성 경영의 저변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의 다양성 경영 추진을 통해 높은 경영성과를 달성한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100대 우수사례(‘新・ダイバーシティ経営企業100選’과 ‘100選プライム’¹⁰⁶) 선정 및 표창 제도를 운영하였다.

102) ‘다양한 인재’는 성별, 나이, 인종이나 국적, 장애 유무, 성적 취향, 종교·신념, 가치관 등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경력과 경험, 일하는 방식 등의 다양성도 포함한다.

103) 일곱 가지 행동은 다양성을 고려한 경영전략 수립, 다양성 추진체제의 구축, 지배구조의 개혁, 환경과 규칙의 전사적인 정비, 관리직의 행동 및 의식 개혁, 종업원의 행동 및 의식 개혁, 노동시장 및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 공개와 대화로 구분된다.

104) 외국인이나 해외에서 상당 정도의 장기간에 걸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현저한 업적을 가진 자.

105)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여성과 국제인재를 1명 이상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이와는 별도로 경제산업성은 2012년부터 여성의 활약이 뛰어난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업종별로 선정하여 '나데시코 종목(なでしこ銘柄)¹⁰⁷⁾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나데시코 종목은 일정한 심사요건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여성 활약도를 조사하여 구한 평가점수에 재무지표(ROE) 성과를 반영하여 업종별로 선정한다. 나데시코 종목 외에도 기업이 원하면 순위와 정보 공개 참여 희망 여부에 따라 '준 나데시코(準なでしこ) 종목'과 '나데시코챌린지기업(なでしこチャレンジ企業) 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다. 2020년에는 나데시코 종목으로 44개 기업, 준 나데시코 종목으로 19개 기업이 선정되었다.

급격한 인구노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하나¹⁰⁸⁾로 종업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실천하는 '건강경영'¹⁰⁹⁾을 2014년부터 적극 지원하고 있다. '건강경영'은 직원의 건강관리와 증진을 기업경영의 문제로 보고, 직원 건강의 유지와 개선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로버트 H. 로젠(Robert H. Rosen) 교수의 1991년 저서(Rosen 1991)인 *The Healthy Company*로 시작되었으며, '건강경영'이란 용어는 이를 일본식으로 번역한 것이다.

경영전략으로서 건강경영에 대한 일본 대기업의 관심은 일찍이 2000년대 말 시작되었는데, 경제산업성은 2015년부터 매년 도쿄증권거래소 상장기업 가운데 건강경영을 경영전략 차원에서 적극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건강경영 종목(健康経営銘柄)¹¹⁰⁾으로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1년에 48개¹¹⁰⁾ 기업

106) 経済産業省(2021. 3. 22), 「令和2年度「新・ダイバーシティ経営企業100選」及び「100選プライム」の選定企業が決定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07) 経済産業省(2021), 「女性活躍に優れた上場企業を選定「なでしこ銘柄」」,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08) 内閣府(2014. 6. 24),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109) 経済産業省(2020. 9. 25), 「健康経営の推進につい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10) 経済産業省(2021. 3. 4), 「「健康経営銘柄2021」に48社を選定しました!」,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이 ‘건강경영 종목’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에는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健康經營優良法人認定制度)’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대기업 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으로 나누어 ‘일본보건회의(日本健康會議)’에서 우량법인을 인증하는데, 2021년 3월 현재¹¹¹⁾ 대기업 부문에서 1,794개사, 중소기업 부문에서 7,933개 법인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 획득 기업은 ‘건강경영 우량법인’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와 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한 혜택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 지배구조

일본은 특이하게도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경제부흥전략¹¹²⁾의 하나로 채택하여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본기업들의 공격적 경영을 뒷받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는 ESG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다양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사외이사의 전문성, 이사의 평가, 성과보수 도입, 준법감시와 감사제도의 운용 등과 관련된 기업지배구조 제도의 정비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는 2015년 3월 5일 ‘기업지배구조코드’¹¹³⁾를 공표하여 상장기업이 준수해야 할 다섯 가지 지배구조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상장규정을 개정하였다. 5개 기본 원칙은 ‘주주의 권리·평등성의 확보’, ‘주주 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적절한 정보공시 및 투명성 확보’, ‘이사회 등의 책무’, 그리고 ‘주주와의 대화’이다. 이 ‘지배구조코드’의 특징 중 하나는 연성규범(soft law)인

111) 經濟産業省, 「健康經營優良法人認定制度」,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12) 內閣府(2014. 6. 24), 「『日本再興戰略』改訂2014」, p. 4. “일본기업의 중장기 수익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변혁시키고, 글로벌 수준의 자본생산성 달성 등을 하나의 목표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공격적인 경영판단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13) 金融庁(2015. 3. 5), 「改訂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3).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배구조코드’에 제시된 모든 원칙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나, 준수하지 않는 경우 왜 준수하지 않는지를 필수적으로 투자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018년 9월, 경제산업성은 2017년 3월에 발표한 「기업지배구조시스템에 관한 실무지침(CGS 지침)」의 개정판¹¹⁴⁾을 내놓았다. 개정된 「CGS 지침」의 주요내용은 사장 또는 CEO의 지명과 후계자 계획,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역할 수행의 의의와 이를 위한 환경정비 방안, CEO 지명위원회와 보수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활용방안, 사외이사의 자질과 배경 요건 및 활용방안, 상담역과 고문의 역할 등 구체적인 기업지배구조 구축 및 운용 방안을 담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세, 구체적인 대처 방법, 기업의 사외이사 지원체제 구축 등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그 성과를 정리한 「사외이사 본연의 자세에 관한 실무지침(사외이사 지침)」¹¹⁵⁾을 2020년 7월 31일 발표하였다. 일본 부흥전략의 하나로 기업지배구조 강화가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등장한 이후, 기업지배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역할 수행 및 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별도의 사외이사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본 지침은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코드’의 제정 취지를 바탕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대응을 다룬 지침으로, 사외이사에게 기대되는 기본적 역할을 정리하고, 그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기업 측의 지원체제에 대한 모범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2021년 6월 11일, 「기업지배구조코드 및 투자자·기업 간 대화 지침」¹¹⁶⁾의 개정안을 발표하였는데,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사회 의 원활

114) 経済産業省(2018. 9. 28),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CGSガイドライン)の改訂版」,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115) 経済産業省(2020. 7. 31),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한 기능 수행방안, 기업 핵심인력의 다양성 확보, 지속가능성 과제에 대한 대응 방안, 도쿄증권거래소의 프라임시장¹¹⁷⁾ 관련 지배구조 과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프라임시장의 상장기업은 독립 사외이사를 3분의 1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지명·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대응 차원에서 TCFD 권고안 또는 이와 동등한 국제적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공시의 양적·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회사의 대응활동을 공시하여야 한다. 기업 핵심인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인재육성 방침·사내 환경정비 방침을 그 실시 현황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4. 중국

가. 사회: 국가적 사회평가 시스템의 구축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ESG와 관련되어 주목할 만한 정책의 하나는 국가 차원의 사회신용평가(social credit scoring)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국민과 기업의 사회신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이를 경제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중국정부는 2014년 6월,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¹¹⁸⁾을 발표하고 사회구성원의 사회의식 고취, 바람직한 신용사회 정착, 사회발전 촉진 등을 목표

-
- 116) 金融庁(2021. 6. 11),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投資家と企業の対話ガイドラインの改訂」,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5).
 - 117) 도쿄증권거래소의 시장체계를 2022년 4월부터 기존의 4개 시장에서 '프라임시장', '스탠더드시장', '그로스시장'의 3개 시장으로 재편하고, '프라임시장'을 글로벌 투자자들이 적극 투자하는 우량주 시장으로 만들고자하였다.
 - 118) 중국 국무원(國務院)은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2014~2020)(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을 2014년 6월 27일 발표하였다. 國務院(2014), 「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2).

로 개인과 기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등급을 매기는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을 2020년까지 전국에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 정책의 명목적인 목적은 사회의 청렴 및 신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지배구조를 개선하여 혁신을 도모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신용정보를 매개삼아 개인의 사회 기여도 평가나 정치·사회적 성향 판단 등도 가능하게 하는 중앙집중적 '정보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주요 도시 및 지자체에서 개인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신용도가 점수로 평가되고 등급이 매겨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 1월과 2019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사회신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28개 시범도시가 지정되었고, 시범도시별로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사회신용 세부 평가 항목이 선정되고 평가점수가 책정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신용을 관리하는 기본 원칙(데이터의 수집과 공유, 블랙/레드리스트의 공시 및 표기, 통합적인 보상과 처벌)이 중앙정부에 의해 설정되었는데, 중앙정부가 정책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는 중국의 정책수행 메커니즘을 극복하여 현재는 지방정부 간 사회신용시스템의 표준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산하에 신용평가센터(征信中心)를 두고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중국인민은행은 기존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강화한 2세대 신용평가시스템¹¹⁹⁾을 2021년 1월 20일에 도입하였다. 이는 앞서 발표된 「사회신용제도 구축계획 요강」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에서 수집한 사회평가지표뿐만 아니라 중국인민은행이 수집한 신용평가지표까지 망라한 포괄적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차원의 일환이다.

119) 이효진(2020), 「동향 세미나」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7. 6).

이 시스템에 따르면 안면인식기술 등을 통해 신원이 파악된 사람들의 활동이 기록되고, 활동을 통해 계산된 사회신용도가 개인 신용등급과 연계해 저장된다. 이렇게 확보된 개인의 사회신용정보는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은 호텔에 체크인할 때 보증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고, 고속열차를 예약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어진다. 반면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은 호텔 숙박, 식당 취식, 상품 구입, 자유로운 여행 등이 제한된다.

중국의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이 ESG와 관련해서 주목할 점은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과 기업인들도 평가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에서 발표한 기업사회신용시스템 보고서¹²⁰⁾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경영진 탈세, 사업장 사고, 인권침해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하는 기업사회신용시스템(CSC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을 2021년까지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치안, 사법, 금융, 세무 등 44개 중국 국가기관이 기업과 관련해 쌓아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한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신용도를 평가하여 등급화한 후 신용에 따라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회사 경영활동을 제재하게 된다.

특히 사회, 정치, 환경 분야에 걸쳐 기업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ESG 공시 관련 규제가 사회신용시스템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탄소배출 목표를 위반한 기업은 사회적 신용등급이 낮게 되어 징벌적 조치나 경영상 제재를 받게 된다.

나. 공동부유(共同富裕) 정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공동부유’를 앞으로의 국정기조로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공동

120) Schaefer(2020).

부유란 글자 뜻 그대로 모든 국민이 함께 부유해짐을 나타낸다. 중국언론¹²¹⁾은 그가 말한 공동부유가 모든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 도와 풍족한 삶을 이루고, 빈곤과 양극화가 없는 보편적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하였다.

이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공동부유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였다. 공유제를 기반으로 계층 및 지역 간 소득 격차를 축소하는 1차 분배방안, 사회보장 등 정부 이전지출과 세금을 활용하는 2차 분배방안, 기업 등 비정부 부문의 기부를 통한 3차 분배방안이 그것이다. 1, 2, 3차 분배를 통하여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 빈부 격차가 획기적으로 축소되도록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여 중국 민간 기업들은 거액의 기부 또는 기금 조성을 발표하고 있다. 나스닥 상장기업인 핀뉘뉘(拼多多)는 100억 위안(약 1조 8천 억)의 농업과학기술기금 조성을 발표하였고, 텐센트는 500억 위안(약 9조 원)의 기부 의사를 밝혔다. 알리바바는 ‘알리바바 공동부유 추진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1천억 위안(약 18조 원)을 2025년까지 투입하여 공동부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최근 중국정부가 사교육을 전면 금지하고,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한 것도 공동부유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5. 인도

가. 사회: CSR 의무화 회사법의 제정

인도는 전통적으로 산업화 이전부터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 기부 형태의 순수 자선사업적인 사회적 활동이 있어 왔으며, 185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종교적 활동과 결합된 기업의 CSR 활동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21) 「중국은 ‘공동부유’란 유령을 붙잡을 수 있을까」(2021. 9. 13),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5).

영국의 식민 통치 시절에는 간디의 개혁 프로그램에 부응하여 지역발전에 기업이 동참하는 형태의 CSR 활동이 있어 왔다.

인도의 기업부(MCA: the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는 2009년 12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¹²²⁾을 발표하여 기업의 CSR 경영 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기업부의 정책자문기구로 인도 기업원(IICA: Indian Institute of Corporate Affairs)을 설립하여 가이드라인의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7월 기업부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기업의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책임에 관한 자발적 국가 가이드라인(NVGs: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Environmental &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Business)」¹²³⁾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9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제1원칙: 기업은 윤리,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고 이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2원칙: 기업은 지속성에 기여하는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전 과정에 걸쳐 제공해야 한다.
- 제3원칙: 기업은 모든 피고용인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 제4원칙: 기업은 모든 이해관계자, 특히 약자·취약·소외계층의 이해관계를 존중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 제5원칙: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개선해야 한다.
- 제6원칙: 기업은 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2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20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23)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2011),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 제7원칙: 기업은 공공 및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일에 참여할 때 책임 있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 제8원칙: 기업은 포용적 성장과 균형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제9원칙: 기업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는 1956년 제정된 「회사법(The Companies Act)」¹²⁴⁾을 전면적으로 개정¹²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의 보고와 지출을 세계 최초로 의무화¹²⁶⁾한 새로운 회사법을 2014년부터 시행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¹²⁷⁾는 반드시 3명 이상의 이사로 CSR 위원회를 구성하되, 최소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둘째, 해당 기업은 매년 지난 3년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를 CSR 활동으로 지출해야 하며 그 활동과 CSR 정책을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회계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부속서로 CSR 보고서를 포함시켜야 한다.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 활동 범주는 아래와 같다.

- 기아와 빈곤 근절을 위한 활동
- 교육을 촉진하는 활동
- 양성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활동
- 유아 사망률 감소와 출산 관련 보건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 AIDS, 말라리아 등 질병 퇴치를 위한 활동
-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활동

124) 정희찬(2012).

125) The Companies Bill(2009),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5).

126) 동 법의 제135조 1항-5항.

127) 연간 순자산 50억 루피(약 770억 원) 이상, 또는 총매출 100억 루피(약 1,540억 원) 이상, 또는 순이익 5천만 루피(약 7.7억 원)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외국회사와 비영리기업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 사회적 기업 프로젝트
- 인도총리 관할 국가구제기금(Prime Minister's National Relief Fund)이나 주정부 혹은 중앙정부가 사회배려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한 기금에 기부하는 활동
- 기타 CSR 활동

2014년 CSR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당시에는 CSR 지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흡하여 이사회 보고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에 2019년 7월 인도 기업부는 회사법을 개정¹²⁸⁾하여 CSR 지출의무 불이행 제재 조항을 신설하고 회사 및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다.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5만~250만 루피의 벌금을 내야 하며, 관련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50만 루피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CSR 지출의 법정할당액 관리를 강화하여 3년 내에 CSR 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모두 지출하여야 하며, 미사용된 자금은 인도정부가 조성한 특정 펀드에 강제로 예치되었다가 궁극적으로는 국고에 자동 귀속되게 하였다.

나. 환경·사회: 클린인디아(Clean India)¹²⁹⁾ 정책

클린인디아(SBM: Swacch Bharat Mission, Clean India) 캠페인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깨끗한 인도' 비전을 달성한다는 목표로 마하트마 간디의 145번째 생일인 2014년 10월 2일 전국적 차원에서 시작한 환경 개선 및 시민의식 개조 운동이다.

128) 코트라(2019).

129) 코트라(2021. 4. 12), 「인도의 대규모 환경개선 캠페인 '클린 인디아 2.0」,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20).

열악한 도시위생환경과 심각한 수질 및 대기오염, 거리의 쓰레기, 그리고 노상 방뇨 및 배변으로 인한 질병과 국가 이미지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간디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19년 10월 2일까지 전국에 약 300억 달러를 투자해 1억 2천만 개 이상의 화장실과 고형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보급하는 프로젝트로 사업이 시작되었다. 가부장적인 인도의 가정은 대부분 집 내부에 불결한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심하였는데, 특히 인도 여성들이 야외에서 용변을 해결함으로써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 등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클린인디아 웹페이지¹³⁰⁾에 따르면 2019년 10월 2일까지 인도 전역에 1억 개 이상의 가구 및 공동 소유 화장실이 건설되어 노상 용변이 감소해 위생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여성의 안전과 인권이 증진되었고 화장실 건설 과정에서 여성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캠페인으로 청결과 위생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국가 이미지가 변화되었으며 여성권리가 강화되는 등 사회변혁 프로젝트로서 역할도 훌륭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인도정부는 2020년 2월 2단계 클린인디아 캠페인을 발표하고 이를 2025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다. 화장실 건립에 집중한 1단계 클린인디아에 이어 2단계 프로젝트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의 단계적 폐지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지난 5년간 달성한 1단계 성과의 유지와 더불어 플라스틱 폐기물의 관리, 가축 분뇨를 포함한 생분해성 고형 폐기물 관리, 중수도 관리, 분변 슬러지 관리 등을 포함한 2단계 사업의 실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1~2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을마다 비생분해성 플라스틱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을 위한 시설 설치
- 2023~24년까지 생분해성 폐기물 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퇴비함을 만들며, 마을에서 생성되는 생분해성 폐기물의 수집과 운송에 필

130) 클린인디아 공식 웹페이지, <http://sbm.gov.in>(검색일: 2021. 9. 20) 참고.

요한 설비 설치

- GOBAR(Galvanizing Organic Bio-Agro Resources)-DHAN 프로젝트를 통해 700개 바이오가스 장치를 설치하여 가축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생산
- 2023~24년까지 중수도 및 분변성 슬러지를 관리하기 위해 배수구를 관리하고, 대규모 인구밀집 마을은 기존의 하수처리설비와 연결
- 국립공원, 동물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금지

6. 국제기구 및 NGO

가. 탄소세 논의

2021년 6월 현재¹³¹⁾ 137개국¹³²⁾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파리협약에 근거하여 탄소중립선언에 동참하였다. 우루과이(2030년), 핀란드(2035년), 오스트리아(2040년), 아이슬란드(2040년), 독일(2045년), 스웨덴(2045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124개국)은 2050년을 탄소중립 달성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있다. 중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206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2050년 이후의 목표 달성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국경조정제 등의 시장기반 정책과 더불어 직접규제 등의 비시장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총량이 주어진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한 가격기제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제도 도입을 위한 거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탄소세(carbon

131) Visual Capitalist,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32) 부탄과 수리남 2개국은 이미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

tax)가 유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다.

OECD는 2011년 보고서¹³³⁾에서 시장기반 탄소감축 수단으로 탄소세 도입을 권고하였으며, 2019년 1월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8명과 미연준의장 4명을 포함하는 미국 경제학자¹³⁴⁾ 3,500여 명이 가장 비용효율적인 탄소 감축수단인 연방탄소세와 탄소국경조정세의 전면 도입을 주장하였다. 1990년 핀란드에서 처음 시행된 탄소세는 2021년 현재 주로 EU 국가를 중심으로 25개국¹³⁵⁾에서 실시 중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탄소를 함유하거나 배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일종의 종량세¹³⁶⁾이다. 세계은행¹³⁷⁾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탄소가격 수준이 2030년까지 CO₂톤당 50~100달러 수준으로 추정하며 이는 석탄 및 천연가스의 한계세율 하한으로 간주되는 CO₂톤당 30달러¹³⁸⁾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탄소세가 순조롭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생산제품 원가상승에 따르는 경쟁력 약화로 기업들이 탄소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을 이전하는 탄소누출 현상¹³⁹⁾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에서 탄소세 도입 시 탄소국경조정(CBA: Carbon Border Adjustment) 도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EU는 'Fit for 55'라고 하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안을 통해 2023년부터 5개 산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33) OECD, "Environmental indicators, modelling and outlook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34) Climate Leadership Council,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6).

135) 탄소세가 도입된 비유럽지역 국가는 일본,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호주는 2012년 도입 후 조세저항으로 2014년 폐지되었다.

136) 문진영 외(2017).

137)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138) OECD(2019), "Taxing Energy Use 2019: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139) 조세재정연구원(2020).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할 예정¹⁴⁰⁾이다.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탄소세와 탄소국경세의 도입을 적극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2021년 7월 「공정전환 및 경쟁법안(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¹⁴¹⁾을 발의하였는데, 이 법안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탄소집약적 수입제품에 탄소배출국경세(Carbon emissions Border Tax)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보고서¹⁴²⁾에서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대안으로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라 주요 탄소배출국을 3단계로 구분하여 탄소최저가격을 적용하는 국제탄소가격하한제(ICPF: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도입을 제안하였다.

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및 조세 관련 공시 강화

2021년 7월 1일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 이 다국적기업에 대한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합의하였다. OECD는 이 제도가 2023년부터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21년 6월 5일 런던에서는 G7 재무장관이 이미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15%로 합의하였다. 그동안 기업 소재지 과세를 원칙으로 하던 국제법인세 체계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전환하고, 공정경쟁 촉진과 조세회피 근절을 위해 국가별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는 원칙에 동의한 것이다.¹⁴³⁾

이러한 국제법인세 과세 체계의 변화는 ESG와 관련하여 두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지금껏 조세회피나 절세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하

140) 2023년부터 3년간 과도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과도기간에는 배출량 등 보고 의무만 부여한다.

141) 7월 19일 미국 Chris Coons 상원의원과 Scott Peters 하원의원이 발의하였다. U.S. Congress,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142) Parry, Black, and Roaf(2021).

143)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2021).

거나 심지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강하였으나, ESG 경영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본격화되면서 기업의 평판이 중요해지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대해 반면교사가 된 대표적 사례는 2012년 영국 스타벅스¹⁴⁴⁾의 조세회피(tax avoidance) 사건이다. 이 회사는 세율이 24%인 영국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소득의 대부분을 세율이 낮은 나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영국에서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 불매운동이 발생하였고 매출에 타격을 입은 스타벅스는 결국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기부금 형식으로 영국정부에 반환하였다. 이 사건 이후 ESG 경영의 큰 흐름 속에서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일조하거나, 환경에 대한 기여를 통해 세제감면 혜택을 받는 등의 ESG 조세전략이 중요한 경영상의 고려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둘째, 국제적 협력을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기업들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조세 관련 공시 규정을 도입하여 조세투명성을 높이는 국가적 전략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ESG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조세회피로 축적된 자금을 자사주 매입 등에 투입하여 투자자의 부를 증가시키에 따른 부의 편중현상을 개선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조세 관련 공시도 점차 강화되는 추세인데, 2021년 6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조세회피처 포함) 사업활동 내용, 상근 종업원 수, 매출, 이익, 납세 등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 국가별 보고서(public CbCR) 법안에 합의¹⁴⁵⁾하였다. 법안에 따르면 총매출 7.5억 유로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2023년부터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즉 2015년 10월 작성

144) 「영국 스타벅스의 세금회피 문제」(2012),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8. 31).

145) European Union(2021. 6. 1), “EU lawmakers strike milestone deal for corporate tax transparency,”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1).

되어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대응을 다룬 15개 Action Plan의 연장선이다. 이 플랜의 Action 13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전 가격자료와 납세자료 등을 담은 국가별 보고서 작성 및 과세당국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9년 3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29개국 이 다자간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보의 공시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EU의 정보공시 움직임에 미국도 2021년 6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연간 매출이 8억 5천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와 해외 사업 및 납세 정보를 포함하는 CbCR 재무 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¹⁴⁶⁾ 시켰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공화당의 반대가 심해 상원을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다. 공시

국제기구 이외의 글로벌 NGO¹⁴⁷⁾들도 ESG와 관련된 공시 표준 프레임워크¹⁴⁸⁾를 발표하고 있다.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는 물과 같은 천연자원의 사용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업의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환경 공개 플랫폼을 구축한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이 NGO가 제공하는 플랫폼은 기업이 도시 및 지역에서 기후변화, 물 안보, 삼림벌채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며 투자자, 기업, 지방정부가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는 환경 NGO 국제 컨소시

146) Deloitte(2021. 6. 19), "House approves corporate governance package with country-by-country reporting mandate,"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147) Bergman, Karp, and Rosen(2020), "ESG Disclosures: Frameworks and Standards Developed by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9. 3).

148) 글로벌 NGO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공시 표준 프레임워크에 대한 자세한 논의와 비교는 6장 2절에서 제시한다.

업으로,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재무정보 수준의 엄밀성을 가지고 보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공시 표준 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환경문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의 환경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한다.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는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둔 NGO이며 1997년 미국 보스턴에서 설립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할 때 대부분 이용하는 표준 프레임워크인 'GRI Standards'를 2016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표준은 세계적으로도 기업이 ESG 관련 정보를 공개할 때 가장 널리 통용되는 지속가능보고 표준 가이드라인이다. GRI는 기후 변화, 인권, 사회적 가치 등의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시 표준을 제공한다. 특히 GRI는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GRI 표준이 SDGs 목표와 양립 가능하도록 'GRI Standards'를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17개 SDGs 목표와 GRI 표준이 대응되도록 하였다.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는 규제기관, 투자자, 기업, 표준제정기구, 회계법인, 학계 그리고 NGO로 구성된 조직으로, 영국의 The Prince's Accounting for Sustainability(A4S)와 GRI, 국제회계사연맹(IFA: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에 의해 2010년 8월 설립되었다. IIRC는 기업들이 재무, 제조, 인간, 자연, 사회 및 관계의 관점에서 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간결하게 투자자 중심의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위원회(SASB)는 산업별로 투자자에게 중요한 공개 기업의 ESG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돕기 위한 지속가능성 회계표준을 제공한다. SASB는 2020년 현재 77개 산업별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 IIRC와 SASB는 2020년 11월 합병을 선언하였고 2021년 11월 Value Reporting Foundation이라는 조직으로 재편되어 종합적인 통합공시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7. 정책적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6개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ESG 관련 정책들은 각 국가들이 처한 정치·경제·사회·자연환경적 상황에 따라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유럽연합(EU)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ESG 정책의 확산과 제도화에 적극적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입법활동을 통하여 EU가 구축하고 있는 ESG 인프라들은 녹색분류체계, 지속가능금융 공시, 기업지속가능 공시, 기업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 탄소국경세 부과 등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관련 ESG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거나 도입이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 한국형 ESG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선진적 ESG 제도의 기준으로서 EU가 제정한 규정이나 원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 규제와 관련하여 국내적으로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EU 수출 대기업 공급망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가 정립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국가 차원의 준비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 투명성과 기업책임의 확대 등의 국정 목표는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이 새로 도입하거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참고할 만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도록 한 것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이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 사회적 기회비용을 누가 분담하고 어떻게 분담할지, 그리고 탄소가격은 어떻게 결정할지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기 때문이

다. 둘째,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전권을 행사하고 부처별 이슈를 조율할 수 있는 기후특사(또는 위원회)와 같은 정무직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가 국가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는 보고서의 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기후변화가 가져올 금융위험을 측정·평가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과 기후 관련 금융위험을 규제·감독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넷째, 미국과 같이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하고 연기금 운영 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데, 미국과 같이 「지역사회재투자법」의 제정과 ‘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는 사회적 가치(S)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선진국 진입에 성공했음에도 여전히 성별이나 인종, 사상에 대한 차별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에 일본 정부가 도입한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성 가이드라인’의 제정 및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과 같은 제도 도입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전략적인 경영 관점에서 실천하는 ‘건강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에 도입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나 상장기업 중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도 직원의 건강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도입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한다. 개인의 신용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므로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업 차원의 적용방안은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민간 지원정책이나 규제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별로 일정한 회수를 초과하는 탈세, 산업재해, 직장 내 성폭력이나 괴롭힘 등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되 공표하지는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에 세계의 관심을 집중시킨 공동부유 정책은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재산세·상속세·자본이득세 등이 없는 중국에서는 민간부문의 기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큰데, 이는 자칫 기업의 자발성을 가장한 반강제적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므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단속 등 독점 금지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자산기금 조성 등도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다.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공시에 의해 평가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OECD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합의되었고 조세 관련 공시는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 경영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6장



투자 및 기업경영 ESG 지원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 및 회계 제도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4. 지원 및 규제 정책

1.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발

ESG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은 기존 사업을 ESG를 기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발생하며, 이러한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기업의 자금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업의 ESG 활동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ESG 강화 목적의 금융이 절실하다. ESG와 관련된 기업활동 가운데서도 가장 앞서 진행 중인 환경 분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의 필요가 크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금융을 녹색금융이라고 한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 관련 효과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녹색금융은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탄소금융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기후변화 관련 효과도 고려하는 기후금융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와 지배구조 관련 효과를 모두 고려하는 지속가능금융보다는 하위개념이다.

민간의 자금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지원하는 녹색금융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어떠한 활동이 친환경 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녹색분류체계(Taxonomy)라고¹⁴⁹⁾ 한다. 녹색분류체계는 금융회사, 기업, 투자자 등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일관성 있는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를 막고 자금이 친환경 활동에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정부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준비 중이다. 2021년 5월 환경부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¹⁵⁰⁾

149) 사전적 의미로 taxonomy는 모든 종류의 분류체계를 의미하는 일반명사이나, 녹색금융에서는 'Taxonomy'를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성 제고활동에 포함되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기 위한 분류체계, 즉 '녹색분류체계'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이 보고서에서도 'Taxonomy'를 '녹색분류체계'를 특정하여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한다.

150) 당초 계획은 2021년 6월 중 확정 예정이었으나, 확정이 지연되었다. 환경부는 2021년 4분기 중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Impact On(2021. 8. 27)). 「기재부, ESG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는 녹색분류체계를 통해 추구하는 환경 목표다. 그다음은 적용 분야 및 분야별로 녹색 경제활동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추구하는 환경목표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산업특성과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향해야 할 한국만의 고유한 환경 목표가 무엇인지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 한국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제한적인 영역에 대해서만 목표를 제시하는 반면, 기타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금융의 국제화를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또한 국제적 정합성을 가져야 혼동을 피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는 각 국가와 지역별로 자신들의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되는 반면, 금융시장은 국제화되어 있어 국경을 넘나든다. 따라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한국적인 고유성만을 강조한다면 기업과 금융시장에서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녹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 녹색금융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녹색과 비녹색의 이분법적 적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기업의 환경 관련 대응이 비교적 늦은 편으로 이야기된다. 즉 대규모 전환이 필요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분류체계가 이분법적으로 적용될 경우, 전환에 적극적인 동시에 자금이 가장 필요한 전환 중인 기업들로 자금 유입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전환 중인 기업이 비녹색으로 평가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산발적 정책 교통정리한다.,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4).

2. ESG 활동의 공시(Disclosure)¹⁵¹⁾ 및 회계 제도

기업의 ESG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활동을 측정하고 보고하는 공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에서 핵심 부분은 정보 이용자가 누구이냐다. 소식을 접하는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동일한 소식(news)이라도 정보로서 그 소식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¹⁵²⁾ ESG 철학이 기업이 주주만을 위한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자 전반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므로 ESG와 관련된 공시체계는 이해관계자 전반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의 측정과 보고는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므로 이에 큰 문제는 없다. 우선 재무적 성과는 주주 및 채권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을 주요 정보이용자로 설정하므로 그 재무적 성과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재무적 성과를 위한 시스템은 소기의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현재, 재무적 성과를 보고하기 위한 가장 광범위한 정보제공 체계는 재무제표라는 형식으로 작성되는 계량적이고 정형화된 정보인 회계정보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처음 등장한 회계기준은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다듬어져 기업의 재무성과와 재무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상당 부분 최적화가 이루어져 있다. 최근 들어 산업의 빠른 변화로 기존의 재무회계 기법이 표현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재무회계도 완벽하지는 않으나 표준화된 형태의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다는 장점으로 기업의 성과 측정과 평가에서 기준으로 여전히 널리 활용된다.

151) 넓은 개념의 공시에는 모든 형태의 정보제공이 모두 포함된다. 회계정보, 즉 재무제표의 보고도 넓은 개념의 공시에는 포함된다. 회계정보와 같은 정기공시와 각종 수시공시도 넓은 의미의 공시에 포함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회계제도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152) 예컨대 투자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와 주주 사이에는 이해관계 불일치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정보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배당지급에 대한 처지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예 가운데 하나다. ESG 개념의 도입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로 기업이 고려해야 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관계 불일치 정도가 주주자본주의 시대보다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서 어떤 정보가 제공되어야 이해관계자의 정보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주주자본주의의 관점보다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재무회계는 투자자들을 주요 정보이용자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맞추어 제공하는 정보의 형식과 내용이 조직된다. 따라서 주주뿐만 아니라 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는 이해관계자들 모두, 그리고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지역사회 및 국가와 관련한 모든 측면을 다루는 데는 필연적으로 제약이 있다.¹⁵³⁾ 재무회계가 투자자를 제외한 기타 이해관계자들을 배타적으로 대하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 이들을 일차적인 정보이용자로 설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ESG 가운데 환경과 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정보는¹⁵⁴⁾ 현재의 재무제표에서는 자세히 제공되지 않는다.¹⁵⁵⁾

ESG가 부상하기 전까지, 주주자본주의가 기업과 자본시장을 지배하던 시기에는 E와 S에 대한 정보를 기업이 굳이 알려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업 간 경쟁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보는 숨겨야 할 정보로 보아왔다.¹⁵⁶⁾ 최근 들어 E와 S에 관한 정보수요가 증가하므로 관련 정보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공시체계 전반을 손보려는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는 ESG와 관련된 공시 관련 단체 가운데 앞서 있는 기관의 하나다. GRI는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mentally Responsible Economics)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중심이 되어 협약을 맺고 설립한 국제기구로 현재는 기업, 회계사를 포함하여 지속가능보고와 관련된 각종 개인과 단체들이 참여한다. GRI는 2016년 지속가능보고표준(GRI Standards: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을 처

153) 현재의 회계보고도 동일한 이유로 투자자를 주요 정보이용자로 좁히고 이들을 중심으로 정보제공 체계를 설계한다.

154)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한국에서는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와 함께 공시하도록 강제되어 사실상 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재무정보와 함께 공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55) 사업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나 기타 재무제표 주석 등에 일부 포함될 수는 있다.

156) 투자자만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 간에도 상대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공개된 정보를 서로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할수록 경쟁상대에게 우리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게 되므로 공시내용이 강화될수록 시장경쟁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규계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투자자에 의한 소송위험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공시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유인이 있다.

음으로 발표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한다. GRI Standards는 많은 기업이 ESG 활동 보고의 표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2021년 6월 현재, GRI Standards는 39개 주제별로 구성된 세부항목에서 ESG 관련 항목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GRI Standards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UN의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와 관련된 활동을 지속가능성 보고에 반영하는 부분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점이다.

GRI Standards의 세부항목에는 ESG 가운데 환경과 사회 관련 항목에 대한 공시 기준은 존재하나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은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 내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기준이 정비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에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부분 보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지배구조 관련 내용이 누락된 점은 단점일 수 있다.

GRI Standards는 이름에서 일견 재무제표를 위한 회계기준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재무제표는 정형화된 형식으로 계량화된 수치들을 제공하는 반면,¹⁵⁷⁾ GRI Standards를 따라 작성된 공시는 관련 내용에 대한 서술 형태로 제공된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재무제표와 같은 형태로 양적인 표준화는 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제3자에 의한 인증(회계감사)이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GRI Standards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는 공시정보의 정확성과 적절성이 제3자에 의한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러한 점은 지속가능보고서의 공시정보로서 가치에 제약점이 된다. 이 점은 GRI Standards에 제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속가능보고에 공통된 문제점이다. 제도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ESG 보고양식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157) 물론 이 수치들만으로는 충분한 정보가 되지 못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주석(footnote)도 함께 제공하여 정보성을 보강한다. 숫자가 도출된 과정이나 가정 등을 수치만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인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2015년 기업이 기후 문제와 관련된 위험의 재무적 효과를 공시하기 위한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라는 협의체를 설립하였다.¹⁵⁸⁾ 이들은 2017년에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은행이 범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관련한 위험 및 기회 요인을 파악하여 그 재무적 영향을 공시방안으로 제안하였다.

TCFD 권고사항의 주요 내용은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와 측정기준, 목표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구조는 기후변화 관련 조직의 지배구조, 즉 이사회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공시요구이며, 경영전략은 기후변화의 사업·전략·재무계획에 대한 실질적·잠재적 영향을 공시할 것을 권고한다. 위험관리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평가·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세스의 공시에 관한 내용이며, 마지막으로 측정기준 및 목표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와 감축목표 등의 공시에 관한 권고를 포함한다.

이 권고안의 특징은 환경위험에 따른 결과를 지속가능보고서가 아닌 재무보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인데, 이 점이 GRI Standards와 주요한 차이점이다. 재무적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재무보고에 반영함으로써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기 용이하므로 자본시장에서 환경요인 모니터링 촉진이 가능해진다.

GRI Standards와 마찬가지로 TCFD 권고사항도 재무제표와 같은 정형화된 테이블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재무제표와 함께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재무제표 정보에 기후 관련 정보의 공시를 보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CFD에는 약 70개국에서 정부, 기업 등 약 1,500여 개 기관이 가입하였으

158)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30).

며, 2021년 2월 현재 한국에서는 환경부와 한국거래소를 포함한 약 15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Sustainable Accounting Standard Board(SASB) 또한 ESG 관련 공시를 하기 위해 SASB Standards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¹⁵⁹⁾ 2018년 초안이 발표된 이 공시 표준은 기업을 77개 산업별로 분류하고 산업별로 중요성 기준으로 공시기준을 별도로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¹⁶⁰⁾ 산업별로 중요한 ESG 측면들을 설정하여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공시 요구를 제시한다. 예컨대 삼성전자의 주요 사업 분야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Semiconductor) 산업 관련 공시에는 환경이나 임직원의 건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나 투자은행 및 증권업(Investment banking & brokerage)에서는 직원의 다양성이나 윤리성 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내용들이 공시요구의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공시정보의 주요한 이용자로 설정하는 GRI와 달리 SASB Standards는 투자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들을 선별하고 재무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요소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TCFD의 권고안과 일맥상통한다. TCFD의 권고안과 마찬가지로 SASB Standards도 미국 상장기업의 연차보고서(10-K)에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합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술한 공시기준인 SRI, SASB 이외에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CDSB(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UN Global Compact 등의 기구에서 제안한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기업의 정보공시 프레임워크 등 ESG 관련 공시 기준들이 난립하는 것이 현재 상태다. 각각의 공시 프레임워크들은 정보 이용자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므로 이에 따라 관심을 두는 공시 내용도 차이가 있다. 기업에서는 ESG 정보의 공시에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159)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160) SASB Materiality Map,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0).

에 없고, 이용자로서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상호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무보고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널리 활용되는 ESG 관련 공시기준을 제시한 단체 가운데 CDP, CDSB, GRI,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와 SASB는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통의 ESG 공시 표준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다.¹⁶¹⁾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협업을 위한 국제기구인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산하 IBC(International Business Council)에서도 ESG 활동의 재무보고에 관한 측정치를 개발하여 공표하였다. IBC는 120인 이상의 영향력 있는 CEO들로 구성된 단체로, 4대 회계법인인 Deloitte, Ernst & Young, KPMG, PwC와 협력하여 보편적이고 산업에 구애받지 않는 ESG Metrics인 SCM(Stakeholder Capitalism Metric)을 설계하였다.

SCM 초안은 2020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공개되었고, 8월에 최종안이 마련되었다. SCM 최종안과 관련하여 세계경제포럼은 2020년에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이라는 백서를 발간하였다.¹⁶²⁾ SCM에서는 ESG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요소들을 기업지배구조, 환경, 이해관계자와 번영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구분하고¹⁶³⁾ 네 가지 기준 아래에 ESG 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지표를 제시한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제2장에서 소개한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여섯 가지 목표 가운데 평화(Peace)와 협력(Partnership)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해당되는데, 이 점은 SCM이 SDGs에

161) Impact Management Project(2020),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8).

162) World Economic Forum(2020),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9).

163) SCM 원문에서는 Pillar라고 표현한다.

서 제시하는 지속가능성과 연관성하에 기업을 평가하려는 지향점을 가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2021년 5월 현재 SCM을 기반으로 하여 ESG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78개 유력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SCM은 비재무적인 가치를 향후에 재무적 가치와 결합하여 통합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통합재무제표에 재무적 가치와 ESG 가치들이 반영되어 기업가치 평가에 활용하기가 용이해질 것이다. 즉, SCM은 투자자 및 자본시장 참여자들을 SCM이 제공하는 ESG 정보의 주요 이용자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시내용의 통합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난립하고 있는 ESG 관련 공시 방법이 명확해져서 공시 준비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4월,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 재단(IFRS Foundation)은 ESG 관련 공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고 이를 재무보고 기준인 IFRS를 관리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와 나란히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IBC는 SCM과 관련하여 SSB의 설립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이는 재무보고와 ESG의 통합을 염두에 둔 의도와 일치하는 것이다.

SCM의 정보공시기준 내에는 검증에 대한 요건이 없다. 재무보고가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SCM이 제공하는 ESG 정보는 투자자들이 신뢰성 있게 활용하기에는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SCM이 재무보고에 공시 형태로 결합될 경우 투자자들에게서 검증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CM과 재무보고가 결합될 경우,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에서도 ESG 관련 투자의 증가와 ESG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다. 2025년까지는 총자산

2조 원 이상의 KOSPI 상장기업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의무화되고, 2030년부터는 모든 KOSPI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만 의무화되어 있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점차 확대되어 2026년부터는 모든 KOSPI 상장사가 의무공시 대상이 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SG 활동 공시와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 중이다. 학계에서는 현재의 재무제표에 사회성과를 통합한 통합재무제표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무보고 형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한국회계학회와 사회적 가치연구원¹⁶⁴⁾은 사회성과측정포럼을 개최해 그간 연구해온 통합재무제표 형식을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들은 현재 경제적 가치만을 반영하는 재무제표는 주주들에 초점을 둔 재무보고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반영한 새로운 통합재무제표를 기존의 재무제표와 병기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접근법에서는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 즉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의 형태에 사회적 가치를 추가하여 보고하게 된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의 재무적 성과와 구분되는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손익, 자산, 부채와 자본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재무제표에 익숙한 투자자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극복해야 할 난점이 적지 않다. 가장 어려운 점은 비재무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측정해야 재무적 가치와 함께 재무제표에 보고할 수 있다는 부분일 것이다. 비재무적 가치, 즉 사회적 가치는 탄소배출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활성화된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공정가치(fair value)의 관측이 어렵다. 또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자산의 경우는 그와 관련된 효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러한 점은 회계기준이 기존의 무형자산 측정에서 겪는 난점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로 회계기준은 효익

164)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17).

실현의 확실성과 측정의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무형의 경제적 자산을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가 반영하지 못하는 경제적 자산이 존재하며,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에 따라 누락된 무형자산으로 재무제표가 부실화한다는 점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회계기준의 난점 가운데 하나다. 이는 사회적 가치의 재무재표 반영에도 동일한 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기존의 재무제표 형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 자본의 개념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회계는 주주를 기업의 소유주로 인식하고 이를 중심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수익과 비용이 정의된다. ESG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해관계자 전반으로 관점을 넓힐 경우에도 주주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정의된 현행 회계의 체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회계학회와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0년 11월 발표에서 재무회계의 기준이 되는 개념체계부터 ESG를 반영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도 진행되어가면서 더욱 섬세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2021년 6월 'WEF-IBC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매트릭스의 활용방안 웨비나'라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SCM Metrics의 적용과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전술한 바 있는 SCM은 현재로서는 ESG와 관련된 공시 기준들의 통합에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SCM은 기업들이 ESG 활동 공시에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다. SCM의 활용방안을 알림으로써 기업의 ESG 활동 공시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한국 공인회계사회의 접근이다.

정부도 ESG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진행 중이다. 정부차원에서 기업규모와 업종별로 차별화된 내용을 담은 K-ESG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¹⁶⁵⁾ 이 가이드라인에는 국내외 주요 평가기관들의 평가체계를

165) 관계부처합동(2021. 8. 26),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문항들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기업의 ESG 관련 활동의 방향성 및 그 평가에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기업의 역량에 한계가 있는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유용성이 클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해외 평가기관의 ESG 평가나 공시와 관련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목소리로 평가항목의 적절성을 지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¹⁶⁶⁾

그러나 정부주도로 K-ESG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 ESG 활동이 민간영역에서 주도되는 움직임인 만큼 ESG 관련 요구사항의 변화속도가 정부조직보다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직접 관리할 경우 시장의 빠른 변화를 K-ESG 가이드라인이 적시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K-ESG 가이드라인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현행 회계기준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민간영역에서 주도하고 정부가 이러한 민간영역에 제도적 장치로 힘을 실어주는 구도로 설계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3. 기업 ESG 평가등급 현황과 문제점

ESG와 관련하여 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기업의 ESG 활동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에 기업의 ESG 활동을 반영함에 따라 자본시장의 ESG 평가가 기업가치 평가와 자본조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SG 평가는 여러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투자자들에게 널리 활용되는 평가등급들은 Morgan Stanley Capital Investment(MSCI) ESG Ratings, S&P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DP

166) 예를 들어 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에서는 기업 구성원의 인종비율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데, 현재 단일인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상황에서는 평가항목을 만족시키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는 한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의 ESG 평가를 체계적으로 낮추는 원인이 될 수 있다.

Climate, Water & Forest Scores, Sustainalytics' ESG Risk Ratings 등이다. 한국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이 2011년부터 ESG 평가를 실시해 왔다. 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과 코스닥 150에 포함된 기업, 대기업집단 소속기업, 주요 금융사 등이 포함된다. 등급은 S, A+, A, B+, B, C, D 총 7단계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ESG 평가 역사가 길지 않아 측정방법, 평가방법과 평가대상 항목 등 많은 부분이 아직도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ESG의 특성상 평가 항목의 범위가 방대하며 그 항목들마다 가중치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ESG 평가결과가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ESG 평가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한다. Berg *et al.*(2020)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6가지 ESG 평가등급인 KLD(MSCI Stats), Sustainalytics, Vigeo Eiris(Moody's), RobecoSAM (S&P Global), Asset4(Refinitiv), and MSCI를 분석하여 평가등급들 사이의 상관계수 평균이 단지 0.54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장 유력한 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이 정도로 낮다면 ESG 등급의 신뢰성은 확신하기 어려울 것이다.

ESG 평가의 불일치 문제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나타난다. 우리은행의 2020년도 평가 가운데 환경부분 점수는 MSCI에서는 B,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C, KCGS의 경우에는 C+ 등급이 주어졌다. 오투기의 경우 KCGS의 평가는 B+인 반면, MSCI와 톰슨로이터의 경우는 C+로 매우 낮게 평가하였다. SK하이닉스는 MSCI등급은 C+이지만 톰슨로이터와 KCGS의 평가는 B+ 등급 근처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평가기관에 따라 등급이 크게 변할 뿐 아니라, 평가결과 차이도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 등 ESG 평가의 신뢰성 문제는 앞으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4월 현재 국내외에 ESG 평가지표가 약 600개가 존재하며, 이 평가지표들이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ESG 관련 활동에 혼란이 야기된다. 또한 신뢰성 문제에 더하여 ESG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내용들도 기업에 부담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한국

적 환경과 해외에서 중요성을 두는 ESG 활동이 상이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한국기업의 ESG 활동이 해외 지표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ESG 등급과 실제 ESG 활동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S, 즉 사회 관련 활동에서 이러한 점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른 지표보다 크다. E, 즉 환경 관련 지표는 국제적인 기구들을 통해 달성 목표와 로드맵이 명확하여 기업의 환경 관련 활동 목표 수립과 그 평가도 비교적 신뢰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 G, 즉 기업지배구조 또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짧은 기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한 달성 목표와 수단 등에서 해외에서의 논의와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러나 S의 경우는 한국의 고유한 환경이 해외 지표에서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형 K-ESG 지표를 개발 중이다. 통일된 평가지표를 제공함으로써 지표의 난립으로 인한 평가의 일관성 문제와 해외 지표가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4월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형 K-ESG 지표 초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표는 정보공시 관련 5개, 환경 관련 14개, 사회 관련 22개, 지배구조 관련 20개 항목 총 6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⁶⁷⁾ 앞서도 언급하였으나 정부 주도의 ESG 지표는 지표의 난립 문제를 완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정부의 규제로서 작동할 위험성이 있고 시장의 움직임을 적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ESG 관련 공시 및 평가 인프라가 정비될 때까지는 정부가 가이드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궁극적으로는 ESG 평가는 민간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ESG 평가 관련 주도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설계·운영해야 할 것이다.

167) 산업통상자원부(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표 6-1. K-ESG 분야별 대표 문항

구분	대표 문항 내용	문항
정보공시	• ESG 정보 대외공개 방식은? • ESG 정보 공개 주기는?	5
환경(E)	• 재생에너지 사용량? • 온실가스 배출량 집약도(매출액 기준)는?	14
사회(S)	• 정규직 비율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은?	22
지배구조(G)	•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 내부비위 발생 현황 및 공개 여부?	20
합계	• 정보공시(5개), 환경(14개), 사회(22개), 지배구조(20개)	6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온라인 자료(검색일: 2021. 8. 28).

4. 지원 및 규제 정책

기본적으로 ESG 공시제도는 예외 없는 적용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등 일부 기업의 경우는 그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전체 사회에 미치는 실효성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 비용을 보전하거나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회계 및 공시 기법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관련된 기법을 전수하거나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 등의 경우는 회계 및 공시 의무에 대해 자율규제나 면제를 허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비슷한 속성의 소규모 기업들이 다수 있는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나 전문기관 등이 전반적인 진단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집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시 비용의 보전 및 일부 지원
- 공시 기법의 전수 및 자문 서비스 제공
- 자율규제나 면제의 허용
-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집단적으로 측정 및 관리

그리고 현재 세제혜택에서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다양한 ESG 기여활동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법정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부여하는 세제혜택에 준하는 지원방안을 기업 차원의 봉사활동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활동과 수혜기관의 자격에 대한 정의나 분류기준(taxonomy)이 필요하다.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은 기본적으로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 즉 정확한 혜택 대상을 지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세제혜택이 남발되면 기존의 세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ESG 활동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및 확대
- 수혜기관 및 대상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류체제 마련
- 세제혜택 기준을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운영

장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ESG 활동의 최저수준을 의무화하고 그 미달분에 대해서는 거래체제를 이용하여 보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치 ESG 인증서(certificate)를 발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중앙집중화된 거래소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나 탄소배출권(CER: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또는 Carbon Credit) 거래와 유사한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ESG 활동이나 그 인증 가능성에 대해 기업마다 비교우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거래제를 통해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ESG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거래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서 기업별 의무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인도의 경우 기업에 법적으로 매출액 2% 금액을 반드시 CSR 활동에 지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기준을 모든 나라가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구체적인 수준이나 금액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할 것이다.

- 전체적인 수준에서 ESG 활동이 최적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ESG 인증서 거래체제 마련
- 이를 위해 기업별 ESG 활동 및 인증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개별적인 의무수준 설정
- 이러한 의무수준 설정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연합(EU)은 최근 기업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 실사(due diligence) 의무를 강제하는 법률을 곧 제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또 다른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도 이와 동일한 개념의 입법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 차원에서도 이러한 국내외적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중소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이러한 대응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관련 정보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생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중소기업과 대기업 관계에서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단가 후려치기나 원하청 갑질 문화 등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련 법규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보다 강화하고, 법적 분쟁을 정부나 지자체나 전문기관이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국제적인 공급망 전 과정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국내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 중소기업의 대응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문화 및 공생적 생태계 확립 계기
- 중소기업의 법적 분쟁 지원 체제 마련

한편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개인의 사회신용(social credit)을 평가하는데, 한국적인 상황에서 이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프라이버시나 인권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를 기업 차원에 적용하는 방안은 상대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즉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정부정책이나 민간의 지원이나 규제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 기업별로 일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탈세, 산재, 직장 내 성희롱이나 따돌림 등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사건에 대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되 공표하지는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차명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불건전한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회적 신용점수는 일반적인 기업규제가 되어서는 곤란하며 법적 규제만 회피하려는 일부 악의적인 기업이나 사업자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차등적 지원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로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사회적 신용점수 관리방안을 기업 차원에 적용
- 관련 기업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관리
-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라 일부 악의적 사업자 제재에 초점
- 기업 지원혜택 및 규제의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으로 활용

제7장



ESG 관련 국가정책의 재설계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1. ESG 관련 기존 정책의 개관

광의의 ESG 개념의 포괄성을 고려할 때, 모든 정부정책은 ESG와 관련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재설계를 위해서는 주요 정책별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부문별 구분과 연관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핵심정책 위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 통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은 K-SDGs 및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도 23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적 이슈들에 대한 정책체계를 자문하거나 심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산하 위원회도 500개 이상 운영되는데, 대표적으로 환경부 산하에서 K-SDGs를 관장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있다.

가. K-SDGs

먼저 K-SDGs는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국가전략과 가장 유사한 정책체계로서 UN-SDGs 논의에 부응하여 2018년 수립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국내외적으로 이전부터 활발히 논의되고 있었다. 1992년 6월 「리우선언」 이후 UN은 의제21(Agenda21)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를 위하여 각 국가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NCSD: The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설치를 권고하였고, 1999년 4월 국내에서도 시민단체, 언론, 학계, 경제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기구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2000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2007년 8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시행하였다. 이후 법규 개정 등을 거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산하

조직이 되었으며, 2006년 「제1차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01~10)」을 수립한 이래, 현재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40)」이 수립되어 있다. K-SDGs는 UN-SDGs 개념에 대응하여 다음 [그림 7-1] 및 [그림 7-2]와 같이 17개 목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119개 세부 목표 및 236개 지표가 설정되어 정부기관과 지자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그룹 등 다양한 집단에서 관리 및 실천되고 있다. 전체 지표 가운데 57%는 UN-SDGs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글로벌 지표와 국가특화형 지표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그림 7-1. K-SDGs 비전과 전략, 목표

비전	포용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 국가 실현			
전략	사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포용사회	번영 혁신적 성장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환경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리는 깨끗한 환경	평화·협력 지구촌 평화와 협력 강화
K-SDGs 17개 목표	[목표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목표2] 식량안보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목표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목표4]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목표5] 성평등 보장 [목표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목표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목표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 기반시설 구축 [목표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목표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목표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목표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목표13] 기후변화와 대응 [목표14] 해양생태계 보전 [목표15] 육상생태계 보전	[목표16] 평화·정의·포용 [목표17] 지구촌 협력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1부, p. 21.

그림 7-2. K-SDGs 목표 및 법령, 계획과 담당 부처

Goal	주요 법률	주요 계획	주요 부처
G1. 빈곤퇴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보장기본법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 제1차 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18-20)	보건복지부
G2. 기아종식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15-1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G3. 건강과 웰빙	국민건강증진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16-20)	보건복지부
G4. 양질의 교육	교육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평생교육법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2~??)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 종합계획(13-17)	교육부, 고용노동부
G5. 성평등	양성평등기본법 여성발전기본법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13-17)	여성가족부
G6. 깨끗한 위성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015 전국수도종합계획(16-25)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25)	환경부, 국토교통부
G7.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에너지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14-35)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14-35)	산업통상자원부
G8.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미수립) 고용정책기본계획(미수립)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G9.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국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11-20) 지역산업 진흥계획(시도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G10. 불평등 해소	차별금지 관련 법률	분야별 차별금지 및 약자 보호 관련 계획(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G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도시계획(광역시, 시군)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 35)	국토교통부, 환경부
G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순환 기본계획 (수립예정)	환경부
G13.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14-18)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 제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16-20)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14. 해양생태계보존	해양환경관리법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11-20)	해양수산부, 환경부
G15. 육상생태계 보호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보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16-25)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14-18) 제1차 산지관리 기본계획(13-17)	산림청, 환경부
G16.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청탁금지법		법무부

자료: 지속가능발전포털,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검색일: 2021. 8. 1).

나. 한국판 뉴딜정책

최근 저성장 추세와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및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불경기를 극복하고 경제구조를 일대 전환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를 지향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이 발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안전망강화 3대 분야에 대해 다음 10대 대표과제를 추진 중이다.

- 데이터 댐
- 지능형(AI) 정부
- 스마트 의료 인프라
- 그린 스마트 스킴
-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 그린 리모델링
- 그린 에너지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한국판 뉴딜정책 전반적으로, 특히 그린 뉴딜정책의 경우 방향성 및 정책영역에서 상당부분 지속가능발전목표나 ESG 논의와 그 내용이 중복될 뿐만 아니라, 특히 디지털뉴딜의 경우에는 ESG 정책의 실현 수단을 확장해 준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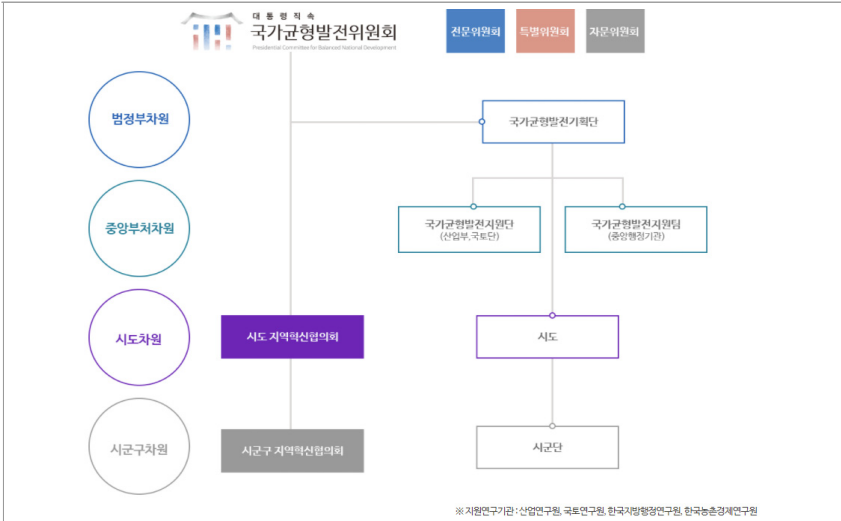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편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23개 설치되어 주요한 국가전략적 이슈에 대해 자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경우 2003년

7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안을 발표하면서 함께 출범되었고, 동년 8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다.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동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동년 7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심의 및 의결되었다. 한편 2010년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였으나, 2018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개편되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 34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부총리 2인을 포함하여 각 부 장관과 지방자치법상 협의체 대표자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관련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200명 이내로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사항을 분야별로 사전에 연구 및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다(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조직체계와 정책비전은 [그림 7-3]과 [그림 7-4]의 내용 참고).

운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현 정부 들어 2021년 5월 26일 34차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27회, 이명박 정부에서 49회 각각 개최된 바 있다. 2019년 1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2) 문건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발간되었으며, 특징적인 내용으로 중앙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지방소멸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정부 주도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계획의 개요에도 이를 반영하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3대 가치를 분권, 포용, 혁신을 반영·구현하는 것으로 하고, 분권 측면에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포용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체계를 발전적으로 복원하고, 혁신 측면에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그림 7-5 참고).

그림 7-3.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조직체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검색일: 2021. 7. 10).

그림 7-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가치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가치」(검색일: 2021. 7. 10).

그림 7-5.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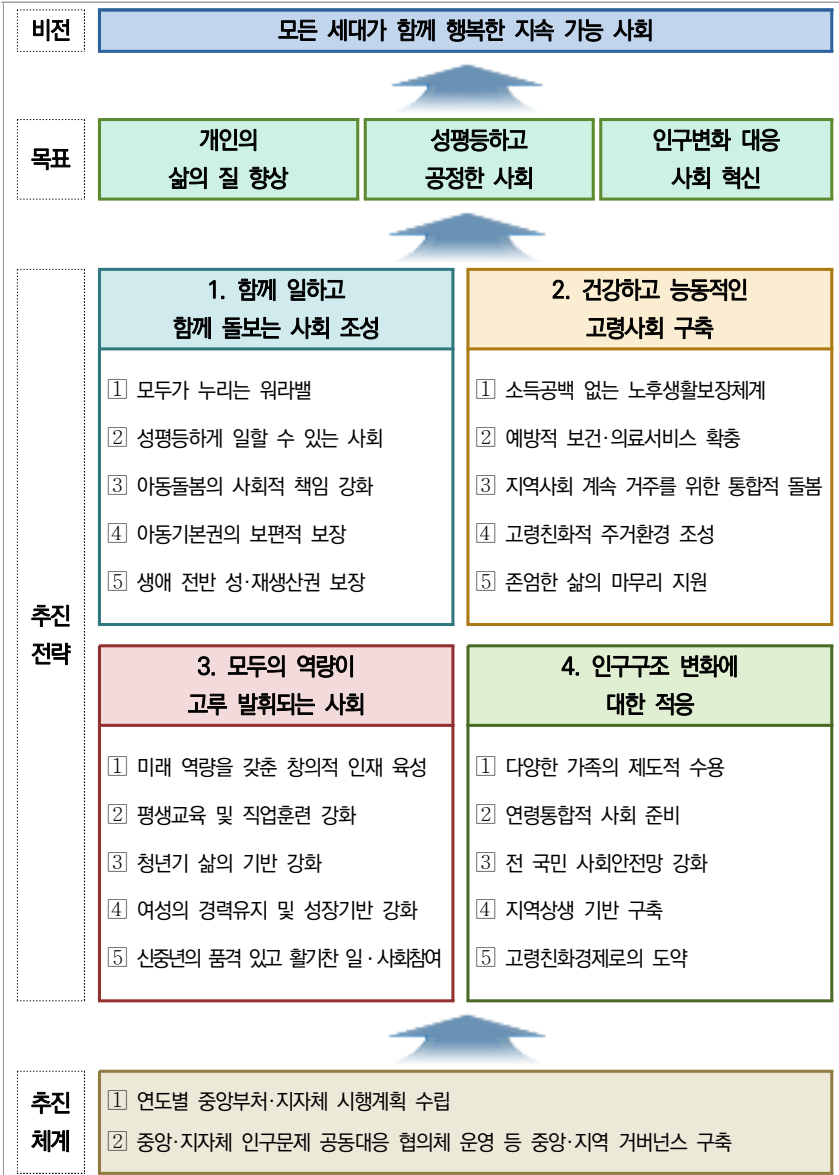
구분	과거 계획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정책주도	중앙정부 주도	지역 주도		
정책목표	지역특화발전	지역 간 균형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지역특화발전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p. 2.

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또 다른 주요 위원회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동년 10월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내에 ‘인구고령사회 대책팀’을 설치·운영하였고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하였다.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동 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를 설치하였다. 이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처음 마련된 이후 2020년 12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었으며, 정책체계는 [그림 7-6]과 같다.

그림 7-6.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체계도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p. 38.

마. 행정기관 위원회의 통합관리

표 7-1.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연도	총계	소속			성격	
		대통령	총리	부처	행정	심의
1997	380	10	23	347	23	357
1998	383	13	26	344	29	354
1999	319	16	28	275	29	290
2000	352	18	31	303	32	320
2001	366	18	32	316	33	333
2002	364	18	34	312	35	329
2003	368	17	35	316	35	333
2004	358	23	44	291	42	316
2005	381	25	47	309	42	339
2006	403	28	50	325	44	359
2007	416	28	52	332	44	372
2008. 2. 28.	579	30	69	480	44	535
2008. 2. 29.	567	17	67	483	39	528
2008. 5.	573	17	67	489	39	534
2009. 8.	461	21	57	383	42	419
2010. 6.	431	20	53	358	40	391
2011. 6.	499	18	56	425	34	465
2012. 6.	505	20	55	430	36	469
2013. 2. 24.	530	21	58	451	37	493
2013. 3. 23.	534	15	60	459	37	497
2013. 6.	536	17	60	459	37	499
2014. 6.	537	17	65	455	38	499
2015. 6.	549	17	65	467	37	512
2016. 6.	554	17	62	475	36	518
2017. 5. 9.	558	17	59	482	36	522
2017. 6.	556	18	59	479	38	518
2018. 6.	558	19	56	483	37	521
2019. 6.	574	22	56	496	40	534
2020. 6.	583	23	59	503	43	542

자료: 행정안전부, 2019년과 2020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정보를 통합함.

이 외에도 다양한 행정기관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표 7-1과 표 7-2 참고), 사회의 복잡성 증대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규제완화를 강조하면서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여 2020년 6월 기준 총 583개 행정기관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향후 이들 위원회의 기능이나 조직의 중복해소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관리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표 7-2. 대통령 소속 위원회 현황(2020년 6월 말 기준)

구분	위원회명	
행정위원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개혁위원회
자문위원회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산업혁명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자료: 행정안전부(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p. 7.

ESG 국가전략을 고려한다면, 현재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Development arid 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문재인 정부의 4차산업혁명 및 소득주도 성장에 이어 한국판 뉴딜정책까지 정부마다 각자의 정책 어젠다를 기획한 바 있다(그림 7-7 참고). 정부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다수 선보였다. 그러나 이전 정부의 정책체계 유산을 연속적으로 잘 활용

하였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혁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 국가균형발전, 저출산고령사회 등 주요 정책이슈 분야에서 기본계획들이 시기마다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발표되는 점은 고무적인 행태라고 하겠다.

그림 7-7.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체계



자료: 임형백(2020), 「문재인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가능한가?」, p. 40.

2. 기존 정책체계의 개선 방향

앞서 설명한 기존의 정책체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ESG 논의와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며, 국제적 시류 변화에 적절하게 반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많은 정책 이슈를 개별 위원회나 부처별 정책만으로 처리한다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상호 구축 내지 상충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통합적 설계 및 실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무총리실 산하에도 59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로 행정협약조정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보다 통합적인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기존 정책들을 폐기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정책체계를 ESG 국가전략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통합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할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정책들의 중복성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고 분류기호 내지 분류명 태그(tag)를 부여하는 등 정책 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책 현황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전체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다양한 정책기획과 연관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별도의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전에 먼저 기존의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들 사이의 보완 및 상충효과를 미리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정책 분류체계는 최상위 국가전략에 근거해야 하고, ESG 국가전략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대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와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ESG 개념은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작동하기에 충분한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정책설계에 필요한 구체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국가전략 대안으로는 K-SDGs 정책체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K-SDGs 체계를 ESG 관점에서 분류체계를 보완하고 다른 정책체계들과 연관성 및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훌륭한 국가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K-SDGs 목표들은 한국적 상황을 많이 반영하지만, 기본적으로 UN-SDGs 개념 체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들이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SDGs 개념 자체가 목표성 개념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지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국가전략은 보다 거대담론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가전략은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공감되는 문제의식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분명히 공유하고 그 해결방안에

대한 공동체적 고민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체계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일 것이다.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와 관련하여 현재 국제적으로는 OECD가 발표하는 BLI(better life index)가 있어 회원국별로 지표를 산출하며 웹페이지를 통해 회원국별, 그리고 회원국 간 시각적 비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¹⁶⁸⁾ 한국은 2020년 지표의 경우 주거, 시민참여, 교육, 직업, 치안에서 평균 이상이지만 소득, 삶의 만족, 환경, 건강, 공동체, 일과 삶의 균형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5.9점으로 OECD 평균 6.5점을 하회하였다(그림 7-8 참고).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통계청에서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삶의 질 지표’는 11개 영역의 71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지수값 변화를 통해 매년 전기대비 개선 및 악화 여부를 알려준다(그림 7-9 참고). 이 부분도 일부 K-SDGs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일환으로 본 보고서는 삶의 질 지표를 K-SDGs 체계의 부분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한편 기존 정책체계가 주로 제시하는 ‘목표’들을 설정한 보다 근본적인 취지와 사회적 ‘문제’ 또는 ‘위험’에 대해 ESG 국가전략 관점에서 다시 분류하고 상호연관성을 통합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목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반드시 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다른 목표들과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목표를 성취하는 동안 문제의 성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문제는 추상적 성격이 강하므로 인식과 평가에서 구체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 내지 ‘위

168)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검색일: 2020. 7.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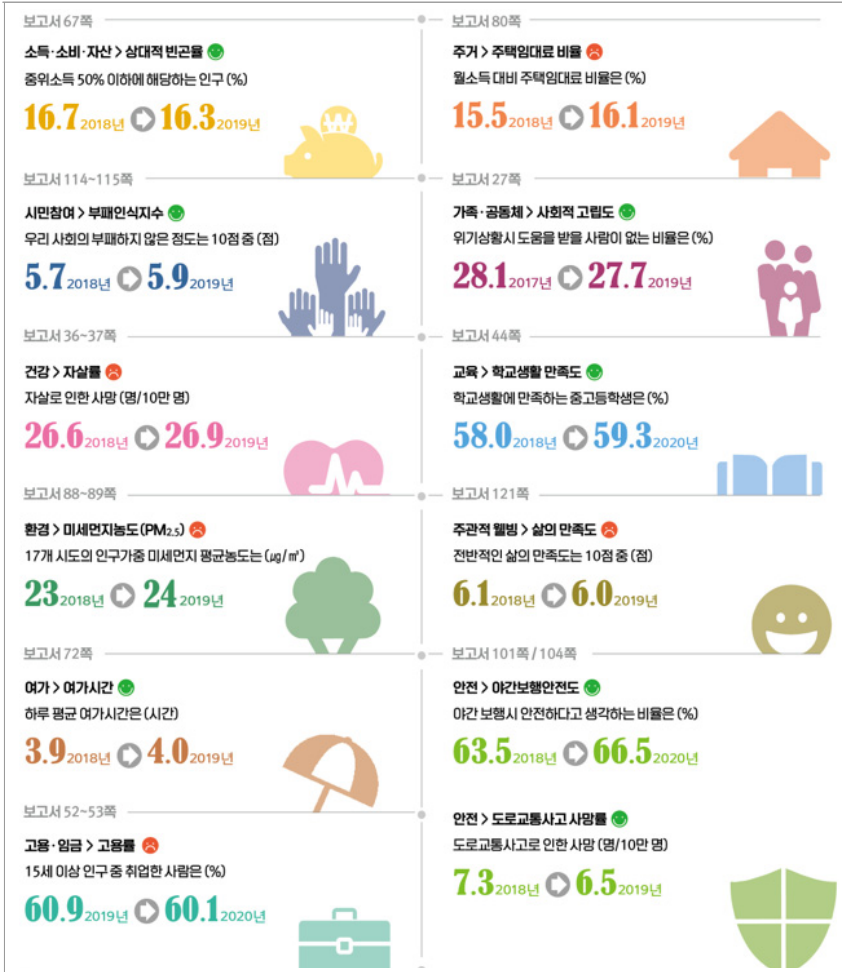
협'을 가칭 K-Risks Matrix로 구성한 다음 K-SDGs를 그 해결방안의 주요한 부분집합으로 포함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K-Risks Matrix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협요소들의 가능성(likelihood)과 충격성(impact)을 도식화하는 개념으로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Global Risk Report)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그림 7-10]과 [그림 7-11]은 2020년 WEF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림 7-8. OECD BLI(better life index) 2020



자료: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countries/korea/>(검색일: 2021. 7. 15).

그림 7-9. 국민 삶의 질 지표 추세(2020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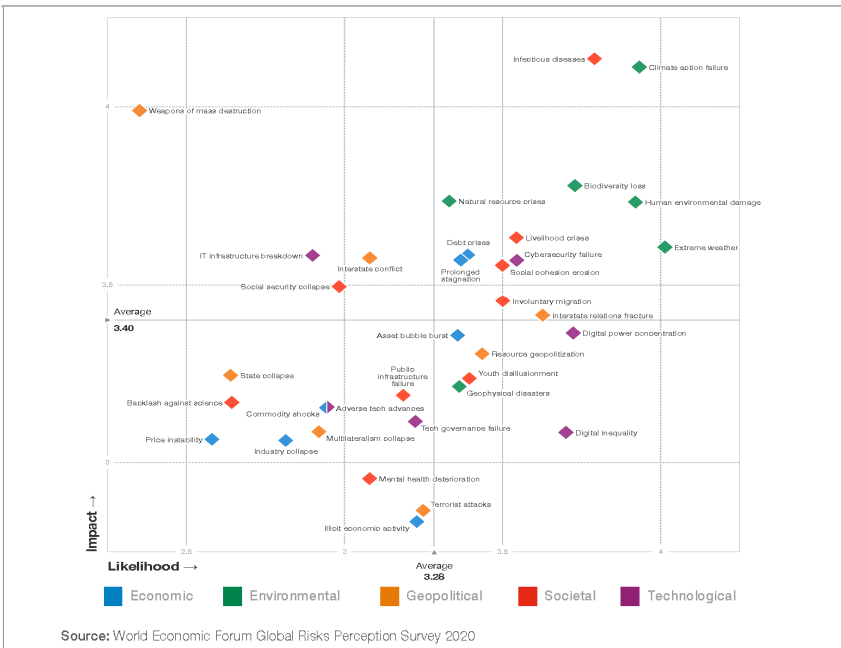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1) 및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 발간 통계청 보도자료(2021. 3. 11).

그림 7-10. 글로벌 리스크 요인 가능성 및 충격성 순위



자료: WEF(2021), "Global Risk Report 2021," p. 12.

그림 7-11. 글로벌 리스크 지형도(Global Risk Landscape)



자료: WEF(2021), "Global Risk Report 2021," p. 12.

3. 정책체계 재설계 방안의 예시

가. 국가전략적 위험요소 분류의 예시

본 보고서는 기존의 정책체계들이 대부분 사회적 문제들을 잘 파악하며 적절한 목표들을 설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개별적인 정책들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연관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질적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필요조건으로 ESG 관점에서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들을 ESG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러한 위험 범주별로 기존 정책목표들을 맵핑(mapping)시키고 상호 연결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E', 즉 환경과 에너지 측면의 위험요소 및 그 관리방안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물질 관리
 - 환경오염 영향이 크고 공중보건에 위협적인 물질의 생산/유통/소비/재활용/폐기 과정의 관리
 - 식량 및 약품의 생산/유통/광고/소비/폐기 과정의 안전성 및 지속가능성 관리
 - 친환경 인증 등급제, 광고 규제, 유해성 관리제도 등을 정비
- 에너지 관리
 -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효율적인 에너지 믹스 정책의 설계
 - 특별히 국내외적으로 주된 에너지 소비 형태가 전기화되는 상황의 선제적 대응 및 관리
- 자연환경 관리
 -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을 적극적으로 관리
 - 주요 자연환경의 보전/복구/교육 강화

- 지속가능한 관광과 여가활동을 위한 자연환경 활용 및 규제

다음으로 'S', 즉 사회적 측면의 핵심 이슈는 사회적(이념, 계층, 세대, 지역, 젠더 등)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며 주요 위험요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자산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한 계층 고착화 심화 문제
-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 지역불균형 및 지방소멸
- 주택가격 급등 및 서민의 주거불안정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문제
-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사건의 관리 및 사용자 책임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
-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 시장의 정비
- 소비자 보호 및 소비자 교육의 강화
- 전염병 등 공중보건 긴급상황 대응 전략의 수립

다음으로 'G', 즉 지배구조 측면에서 주요 위험요소 및 그 관리방안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단 여기서 지배구조 개념은 기업지배구조를 포괄하여 정치 및 사회적 지배구조로 확장된 개념이다.

- 정치 및 정책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인력, 예산, 사업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 부정부패 처벌의 합리적 강화(내부고발자 제도, 김영란법 등 활성화)
 - 사회집단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정치적 과정을 마련하고 상시적으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시장시스템의 지속가능성
 - 불공정 거래 행위, 특히 근래에 일감 몰아주기나 신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폼 사업자의 독과점 및 사실상 지배력 강화 문제에 대응

- 기업의 지배권 구조를 점검하고 연기금 등이 사회의 보편적 투자자 (universal investors)로서 기업경영에 합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
-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지원하는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사회적 관계성 전반의 지속가능성
 - 학교, 직장, 일상적 거래 및 생활환경에서 개인들의 인격권 강화(갑질, 성희롱, 따돌림 문제 등)
 -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청소년, 노인,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목표로 삼는 신종 범죄 및 폐해에 대한 신속한 법적·정책적 대응 체제 수립

표 7-3.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국토부	항공기 사고	농식품부	가축전염병
	항공운송 마비		저수지 사고
	항행 안전시설 장애	복지부	감염병
	고속철도		보건의료
	지하철	해수부	해양 선박사고
	다중밀집시설 붕괴 대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도로터널 사고	문체부	공연장·경기장 안전사고
육상화물운송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고	원안위(산업부)	원전안전
	식용수		인접국가 방사능
	대규모 수질오염	고용부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미세먼지	해양경찰청	해양 유도선
산업부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국토부(행안부)	공동구
	전력 사고		
	원유 수급	산림청	산불

표 7-3. 계속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유형
행안부	지역 축제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내수면 유·도선 사고	교육부	학교 및 학교시설 사고
	정부중요시설 사고	금융위	금융 전산 사고
과기정통부	정보통신 사고	환경부(산업부)	멤붕괴
	GPS 전파 혼신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법무부	교정시설 재난
소방청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림청/복지부/ 환경부	접경지역
	위험물 사고		

자료: 국립재난안전연구원(2020. 12), p. 12.

참고로 한국의 경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설립되어 국가의 자연 및 안전재난의 과학적 대응을 도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하여 「재해구호법」과 재난 유형별 법령들이 마련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는 재난을 발생 원인에 따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¹⁶⁹⁾으로 구별하며, 그밖에 해외재난, 재난관리, 안전관리, 긴급구조, 재난관리정보, 재난안전의무보험 등 관련 개념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토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두어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 [표 7-3]과 같이 주요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국가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위험관리체제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위험사건들에 관한 대응 매뉴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국가 공동체가 직면하는 핵심적인 위험 사항을 분류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하 논의를 진행한다.

169) 동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 감염병... 가축전염병의 확산,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이다.

따라서 앞서 나열한 이러한 주요 정책 위험요소들을 큰 범주로 분류하고, 현재 세분화된 위원회 활동을 이들 범주에 맞추어 통합하거나 하위 위원회로 재구성한다면 정책적 통합성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범주별로 개별 부처별로 책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조정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본 보고서는 이를 위해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처별로 정기적으로 주요 이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취합해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여 관리하고, 추진체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연동 및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특별히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도한 규제나 맹목적인 규제완화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가능한 한 제도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무가 및 이해관계자의 현장경험과 전문가들의 식견과 정보가 동시적으로 필요하다. 현재도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공청회와 토론회 및 공모전 등이 활발히 개최되는데, 이를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정보나 통계자료를 상시적으로 적극 공개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일상적으로 사회적 현안에 관련된 연구활동을 더 많이 수행하도록 하고, 시민단체 등에서 정책 평가 및 비판을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에도 노동패널자료 등을 활용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데, 자료의 보안이나 전유성 등의 문제로 시기를 정해 신청 연구자에 한해 자료를 제공하고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누구나 상시적으로 결과물 의무나 다른 제약 없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렵다면, 특정 분석 요구에 대해 결과물을 제공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사용자

능한 자료 형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해 연구자가 특정한 분석 코드를 제출하면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물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자료의 전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연구자들이 상시적으로 손쉽게 자료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나 관련 공무원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공모전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금이나 입상 특혜를 대폭 확대하고 정기화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취합하여 정책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함으로써 사후적인 문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참여과정과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동을 고양할 수 있다.

한편 본질적으로 이해관계 갈등이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충분한 정보취합과 관계자 의견 청취 과정 등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결국은 정치적 협상과 리더의 결단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부정부패 없이 공정한 절차를 진행한 이후 내려진 정치적·정책적 결단에 대해서는 향후 그 결과에 대해 담당자의 법적 책임성을 면제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사회적 비난을 자제하는 문화적 성숙도 필요할 것이다.

나. 통합적 정책설계의 예: 국가균형발전정책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국가 차원의 위험요소 가운데 특별히 사회적 위험들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된다고 판단되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을 예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존속되어 오면서 관련 정책들을 심의 및 자문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결과 면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었는데, 서울

인구는 감소했지만 경기·인천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34.8%), 영국(20.9%), 프랑스(18.2%), 독일(7.4%) 등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인구 비율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지역총생산(GRDP), 지역내총소득(GRNI), 연구개발비 등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강하며, 100대 기업 본사 90%, 신용카드 사용액 72%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수도권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수도권의 국가 경제 기여도도 하락하고, 비수도권 시·군·구 소멸 위기 지역은 증가하고 있다.¹⁷⁰⁾ 현재 국가 전체적으로 가장 큰 자원을 동원하여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한국판 뉴딜정책인데 이는 상황적으로 매우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실천된다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반드시 국가 공동체의 지속가능 발전 관점에서, 특히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실천되어야만 향후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한편 [그림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국가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지역이 주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전략적 표현으로 판단된다. 보고서 취지는 정부 지원만으로는 정책적 효과를 내기 어렵고 지역의 강력한 자활의지가 함께 결합되어야만 한다는 뜻으로 유추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특성상 지역적 요구들이 상충할 수밖에 없는데, 지방공항 이전 사례 등을 보더라도 이러한 일은 당사자들의 협상만으로 절대 해결될 수 없으며, 반드시 리더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요한 사안들에 대해 과감한 선택을 결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리더의 선택 이전에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절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많은 경우, 특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일수록, 절충이 쉽지 않고 절충하는 경우 정책의 효과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170) 「지역 균형발전, 톱다운 아닌 보텀업 방식 되어야 성공한다」(2021. 3. 24), 온라인 기사(검색일: 2021. 9. 10).

먼저 그 구체적인 예로 거점 지역을 너무 많이 선정한 문제가 있다. 그동안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부처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되어 집중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는 개별 지역들의 정치적 요구들을 수용한 절충적 결과로, 한정된 자원을 분산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 효과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치적 리더들의 결단을 통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만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대다수 지역에 자원을 분산 지원한다면 지역의 자활 의지를 유인하는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전략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소수의 지역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이전한 기관의 직원들이 많은 경우 정주 환경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대개 교육과 의료와 문화적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집중화 효과가 가능한 인구적 특성을 산정하고 그러한 인구집단이 정주할 수 있도록 대규모로 시장형 공공임대주택¹⁷¹⁾을 공급하고 적정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 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요 인프라 제도를 효율적으로 증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와 국립의료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병원의 경우 시설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 인력 역시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에 집중되어 선순환 또는 악순환 효과가 매우 크므로 이들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초기에 전폭적인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전폭 지원하는 방안은 우선 부설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야간이나 주말 및 방학 동안 어학이나 과학, 그리고 평생교육

171) 본 보고서에서 시장형 공공임대주택이란 고품질 주택을 시장가격에 비교적 단기간 공공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전세 주택과 동일한 성격의 임대주택을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학의 수익성 역시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독신자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지역거점 시설이나 학교 등과 교통으로 연결하기 쉬운 입지에 대규모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국립대학교의 공대와 의대 정원을 증원하고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성된 전문인력들이 지역 내의 기관이나 기업에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대생 등이 특정한 장학제도 등을 이용한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취업하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의료원의 전문인력들도 혜택을 크게 확대하고 특히 국내외 연수제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한편 국가장학재단은 2020년 기준 104만 명에게 3.4조 원을 지원하고, 60만 명에게 1.8조 원을 1.7% 금리로 학자금 대출하였다.¹⁷²⁾ 이러한 국가장학 지원제도는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모든 지역의 대학생들에게 대체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되는데, 향후 지역과 전공에 따라 크게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수도권 및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 삭감하고 지방국립대학교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전폭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지역 거점 도시 이외의 지역은 대체로 농축어업이나 관광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적으로나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궁극적으로 인구와 자원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현상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지역 거점의 집중화 효과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수를 늘리고 대도시 집중화 속도를 늦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ESG 관점에서 인구대비 환경오염 강도나 그 비율이 가장 심각한 산업이 농축어업 및 관광업이 될 수 있다. 농축어업이나 관광산업의 경우 생산물이나 산출되는 서비스의 품질이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친환경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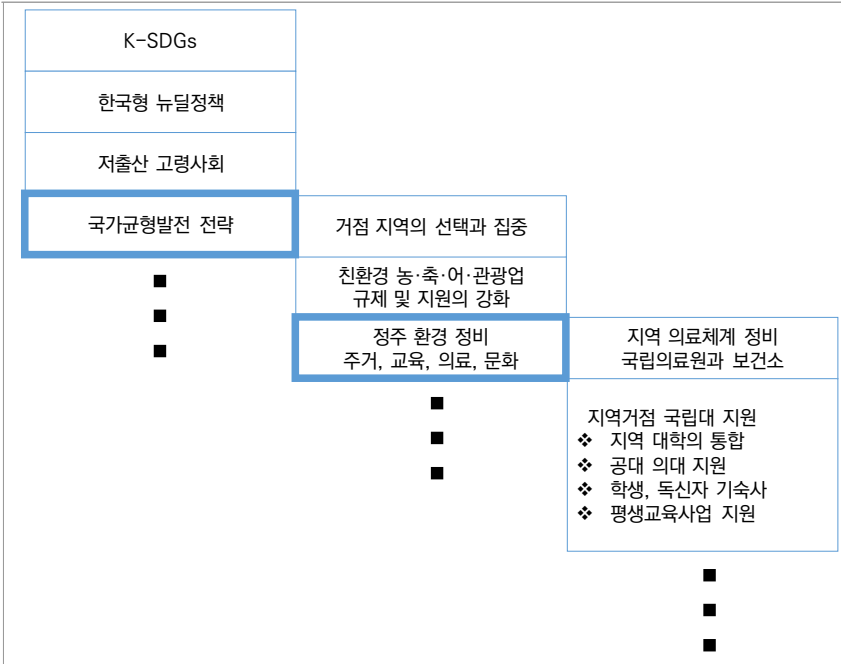
17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검색일: 2021. 7. 18) 내용 참고.

로 생산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더욱 큰 것이다. 향후 보다 실효성 높은 환경규제 및 감독방안뿐만 아니라, 또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농축어업 및 관광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도시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교육, 의료, 물류 등의 보편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규모의 경제 등의 요인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와 대도시 지역을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계층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운영하는 소도시 지역이나 교육기관 기숙사나 보건소 체계 등을 보다 지속가능한 관점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근래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시골 지역의 응급차나 응급 헬기 이용제도도 보다 유인적합하도록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정비하여 지나치게 방만하거나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한편, 소외 지역이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지역 인구 감소로 버스노선이 폐지되자 해당 지자체가 내놓은 교통복지 정책으로 '100원 택시' 제도가 있다. 수익성이 감소한 지역 버스노선을 유지하기 위해 지불하는 보조금을 택시이용 보조금으로 대체함으로써 재정 및 이용자 편의성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지금까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측면의 논의들을 나열한 것은 목적지향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설계하고 동시적으로 실행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개별 정책들이 부분적인 범위로 실행된다면 시너지 효과와 임계수준을 넘어서는 정책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림 7-12]는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관된 정책들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7-12.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연관 정책들(예시)



자료: 저자 작성.

제8장



결론



최근 국내외적으로 투자, 경영,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ESG 논의가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공식화되고 지속가능성 보고서 등 관련 정보공시가 일반화되고 있다. 금융투자 측면에서도 대형 투자회사 등을 중심으로 ESG 투자전략을 공포하고 다수의 표준들이 제안되는 실정이다.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 역시 관련 정보 공개 등 규율체계를 마련 중이며 점차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ESG 동향 및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ESG 제도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의 경우 정부 부처나 위원회 등에서 ESG 관련 정책들이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고 있으며, K-SDGs와 한국형 뉴딜정책 등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정책들 가운데 일부는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면이 있으며, 본질적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분담이나 정책 자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좀더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양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성취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운영되는데, 향후 질적 측면까지 고려되도록 문제의식 및 위험요소 파악을 강조하고 목적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추구하는 ESG 가치체계가 국가 전반의 포용적 제도로 정착되고 국정운영의 궁극적인 가치체계로 작동하여야 할 것이다.

ESG 가치체계가 국가 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수나 진보의 이념적 편견에서 벗어나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라는 양 극단적 관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사이의 상대적 우위를 고려한 역할분담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SG 규율체계가 금융시장과 기업경영과 시민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작동 가능한 부분은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지 못한 부분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대체 또는 보완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정부의 다양한 협업

방식을 모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는 먼저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ESG 활동의 개념을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마련하여 금융시장을 통해서 ESG 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통일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ESG 관련 공시제도 수립을 촉진하고, 법제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ESG 관련 공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ESG 관련 정보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환경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ESG 활동을 적절히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계하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특히 벌써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관련 평가 프로그램 및 지표 산출사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평가지표들이 각기 제안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개념적 측면에서 상호 일관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서로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업에 공통으로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SG 평가는 원칙적으로 객관성이 높고 낮은 영역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객관성이 높은, 예를 들어 부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등은 정부의 규제와 감독 등을 이용하여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반대로 객관성이 낮은, 예를 들어 긍정적 요소를 평가하는 경우 등은 시장의 자율과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은 시장참가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기초 수준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점검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질적 평가가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적절히 공시하거나 평가기관 등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기관투자자와 비교하여 ESG 경영의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실천역량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먼저 실태조사와 기업 유형별 ESG 경영진단 및 정보제공이 필요

하다. 특히 현재 부처별로 진행되는 다양한 관련 정책들과의 연계성에 대해 자문하고 사내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온라인 교육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 제도 등을 통해 재정사업, 조달사업, 금융세제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ESG 경영 유인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산업생태계 내의 협업 과정에서 ESG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적절한 평가 및 유인제공 등을 통해 동반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SG 관련 국가정책들은 상이한데, 유럽연합(EU)이 ESG 정책의 확산과 제도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한국형 ESG 인프라 구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진적 ESG 제도의 기준으로서 EU가 제정한 규정이나 원칙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EU의 기업 공급망 실사 규제와 관련하여 EU 수출 대기업 공급망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적 생태계가 정립되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정책은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에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정책의 마련,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과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이다.

일본의 ESG 관련 국가정책 중에서는 사회적 가치(S) 창출과 관련된 정책을 참고할 수 있다. 일본정부가 기업의 다양성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다양성 가이드라인', 다양성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제도 등의 도입을 고려해 볼만하다. 또한 임직원들의 건강관리를 경영전략 측면에서 실천하는 '건강경영'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건강경영 우량법인 인증제도'나 상장기업 중 건강경영 종목 선정과 같은 제도도 참고할 만한 ESG 정책으로 보인다.

중국이 구축한 사회신용평가시스템의 경우 기업에 대한 사회평가 부분은 공익적 차원에서 그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탈세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민간 지원정책이나 규제정책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할 수 있다. 중국의 거대 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 금지를 통한 진입장벽 제거나 교육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치 등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사회자산펀드 조성 등도 참고할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이다.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이보다는 기업의 ESG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과 공시를 통해 평가받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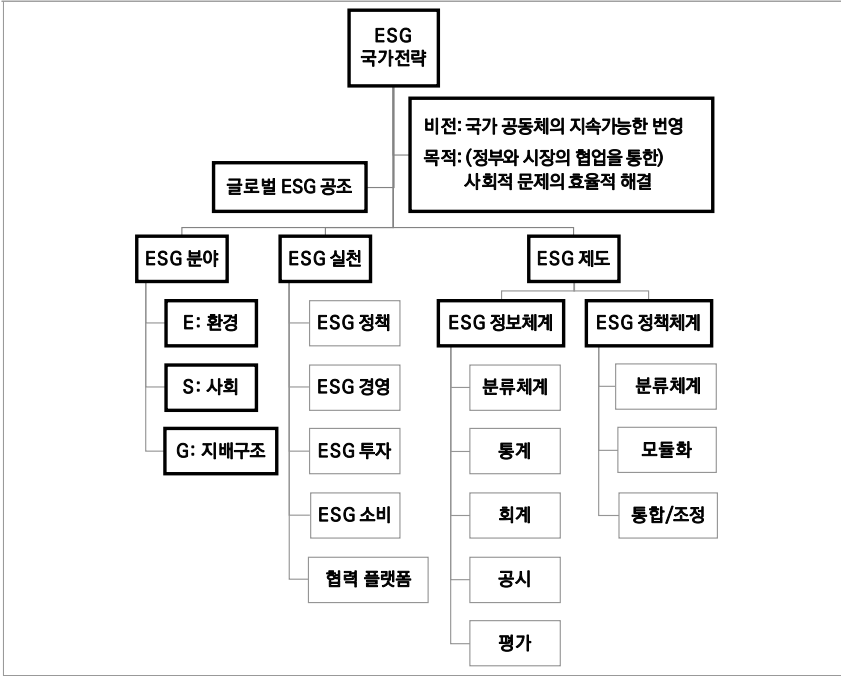
OECD 회의에서 최저 법인세율 도입이 합의되었으며 조세 관련 공시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투명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ESG 경영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조세 투명성을 높여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역외 납세 정보 등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정책을 ESG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ESG 논의는 대부분 투자와 경영 측면에서 E와 G 개념이 많이 강조되고 S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국가전략 측면에서는 S 개념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대한 영향력을 지닌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주요 문제 내지 위험요소들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들을 전략적으로 평가하고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각 부처나 위원회 등에서 각각 수행되는 정책들의 상호관계를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조정 및 통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경우, 현재는 배정된 자원을 지역별로 선심성으로 배분하는 등 인기영합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가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지역 간·세대 간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 대안으로 경제적 원리에 따라 핵심 지역을 소수 선정하여 주택과 교육, 의료와 문화적 지원이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지속 가능한 방식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다수 거주하도록 유인하고, 그러한 인력들이 필요한 기업들이 다수 지역에 입주하는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 또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산업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와 업계가 연합하여 친환경 산업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국민 전체의 여가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지역자산기금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활을 적극 유인하고 성공의 과실을 지역구성원들과 보다 많이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전략적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리더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현재 한국은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바이오 뉴딜정책의 적기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시장자율로만 진행된다면 수도권 집중을 더욱 심화 및 가속화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함께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정책체계를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정책 이슈들을 위험 범주로 분류하고, 세분화된 위원회 조직을 이들 범주에 맞추어 통합하거나 하위 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 정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통합적인 조정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로서 국가 ESG 위원회를 설립하고, 수시로 주요 사안에 대해 ESG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 및 취합하여 정기적으로 국가 ESG 전략보고서를 매 기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개별 정책들을 모듈화하여 관리하고, 추진체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호 연동 및 결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8-1. ESG 국가전략의 체계



자료: 저자 작성.

참고문헌

[국문자료]

- 강노경, 한승권. 2021. 「EU의 ESG 관련 입법 동향과 시사점」. KITA Market Report. 한국무역협회.
- 강성부. 2020. 『좋은 기업, 나쁜 주식, 이상한 대주주』. 페이지2북스.
- 강애림. 2021. 「EU 의회 기업실사지침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3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관계부처합동. 2020.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21~2040」. 제1부(발간번호: 11-1480000-001181-01).
- _____. 2021.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8월 26일)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2)」.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20. 「사회재난 수습·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12월)
- 나수미. 2021.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방향」. 중소기업 포커스 21-14.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문진영, 한민수, 송지혜, 김은미. 201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연구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법무법인 지평. 2021. 「미국 ESG 공시제도화와 국내 영향」. (9월 7일)
- 오덕교. 2012. 「중소·중견기업의 ESG 현황 분석」. 기업지배구조리뷰.
- 이천기, 박지현, 박혜리. 2021.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1-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형백. 2020. 「문재인정부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가능한가?」. 한국지역개발학회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지역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한 교육 뉴딜과 K 뉴딜의 성공조건』 (7월 29일)
- 장영욱, 오태현. 2021.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 정희찬. 2012. 「인도의 기업법 개관」. 『저스티스』, 통권 제133호.
- 조세재정연구원. 2020. 「국경탄소조정을 포함한 탄소세 논의의 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2020년 제2호.

코트라. 2019. 「인도의 CSR 규범강화 동향과 대응방안」. Global Market Report 19-099. KOTRA.

플무원. 2020. 「플무원 제37기 사업보고서」.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e-나라지표.

_____. 2021. 「국민 삶의 질 2020」. (3월 11일)

_____. 2021. 「2020년 국내인구통계 결과」. (1월 26일)

한민수, 김수빈, 이진희. 2021. 「2021년 G7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21-3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행정안전부. 2019.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정책자료.

_____. 2020.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정책자료.

[일문자료]

경제산업省. 2017. 「다이버시티2.0 検討会報告書~競争戦略としてのダイバーシティの実践に向けて~」. (3월 23일)

_____. 2018. 「다이버시티2.0 行動ガイドライン改訂版」. (6월 8일)

_____. 2020a. 「TCFDガイダンス2.0」. (7월 31일)

_____. 2020b.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12월 25일)

_____. 2021a. 「市場形成力指標 ver1.0」. (4월 21일)

_____. 2021b.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 (6월 18일)

金融庁·經濟産業省·環境省. 2021. 「クライメート・トランジション・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基本指針」. (5월 7일)

内閣府. 2014. 「「日本再興戦略」改訂 2014」. (6월 24일)

環境省. 2021.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気候関連リスク・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オ分析実践ガイドver3.0~」. (3월 16일)

[영문자료]

Berg, F., J. F. Koelbel, and R. Rigobon. 2019. "Aggregate Confusion: The Divergence of ESG Ratings." *MIT Sloan School Working Paper*. 5822-19.

Bolton, P., M. Després, L. A. Pereira da Silva, F. Samama, and R. Svartzman. 2020. "The Green Swan: Central Banking and Financial

- Stability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CLP Group. 2002. “Sustainability Report.”
- Edmans, Alex. 2020. *Grow the Pie: How Great Companies Deliver Both Purpose and Profit*.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PA. 2011. “Greening Our Future By Educating Tomorrow’s Workforce: Module 1: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uropean Parliament. 2021. “(Resoluti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 EUTEG. 2020.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EU. (March)
- Fisch, J. 1997. “Questioning Philanthropy From a Corporate Governance Perspective.” *The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41, pp. 1091-1106.
- Friedman, M. 1970.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September 13)
- Hart, O., A. Shleifer, and R. W. Vishny. 1997. “The Proper Scope of Government: Theory and an Application to Prison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4), pp. 1127-1161.
- Hart, O. and L. Zingales. 2017. “Companies Should Maximize Shareholder Welfare Not Market Value, Journal of Law.” *Finance, and Accounting*, 2, pp. 247-274.
-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 ICMA. 2020.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The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December 9)
- IPCC. 201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 °C.” Incheon. Republic of Korea: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October 8)
- Kaletsky, A. 2011. *Capitalism 4.0: The Birth of a New Economy in the Aftermath of Crisis*. NY: PublicAffairs.
- Khan, Lina M. 2016. “Amazon’s Antitrust Paradox.” *Yale Law Journal*, 126, pp. 710-805.

- Kahn, M. E. 2015. "A Review of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Jeffrey Sach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53(3), pp. 654-666.
- Mazzucato, M. 2011. "The Entrepreneurial State." *Soundings*, 49(49), pp. 131-142.
- _____. 2017.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Public Affairs. NY: Anthem Press.
- McLean, B. and P. Elkind. 2013. *The Smartest Guys in the Room: The Amazing Rise and Scandalous Fall of Enron*. NY: Penguin.
- OECD. 2019. *Taxing Energy Use 2019: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Paris: OECD Publishing. (October 15)
- Parry, O., S. Black, and J. Roaf. 2021.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IMF Staff Climate Notes*. (June 18)
- Rosen, R. H. 1991. *The Healthy Company: Eight Strategies to Develop People, Productivity and Profits*. NY: St. Martin's.
- Sachs, J. D. 2015. *The Age of Sustainable Development*.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aez, E. and G. Zucman. 2016. "Wealth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ince 1913: Evidence from Capitalized Income Tax Data."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1:2, pp. 519-578.
- Schaefer, K. 2020. *China's Corporate Social Credit System: Context, Competition, Technology and Geopolitics*.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November 16)
- Serafeim, G., R. M. Henderson, and D. Lau. 2015. "CLP: Powering Asia." *Harvard Business School Case*, 115-038.
- Tirole, J. 2001. "Corporate Governance." *Econometrica*, 69, pp. 1-35.
- USTR. 2021. "2021 Trade Policy Agenda and 2020 Annual Report." (March 1)
- Wilson, J. 1989.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NY: Basic Books.
- WEF. 2021. "Global Risk Report 2021." *World Economic Forum*.

[온라인 자료]

• 국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6&menuLevel=2&menuNo=30>(검색일: 2021. 7. 10).
- _____.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 및 조직」. <http://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6&menuLevel=2&menuNo=30>(검색일: 2021. 7. 10).
- _____.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비전과 가치」. <http://www.balance.go.kr/base/contents/view?contentsNo=27&menuLevel=2&menuNo=52>(검색일: 2021. 7. 10).
- 「기재부, ESG 산발적 정책 교통정리한다」. 2021. *Impact On*. (8월 27일).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2401>(검색일: 2021. 9. 14).
- 산업통산자원부. 2021.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4월 21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036(검색일: 2021. 8. 28).
- 「슈나이더 일렉트릭,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한 대책 공약 발표로 ESG 경영 지속」. 2021. 『뉴스와이어』.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3857>(검색일: 2021. 7. 6).
- 「영국 스타벅스의 세금회피 문제」. 2012.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12121106901>(검색일: 2021. 8. 31).
- 「은행 “환경 오염 기업에 대출 않겠다”...여신도 투자도 ESG 중심 재편」. 20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2505021>(검색일: 2021. 7. 6).
- 이효진. 2020. 「[동향세미나]중국의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추진 현황」. CSF. (2월 11일). 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37240&board_id=2&mid=a2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tPage=1&pageCnt=10. (검색일: 2021. 7. 6).
- 「중국은 ‘공동부유’란 유령을 붙잡을 수 있을까」. 2021. 『한겨레』. (9월 13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1011569.html> (검색일: 2021. 9. 15).

지속가능발전포털. 'SDGs 목표별 주요 법령 및 계획.' <http://ncsd.go.kr/ksdgs?content=2>(검색일: 2021. 8. 1).

「지역 균형발전, 톱다운 아닌 보텀업 방식 되어야 성공한다」. 2021.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1/03/30/O7PN2KJ6GFHZNESXE2INECJF4/>(검색일: 2021. 9. 10).

코트라. 2021. 「인도의 대규모 환경개선 캠페인 '클린 인디아 2.0」. (4월 12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87863>(검색일: 2021. 9. 20).

클린인디아 공식 웹사이트. <http://sbm.gov.in>(검색일: 2021. 9. 20).

「탄소세 도입, 조세저항 최소화 위해 산업계 다층의견 수렴해야」. 2021. 『한국세정신문』.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0765>(검색일: 2021. 8. 16).

「탄소세 도입시 최대 36.3조 원 추가 부담...신중히 검토해야」. 2021.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2KOSROM3Z/>(검색일: 2021. 8. 16).

파타고니아코리아. <http://www.patagonia.co.kr/shop/inside/article.php?&sno=27>(검색일: 2021. 7. 2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s://www.kosaf.go.kr/>(검색일: 2021. 7. 18).

「한화 '비인도적 무기' 집속탄 사업 분리」. 2020. 『서울경제』. <https://www.seodaily.com/NewsView/1Z98S1S5ES/>(검색일: 2021. 8. 18).

「[현장 돋보기] ESG 경영은 마라톤...명확한 목표와 세밀한 실행력이 필수」. 2021.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3/207490/>(검색일: 2021. 7. 6).

「혈세들여 수수료없는 '공공앱' 만든다?...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2020.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3899765>(검색일: 2021. 7. 2).

「'황령한 사람이 ESG 위원장?'...김정수 복귀로 도마 위 오른 삼양식품」. 2021. 『뉴스핌』. <https://m.newspim.com/news/view/20210317001153/>(검색일: 2021. 7. 25).

2021 ESG 커넥트포럼. <https://youtu.be/oqHDE4luTlo>(검색일: 2021. 7. 21).

「EU 수출 '탄소 리스크' 가시화... "韓기업 받아들 청구서만 연 1兆"」. 20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1122401>(검색일: 2021. 8. 20).

「KB금융 "화력발전 투자·대출 더는 안한다"」. 2021.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92764041/>(검색일: 2021. 7. 8).

「LG전자가 아이폰 판매?...중소 대리점 "골목상권 침해"」. 2021.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1001044.html>
(검색일: 2021. 7. 2).

「O2O 플랫폼 ‘직방’, 입차·임대인 연결 넘어 부동산 매매까지. 2021. 『경향비즈』.
http://m.biz.khan.co.kr/view.html?art_id=202106151322001#c2b
(검색일: 2021. 7. 2).

Greenpeace. 2020. 「블랙록 경고장 받은 한국전력, ‘석탄 투자 중단’ 지적에도 투자 강행?」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907/blog-ke-kepc-coal-financing-2020/>(검색일: 2021. 8. 20).

• 중문

國務院. 2014. 「社會信用體系建設規劃綱要(2014~2020年)」.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6/27/content_8913.htm(검색일: 2021. 7. 2).

• 일문

經濟産業省. 「健康經營優良法人認定制度」.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healthcare/kenkoukeiei_yuryouhouzin.html(검색일: 2021. 8. 20).

_____. 2018. 「ダイバーシティ2.0 行動ガイドライン改訂版」. (6月 8日). <https://www.meti.go.jp/press/2018/06/20180608001/20180608001.html>
(검색일: 2021. 8. 25).

_____. 2018.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システムに関する実務指針」(CGSガイドライン)の改訂版」. (9月 28日). <https://www.meti.go.jp/press/2018/09/20180928008/20180928008.html>(검색일: 2021. 8. 25).

_____. 2018. 「TCFDガイダンスの策定とTCFDへの署名を行いました」. (12月 25日). <https://www.meti.go.jp/press/2018/12/20181225012/20181225012.html>(검색일: 2021. 8. 5).

_____. 2020. 「TCFDガイダンス2.0」. (7月 31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7/20200731002/20200731002.html>(검색일: 2021. 8. 5).

_____. 2020. 「社外取締役の在り方に関する実務指針」. (7月 31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7/20200731004/20200731004.html>(검색일: 2021. 8. 25).

_____. 2020. 「健康經營の推進について」. (9月 25日). https://www.meti.go.jp/policy/mono_info_service/healthcare/kenko_keiei.html(검색일:

2021. 8. 20).
- _____. 2021. 「「健康経営銘柄2021」に48社を選定しました！」(3月4日). <https://www.meti.go.jp/press/2020/03/20210304004/20210304004.html> (검색일: 2021. 8. 20).
- _____. 2021. 「令和2年度「新・ダイバーシティ経営企業100選」及び「100選プライム」の選定企業が決定しました！」(3月22日).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diversity/kigyol00sen/>(검색일: 2021. 8. 19).
- _____. 2021. 「女性活躍に優れた上場企業を選定「なでしこ銘柄」. (6月22日). <https://www.meti.go.jp/policy/economy/jinzai/diversity/nade6shiko.html>(검색일: 2021. 8. 19).
- 国土交通省. 2021. 「不動産分野TCFD対応ガイドンス. (3月30日). https://www.mlit.go.jp/report/press/tochi_fudousan_kensetsugyo05_hh_000001_00024.html(검색일: 2021. 8. 6).
- 金融庁. 2015. 「改訂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 (3月5日). <https://www.fsa.go.jp/news/26/sonota/20150305-1.html>(검색일: 2021. 8. 23).
- _____. 2021. 「コーポレートガバナンス・コードと投資家と企業の対話ガイドラインの改訂. (6月11日). <https://www.fsa.go.jp/news/r2/singi/20210611-1.html>(검색일: 2021. 8. 25).
- 環境省. 2020. 「「TCFDを活用した経営戦略立案のススメ～気候関連リスク・機会を織り込むシナリオ分析実践ガイド～」の改訂について. (3月30日). <https://www.env.go.jp/press/107853.html>. <http://www.env.go.jp/policy/tcfd.html>(검색일: 2021. 8. 6).

• 영문

- “After Deaths From Disinfectants, Ex-Chief of Consumer Goods Firm’s South Korean Unit Is Jailed.” 2017.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7/01/06/business/dealbook/south-korea-disinfectant-reckitt-benckiser.html>(검색일: 2021. 7. 25).
- B Corporation. <https://bcorporation.net/>(검색일: 2021. 7. 26).
- Bergman, M. S., B. S. Karp, and R. A. Rosen. 2020. “ESG Disclosures: Frameworks and Standards Developed by Inter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ttps://corpgov.law.harvard.edu/2020/09/21/esg-disclosures-frameworks-and-standards-dev>

- eloped-by-intergovernmental-and-non-governmental-organizations/(검색일: 2021. 9. 3).
- “Biden reverses Trump changes to bank antidiscrimination law.” 2021. *AP News*. (May 18). <https://apnews.com/article/discrimination-laws-race-and-ethnicity-government-and-politics-business-be0b4a862726718bc35d27bad37e9668>(검색일: 2021. 8. 5).
- Brown, M. 2021. “US Federal Reserve Announces New Climate Committee and Provides More Guidance on Its Approach to Addressing Climate Change Risks.” https://www.mayerbrown.com/en/perspectives-events/publications/2021/03/us-federal-reserve-announces-new-climate-committee-and-provides-more-guidance-on-its-approach-to-addressing-climate-change-risks#_edn1 (검색일: 2021. 8. 23).
- Business & Human Rights. 2021.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 <https://www.business-humanrights.org/en/latest-news/european-commission-promises-mandatory-due-diligence-legislation-in-2021/>(검색일: 2021. 7. 24).
- Business Roundtable Our Commitment. <https://opportunity.businessroundtable.org/ourcommitment/>(검색일: 2021. 6. 21).
- CES. 2021. “Schneider Electric: Smart Sustainable Homes(EU).” <https://videos.ces.tech/detail/video/6226946094001/schneider-electric-smart-sustainable-homes-eu>(검색일: 2021. 7. 6).
- China Government. 2014. 「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6/27/content_8913.htm(검색일: 2021. 7. 2).
- Climate Leadership Council.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 <https://clcouncil.org/economists-statement/>(검색일: 2021. 8. 26).
- Corporate Knights. 2021. “Top company profile: Schneider Electric leads decarbonizing megatrend.” <https://www.corporateknights.com/reports/2021-global-100/top-company-profile-schneider-electric-leads-decarbonizing-megatrend25289-16115328/>(검색일: 2021. 7. 19).

-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Voluntary Guidelines. 2009. http://mca.gov.in/Ministry/latestnews/CSR_Voluntary_Guidelines_24dec2009.pdf(검색일: 2021. 8. 5).
-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s). <https://www.cses.re.kr/>(검색일: 2021. 8. 17).
- Deloitte. 2021. “House approves corporate governance package with country-by-country reporting mandate.” (June 19). <https://www.taxathand.com/article/18778/United-States/2021/House-OKs-corporate-governance-package-with-country-by-country-reporting-mandate>(검색일: 2021. 9. 3).
- European Union. 2021. “EU lawmakers strike milestone deal for corporate tax transparency.” EU Press release. (June 1).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10527IPRO4913/eu-lawmakers-strike-milestone-deal-for-corporate-tax-transparency>(검색일: 2021. 8. 31).
- EUTEG. 2020. “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200309-sustainable-finance-teg-final-report-taxonomy_en.pdf(검색일: 2021. 8. 18).
- Gensler, Gary. 2021. “Prepared Remarks Befo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ebinar.” SEC. (July 28). <https://www.sec.gov/news/speech/gensler-pri-2021-07-28>(검색일: 2021. 9. 10).
-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2017. “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World Bank.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4ff9c5ce4b0a53decccfb4c/t/59b7f2409f8dce5316811916/1505227332748/CarbonPricing_FullReport.pdf(검색일: 2021. 8. 28).
- ICMA. 2020. *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 (December). <https://www.icmagroup.org/sustainable-finance/the-principles-guidelines-and-handbooks/climate-transition-finance-handbook/>(검색일: 2021. 8. 19).
- Impact Management Project. 2020. “Statement of intent to work together

- towards comprehensive corporate reporting.” <https://impactmanagementproject.com/structured-network/statement-of-intent-to-work-together-towards-comprehensive-corporate-reporting/>(검색일: 2021. 8. 18).
- IPCC. 2018. “Special Report on Global Warming of 1.5°C.” (October 8). Incheon, Republic of Korea: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IPCC). <https://www.ipcc.ch/sr15/>(검색일: 2021. 8. 6).
-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2011. “Environmental and Economical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http://www.mca.gov.in/Ministry/latestnews/National_Voluntary_Guidelines_2011_12jul2011.pdf(검색일: 2021. 8. 5).
- NC WARN. 2010. “SOLAR AND NUCLEAR COSTS-The Historic Crossover-A Report by Dr. John Blackburn.” <https://www.ncwarn.org/2010/07/solar-and-nuclear-costs-the-historic-crossover/>(검색일: 2021. 7. 15).
- Newswire. 2021. “Schneider Electric included in Bloomberg Gender-Equality Index for fourth consecutive year.” <https://www.newswire.ca/news-releases/schneider-electric-included-in-bloomberg-g-gender-equality-index-for-fourth-consecutive-year-864641335.html>(검색일: 2021. 7. 6).
- OECD. “Better Life Index.” <https://www.oecdbetterlifeindex.org/>(검색일: 2021. 7. 15).
- _____. “Environmental indicators, modelling and outlooks.” <https://www.oecd.org/env/indicators-modelling-outlooks/40200582.pdf>(검색일: 2021. 8. 26).
- _____. 2019. “Taxing Energy Use 2019: Using Taxes for Climate Action.” https://www.oecd-ilibrary.org/taxation/taxing-energy-use-2019_058ca239-en(검색일: 2021. 8. 28).
- OpportunityFinance. 2021. “CDFI Fund Awards Historic \$1.25 Billion in Rapid Response Grants.” (June 15). <https://ofn.org/articles/cdfi-fund-awards-historic-125-billion-rapid-response-grants>(검색일: 2021. 9. 10).
- Patagonia. “Don’t Buy This Jacket, Balck Friday and the New York Times.” <https://www.patagonia.com/stories/dont-buy-this-jacket-black->

- friday-and-the-new-york-times/story-18615.html(검색일: 2021. 7. 26).
- _____. “1% for the Planet.” <https://www.patagonia.com/one-percent-for-the-planet.html>(검색일: 2021. 7. 20).
- Person, L. 1991. “Book Review: Bureaucracy: What Government Agencies Do And Why They Do It by James Q. Wilson.”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September 1). <https://fee.org/articles/book-review-bureaucracy-what-government-agencies-do-and-why-they-do-it-by-james-q-wilson/>(검색일: 2021. 7. 2).
- Planet & Society | Unilever. <https://www.unilever.co.uk/planet-and-society/the-unilever-sustainable-living-plan/>(검색일: 2021. 7. 17).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https://www.unpri.org>(검색일: 2021. 6. 21).
- SASB Materiality Map. <https://materiality.sasb.org/>(검색일: 2021. 8. 20).
-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https://www.sasb.org/>(검색일: 2021. 8. 20).
- Schneider Electric Korea. <https://www.se.com/kr/ko/>(검색일: 2021. 7. 15).
- 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https://www.fsb-tcf.org/>(검색일: 2021. 8. 30).
- The Companies Bill. 2009. http://www.mca.gov.in/Ministry/actsbills/pdf/Companies_Bill_2009_24Aug2009.pdf(검색일: 2021. 8. 5).
- The National Law Review. 2021. “President Biden Issues Federal Direction o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June 30). <https://www.natlawreview.com/article/climate-related-financial-risk-net-zeroing-key-private-equity-considerations-under>(검색일: 2021. 8. 23).
- U.S. Department of Energy. “Revolution Now: The Future arrives for Four Clean Energy Technologies.” <https://www.energy.gov/sites/prod/files/2013/09/f2/200130917-revolution-now.pdf>(검색일: 2021. 7. 15).
- UN Documents. 1986. “Our Common Future, Chapter 2: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http://www.un-documents.net/ocf-02.htm>(검색일: 2021. 6. 29).
- UN PRI. 2021.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Discussion with SEC Chair Gensler.” (July 28). https://www.brighttalk.com/webcast/17701/498753?utm_source=brighttalk-portal%26utm_medium%3

- Dweb%26utm_campaign%3Dchannel-page%26utm_content%3Dr
ecorded(검색일: 2021. 9. 10).
- UN.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ttps://www.un.org/millenniumgoals/>(검색일: 2021. 7. 1).
- _____.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ustainable Development.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ttps://sdgs.un.org/2030agenda>(검색일: 2021. 6. 22, 7. 1).
- _____. “The Ten Principles of the UN Global Compact.” <https://www.unglobalcompact.org/what-is-gc/mission/principles>(검색일: 2021. 6. 30).
- UNICEF. 2021. “Child labour.” <https://www.unicef.org/protection/child-labour>(검색일: 2021. 6. 20).
- Unilever. 2020. “Unilever Charts 2011 - 2020 in Annual Report and Account.” <https://www.unilever.com/investors/annual-report-and-accounts/charts-2011-2020/>(검색일: 2021. 7. 17).
- Visual Capitalist. 2021. “Race to Net Zero: Carbon Neutral Goals by Country.” <https://www.visualcapitalist.com/race-to-net-zero-carbon-neutral-goals-by-country/>(검색일: 2021. 8. 26).
- White House. 2021. “Executive Order On Advancing Racial Equity and Support for Underserved Communities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executive-order-advancing-racial-equity-and-support-for-underserved-communities-through-the-federal-government/>(검색일: 2021. 8. 5).
- _____. 2021. “Executive Order on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May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5/20/executive-order-on-climate-related-financial-risk/>(검색일: 2021. 8. 6).
- _____. 2021. “Executive Order on Increasing the Minimum Wage for Federal Contractors.” (April 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4/27/executive-order-on-increasing-the-minimum-wage-for-federal-contractors/>(검색일: 2021. 8. 12).

- _____. 2021. “Executive Order on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Restoring Science to Tackle the Climate Crisis.” (January 2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executive-order-protecting-public-health-and-environment-and-restoring-science-to-tackle-climate-crisis/>(검색일: 2021. 8. 2).
- _____. 2021.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Clean Cars and Trucks.” (August 10).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8/05/executive-order-on-strengthening-american-leadership-in-clean-cars-and-trucks/>(검색일: 2021. 9. 6).
- _____. 2021.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January 27).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7/executive-order-on-tackling-the-climate-crisis-at-home-and-abroad/>(검색일: 2021. 8. 2).
- _____. 2021. “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 (April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4/23/fact-sheet-president-bidens-leaders-summit-on-climate/>(검색일: 2021. 8. 6).
- World Economic Forum. 2020.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 Towards Common Metrics and Consistent Reporting of Sustainable Value Creation.” <https://www.weforum.org/reports/measuring-stakeholder-capitalism-towards-common-metrics-and-consistent-reporting-of-sustainable-value-creation/>(검색일: 2021. 8. 19).

[법률자료]

- European Commission. 2017.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methodology for reporting non-financial information)(2017/C215/0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_____. 2019. “Guidelines on non-financial reporting: Supplement on reporting climate-related information(2019/C209/01).”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 _____. 2021.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13/34/EU,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Regulation(EU) No537/2014,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European Union. 2014. “Directive 2014/95/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14, amending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disclosure of non-financial and diversity information by certain large undertakings and groups.”

_____. 2020. “Regulation(EU) 2020/85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June 2020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and amending Regulation(EU) 2019/2088.”

U.S. Congress. 2021.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_____. 2021. “Fair, Affordable, Innovative, and Resilient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_____. 2021.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관련자료 목록]

김수현. 2021. 「EU의 ESG 규제 주요 내용과 시사점」. ESG Focus. 법무법인 광장.

김은지, 이형근. 2021. 「일본의 ESG 대응 전략 분석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1-028. KOTRA.

남영숙. 2011.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글로벌 트렌드와 지역별 동향연구」.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박영석, 강구상, 장영욱, 김승현, 이효진. 2021.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2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상훈. 2010. 「사회책임정보 공시 법제화의 도입 필요성」.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51. 7/8.

조동준, 김상환, 박민준, 박지수. 2013. 「인도의 CSR 정책과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13-025. KOTRA.

정운용. 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 61. 3/4.

코트라. 2021. 「해외 기업의 ESG 대응 성공사례」. Global Market Report 21-026. KOTRA.

經濟産業省. 2017. 「企業と投資家の対話のための「価値協創ガイダンス」(価値協創

のための統合的開示・対話ガイダンス: ESG・非財務情報と無形資産投資)」。 (5月 29日)

企業活力研究所. 2018. 「新時代の非財務情報開示のあり方に関する調査研究」. CSR 研究会. (5月 24日)

Business Roundtable. <https://www.businessroundtable.org/>.

Guideline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ility for Central Public Sector Enterprises. 2013. http://www.dpemou.nic.in/MOUFiles/Revised_CSR_Guidelines.pdf(검색일: 2021. 8. 5).

Global ESG Trends and the Strategic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Sang Buhm Hahn, Sehoon Kwon, and Sanggyun Yim

Recently, ESG(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 concerns are rapidly growing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s, management, consumers, and government policies. Beyond the concept of investment criteria or policy instruments, ESG can be defined as a value system for sustainable prosperity of the human community. ESG issues are rapidly becoming impending socioeconomic risk factors, but it is also being actively researched and implemented as an opportunity and solution in a variety of fields.

The current popularity of ESG can be explained in terms of the role-sh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arket.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demands have altered as existing socioeconomic problems have accumulated. And the technologies that could be used to solve problems advanced quickly. As a result, not only has the nature of the problem in each industry changed dramatically but so has the relative superiority of efficiency between the market and the state. In the role-sharing of the market

and the state, there are wide spectra between mutually exclusive extremes of market failure and government failure.

Shareholder capitalism has not been able to adequately respond to various side effects that damag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community in the process of pursuing economic growth. In the early 1980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egan address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which current economic development does not jeopardize future generations' economic prosperity. Concerns about sustainability began with environmental issues and grew to include human rights and social ideals. It has been summed up as the ESG concept in recent years, which encompasses three aspects: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We present examples of companies that are following an ESG approach. Many businesses are spearheading ESG initiatives, and their patterns vary. Some companies, such as Patagonia, have been doing ESG activities consistently since the beginning. In some cases, such as with Unilever, ESG difficulties are represented in existing business practices, but corporations like Schneider Electric, CLP Group, and Oersted have entirely rebuilt their businesses, eliminating certain existing businesses and launching new ones that are compatible with ESG ideals. ESG is also attracting a lot of attention from Korean business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environmental challenge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where controlling owners frequently exercise management rights, corporate governance challenges are

considered to represent both a threat and an opportunity for the Korean firms.

National ESG strategies are also required, in addition to business ESG plans. The notion of “market failure” serves as a justification for national policy intervention in general. Many initiatives, however, have unintended consequences or are ineffective, as the term “government failure” implies. Market and government roles should be linked on the basis of efficiency. Not a binary distinction of “market or government,” but new frameworks of collaboration between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sought. Referring to the remarkable ICT developments such as AI and big data, cutting-edge financial instruments, and various organizational/management techniques, it is necessary to readjust the existing government policy intervention area and redesign the method innovatively.

Carbon taxes and minimum corporate tax rate regulations are two contemporary international ESG concerns that have been explored. Korea has evolved in terms of economic size and technological level, but still remains developing status with the environmental and energy challenges. As a result, we should create phased implementation schemes and support systems for the significantly and abruptly burdened industries and SME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ESG talks and reforming associated institutional structures.

We also present policy examples from a variety of countries on ESG challenges. The European Union (EU) has taken the lead in

instituting ESG regulations such as green taxonomy, sustainable financial disclosure,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supply chains, and carbon taxes. The U.S. Biden administration drafted state goals closely related to ESG, such as restoring democracy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digital innovation, regional development, resolving educational inequality, diversity and equality, and expandi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In Japan, diversity guidelines and health management strategies are notable. Individuals and enterprises' social credit in China are assess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summer, the Chinese government formally unveiled the slogan "Common Prosperity." Chinese ESG initiatives, such as outlawing monopolies, cracking down on giant platform businesses, and expanding educational equity, are also noteworthy. India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wher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required by law, and non-compliance with CSR expenditure obligations can result in criminal penalties for firms and their leaders. Meanwhile, the OECD announced on October 8, 2021, that 136 countries and jurisdictions have agreed that certain multinational enterprises (MNEs) will be subject to a minimum 15% tax rate, effective from 2023. Korea also has to develop policies to improve tax transparen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 and business management ESG infrastructures are also critical. This necessitates an adequate division of the roles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We need consistent

standards for ESG financing, which necessitates an ESG disclosure system and a green taxonomy to determine whether it belongs under the ESG category. Many private agencies have started offering ESG rating services in recent years, but their rating methods are vastly different, and the results are under-correlated with each other. There are also worries that foreign agencies' ESG assessments do not fully represent Korean-specific circumstances. It might not be a good idea for the government to conduct ESG evaluations directly because it could weaken market discipline.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should appropriately oversee the ESG rating system's entire structure.

We discuss how to establish and implement ESG policies in Korea in a strategic fashion. K-SDGs and the Korean New Deal are two of the most common ESG policies now in use. In addition, 23 Presidential Committees have been established to advise and deliberate on the national policy agenda, including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Committee and the Ag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Committee. In addition to the Prime Minister and ministries, there are around 500 committees. This policy approach appears to be in line with ESG trends that are now gaining traction around the world. However, because overlapping policy implementation by separate committees or ministries can lead to inefficiency and conflicts of interest, it is vital to examine integrated policy design and action plans.

We recommend that the National ESG Committee, ESG reports from each ministry, and national ESG strategy reports are

established. To begin, we need a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such as modularizing individual policies, to effectively control and manage policy duplication. This system should be based on the ESG national plan and be as consistent as feasible with the green categorization system (K-taxonomy). From an ESG viewpoint, it is vital to identify major problems and hazards affecting our society, as well as to map existing policy goals for each risk category. We propose that social “issues” or “risks” be organized into the K-Risk Matrix, with K-SDGs as a primary subset of solutions. The K-Risk Matrix is a diagram that depicts the “likelihood” and “impact” of threats to Korean society, and it may be created using information from the World Economic Forum’s Global Risk Report.

As an action plan, we must first define and taxonomize ESG activities and then construct ESG information infrastructures such as accounting and disclosure systems. ESG rating agencies, in particular, should be prepared with suitable regulations and supervisory processes. These ESG policy objectives should attempt to promote fair and efficient market competition and give a solution to both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

〈책임〉

한상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現, E-mail: sbhahn@kgu.ac.kr)

저서 및 논문

“Does Monetary Policy Regime Determine the Nature of the Money Supply?: Evidence from Seven Countr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공저, 2018)

「정책금리 변화가 캐시플로우 경로를 통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공저, 2020) 외

〈공동〉

권세훈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학사)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現, E-mail: sehoon38@smu.ac.kr)

저서 및 논문

「파생상품 이해」(2019)

“A Credit Rationing Model of the Medium Risk Borrowers with Low Valued Collateral” (*Applied Economics Letters*, 2021) 외

임상균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학사,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박사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
국민대학교 재무금융회계학부 부교수
(現, E-mail: yimsg@kookmin.ac.kr)

저서 및 논문

“Does Stock Price Crash of Firms in the Same Business Group Cause Stock Price Crash in Other Member Firm? Evidence from Korea” (*Emerging Markets Finance and Trade*, 공저, 2019) 외

KIEP ODA 정책연구 발간자료 목록

- | | |
|---------|--|
| ■ 2021년 | 21-01 글로벌 ESG 동향 및 국가의 전략적 역할/
한상범 · 권세훈 · 임상균 |
| ■ 2020년 | 20-01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이은석 · 박차미 · 이상미 |
| ■ 2019년 | 19-01 가나의 수산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한덕훈 · 조정희 · 전해은 · 김봉태 |
| | 19-02 캄보디아의 환경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SDGs 연계성을 고려한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김호석 · 박준현 · 박준희 |
| | 19-03 베트남의 교통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권영인 · 안강기 · 서영욱 |
| | 19-04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 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정지원 · 송지혜 · 김진오 · 현재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전문가, 기업 및 일반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를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조정실 기획성과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gh@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에 가격인상과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유효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ODA Study Series 21-01

Global ESG Trends and the Strategic Role of the Korean Government

Sang Buhm Hahn, Sehoon Kwon, and Sanggyun Yim

최근 전 세계적으로 ESG, 즉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보고서는 ESG 범위를 투자나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국가정책 및 제도로 확장하여 글로벌 ESG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 044-414-1114 F. 044-414-1001 · www.kiep.go.kr

ISBN 978-89-322-8040-0
978-89-322-8027-1(세트)

정가 10,000원